

연구자료 16-04



# Mega FTA 대응전략 연구: TBT 협정을 중심으로

유새별

# Mega FTA 대응전략 연구: TBT 협정을 중심으로

유세별

연구자료 16-04

## Mega FTA 대응전략 연구: TBT 협정을 중심으로

인 쇄 2016년 9월 6일  
발 행 2016년 9월 12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8, 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변영문화사 T. 042-254-2360

©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7,000원

ISBN 978-89-322-2420-6 94320

978-89-322-2064-2(세트)



## 국문요약

본 연구는 WTO TBT(무역기술장벽) 협정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TBT 협정 및 TPP TBT 협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술규제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우리나라 기체결 FTA TBT 협정의 주요 핵심조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TPP와 RCEP과 같은 Mega FTA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기술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향후 TPP 가입 시에 우리 측 입장과 대응전략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15건의 FTA 협정을 살펴보면, 그중 11개국과 체결한 FTA 협정에서 TBT 협정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TO 협정을 토대로 우리나라 기체결 FTA TBT 협정 중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및 투명성 등 주요조항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표준의 경우 대부분 체결국과 체결한 TBT 협정에서 WTO 협정과 TBT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EU, 캐나다, 중국과 체결한 협정에서는 WTO보다 높은 수준(WTO+)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기술규정의 경우 최혜국대우(MFN) 및 내국민대우, 동등성 수용, 불필요한 장벽 제거 및 투명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중 MFN 및 내국민대우 조항의 경우 WTO 협정 이상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동등성 수용 관련 조항은 대부분 WTO 협정과 유사하거나 낮은(WTO-)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셋째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경우 내국민대우, 결과의 상호인정, 투명성으로 분류하여 협정 조항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국과 체결한 TBT 협정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여기에는 적합성 평가절차뿐 아니라 평가기관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에 대한 조항도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투

명성 조항은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투명성을 동시에 다루었다. WTO 협정과 달리 우리나라 기체결 TBT 협정의 경우 투명성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투명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투명성을 준비 및 개발 - 통보 - 채택 - 공포 - 발효 및 시행의 절차 순서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새로운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통보 시기, 통보 대상, 통보 범위, 공표 위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투명성 조항 역시 미국, EU와 체결한 TBT 협정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TBT 협정 특징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TPP TBT 협정 조항의 특징을 후속 장에서 살펴보았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TPP 협정도 WTO 협정이나 우리나라 기체결 TBT 협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적합성 평가, 투명성, 유예기간, 협력, 부속서 등 일부 조항에서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규범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TPP 협정은 그간 체결되었던 모든 FTA 또는 RT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중 적합성 평가에는 평가절차에 대한 내국민대우 또는 MRA 수용가능성뿐만 아니라 적합성 평가의 내국민대우와 요구조건 완화 등이 규정되어 있다. 더불어 투명성 조항에는 TBT 조치의 제·개정 시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이 구체적으로 수준 높게 명시되어 있다.

TPP 협정은 대부분 WTO 협정에 근거하여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TPP 가입 시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특정 품목에 대한 일부 규정과 WTO+ 및 TBT+ 조항의 경우에는 국내 제도의 개선 또는 일부 국내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TPP TBT 협

정 중 우리나라가 직면하게 될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으나, ① 시험인증산업 ② 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 일부 산업 경쟁력 제고 가능성 ③ 국내거소요건 폐지(요구조건 수준 개정) 등에 대한 의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기술규제정책 및 제도 현황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대내적, 대외적 정책방향과 향후 Mega FTA에서의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대내적 정책방향으로는 ① 국내 기술규제정책 검토 및 활성화 ② 타국 규제개혁 현황 모니터링 ③ 중소기업 이해관계의 의견 적극 수렴 ④ TBT 관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도입 및 실시 ⑤ WTO TBT 위원회 측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 등이 있다. 그다음 대외적 정책방향으로는 ① 시장개방 확대를 위한 규제조치 완화정책 도입 ② 일부 품목의 단일협정 추진 ③ 제도 개선을 통한 신규법 도입, 채택 및 적용 등을 제시하였다.



## 차례

<b>국문요약</b> .....	<b>3</b>
<b>제1장 서론</b> .....	<b>11</b>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1
2. 보고서의 구성 및 범위 .....	13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14
<b>제2장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 분석</b> .....	<b>17</b>
1. WTO TBT 협정문의 구조 및 특징 .....	17
2.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의 구조 및 특징 .....	22
3. WTO TBT 협정과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 비교 분석 .....	28
가. 국제표준 .....	28
나. 기술규정 .....	31
다. 적합성 평가절차 .....	34
라. 투명성 .....	42
<b>제3장 TPP TBT 협정문 주요내용 및 비교 분석</b> .....	<b>56</b>
1. TPP TBT 협정과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 비교 .....	58
가. 국제표준 .....	65
나. 기술규정 .....	66
다. 적합성 평가 .....	66
라. 투명성 .....	74
2. TPP TBT 협정 조항의 국내 기술규제와의 조화 .....	80
가. 우리나라의 기술규제정책 및 제도 현황 .....	81
나. TPP TBT 협정과 국내 관련 법률조항 및 제도 현황 비교 .....	86

3. 소결 .....	99
<b>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b>	<b>104</b>
1. 요약 및 결론 .....	104
2. 정책적 시사점 .....	106
가. 대내적 정책방향 .....	106
나. 대외적 정책방향 .....	115
<b>참고문헌 .....</b>	<b>128</b>
<b>부록 .....</b>	<b>134</b>
<b>Executive Summary .....</b>	<b>137</b>





## 표 차례

표 1-1. 주요 선행연구 및 차별성 .....	16
표 2-1. WTO TBT 협정문 주요 원칙 및 조항 .....	20
표 2-2. 우리나라의 FTA TBT 협정 시기별 특징 .....	23
표 2-3.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 조항 .....	24
표 2-4. 우리나라의 FTA TBT 협정 특성 .....	25
표 2-5. 한국의 기체결 FTA TBT 주요 조항 .....	27
표 2-6. 우리나라 기체결 TBT 협정 '(국제)표준' 의무 범위 .....	30
표 2-7.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위한 메커니즘 .....	37
표 2-8.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대한 WTO TBT 협정 및 기체결 TBT 협정의 비교 .....	53
표 3-1. TPP TBT 협정의 주요 조항 및 여타 TBT 협정 조항과의 조화 .....	60
표 3-2. TPP TBT 협정 「적합성 평가」 조항 내용 .....	67
표 3-3. TPP TBT 협정 「투명성」 조항 수준 분석 .....	78
표 3-4. KS 국제표준 부합화 현황(2015년 말 기준) .....	84
표 3-5. TPP 협정 '적합성 평가' 조항의 국내법과의 조화 .....	92
표 3-6. TPP 협정 '투명성' 조항의 국내법과의 조화 .....	96
표 3-7. TPP 협정 '유예기간' 조항의 국내법과의 조화 .....	98
표 3-8. TPP 협정 조항 수용 가능여부 요약 .....	100
표 4-1.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 프레임워크 .....	109
표 4-2. RCEP 참여국별 TBT 협정 주요 관심 조항 .....	121
부록 표 1. TPP TBT 협정문의 주요 내용 .....	128



##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구성 및 흐름도 .....	13
그림 2-1. 적합성 평가기관 및 절차의 구조 .....	39
그림 2-2. 적합성 평가에 대한 협정 수준 비교 .....	40
그림 2-3. 기술규정의 TBT 통보 절차도(플로차트) .....	43
그림 2-4. 기술규정 제·개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절차 .....	45
그림 2-5. 적합성 평가절차 제·개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절차 .....	51
그림 4-1.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 체계 .....	110
그림 4-2. TBT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체계(안) .....	112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지난 10여 년간 급속도로 증가해온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은 최근 심화된 글로벌 가치사슬(이하 GVC: Global Value Chain)의 창출에 따라 다지역간 Mega FTA 형태로 통상환경이 변화하면서 비관세조치 또한 핵심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를테면 양자간 또는 다자간에 체결된 FTA로 관세장벽이 10여 년 전과 비교할 때 대폭 낮아지거나 철폐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국민의 보건, 안전 및 환경보호 등의 목적으로 무역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비관세조치로는 무역기술장벽(이하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비롯해 함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수량제한, 보조금, 통관절차, 정부조달, 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금융, 서비스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에게 TBT 조치는 경우에 따라 보건, 안전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자국 산업 보호 목적과 해외시장으로의 수출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무역조치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과도한 TBT 조치가 간혹 교역국간 원활한 무역에 장애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 아래 우리나라를 비롯한 WTO 회원국은 1995년에 WTO TBT 협정에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 회원국은 상이한 기술규제조치 및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원활한 무역흐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이러한 TBT 조치를 대표적인 비관세조치로 지목해 왔다.

이렇듯 국가별로 서로 다른 기술규제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점을 완화하

고자 회원국은 WTO TBT 협정 외에도 이를 골자로 한 양자간 FTA TBT 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양국간 합의하에 채택 및 시행되고 있는 관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대부분의 FTA TBT 협정은 구성 측면에서는 대체로 유사하나, 내용 측면에서는 체결국별로 일부 차별화된 조항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비관세조치 중 하나인 TBT 조치가 WTO TBT 협정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기체결된 FTA TBT 협정 중 주요조항을 분석함으로써 각 국가별 기술규제정책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단,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교역국 또는 거대경제국인 EU, 미국, 캐나다, 중국 및 베트남과 체결한 FTA TBT 협정만을 연구 범위로 한정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 TBT 협정문 중 주요 핵심조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Mega FTA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기술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향후 TPP를 포함한 Mega FTA에 가입 시 우리 측 입장과 대응전략을 제안하고자 본 연구를 구상하였다.

본 연구는 그중에서도 특히 최근 타결된 TPP 협정에서의 TBT 주요조항을 분석하고, 앞으로 논의될 Mega FTA에서의 TBT 협상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려고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Mega FTA의 핵심 축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전략적 방안과 일련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TPP 및 여타 Mega FTA 참여에 대한 TBT 협상과제 및 대응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한·일 양국간의 FTA로 간주되는 우리나라의 TPP 참여가 우리나라 기술정책 및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여 TPP를 비롯한 여타 Mega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입지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 차원에서 비롯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내용이 향후 우리나라 TBT 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 시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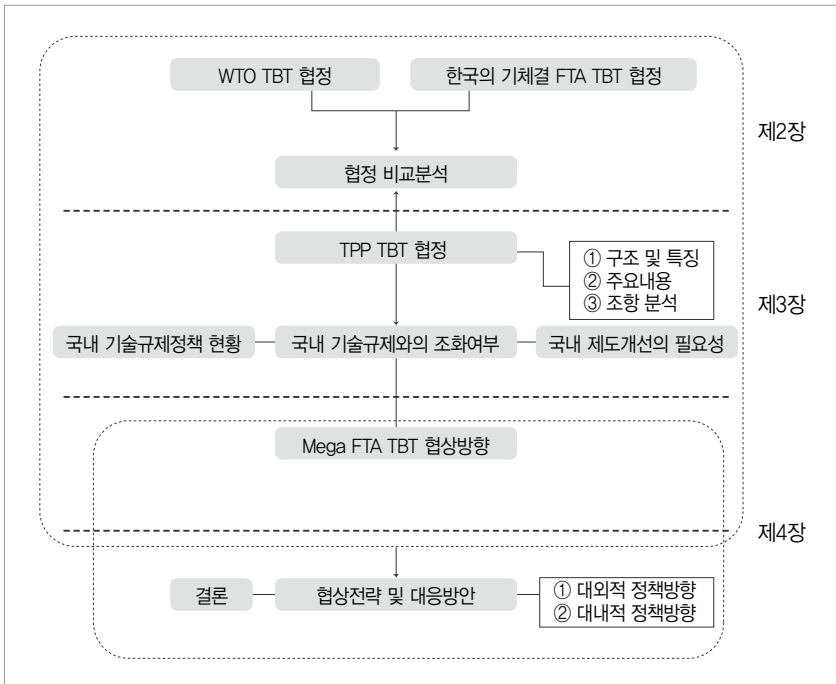
## 2. 보고서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WTO TBT 협정문에 기초하여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 TBT 협정 및 최근 타결된 TPP 협정을 분석하고 Mega FTA 논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술규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그림 1-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WTO TBT 협정이 모든 분석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WTO TBT 협정문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TBT 협정의 핵심조항을 중심으로 상호 비교하여 각 조항의 의무 수준을 식별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의 구조 및 특성을

그림 1-1. 연구의 구성 및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파악하고, WTO TBT 협정과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기술규제조치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내국민대우, 불필요한 장애 제거, 투명성 및 상호 협력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체결국마다 TBT 협정문에 포함되어 있는 조항이 다르므로, WTO TBT 협정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TBT 협정문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조항을 병렬적으로 상호 비교를 시도하였다.

제3장에서는 최근에 공개된 TPP TBT 협정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그중에서 대표 기술규제조치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관련 조항의 수준을 식별하였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TPP TBT 협정에는 WTO TBT 협정 또는 우리나라의 기체결된 FTA TBT 협정에는 없던 신규 조항이 일부 신설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TPP 참여를 염두에 두고 국내의 제도 개선 또는 법률 제·개정을 통한 규제 조화가 요구되는바 해당 장에서는 국내 기술규제정책 및 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국내 법규와 TPP TBT 협정 내 신규 조항 간의 조화 여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앞에서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향후 TPP의 가입 또는 앞으로 논의될 Mega FTA에서의 TBT 협상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Mega FTA의 핵심 축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과 일련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이 연구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기체결한 FTA TBT 협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여타 Mega FTA TBT 협정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표 1-1 참고).

EU,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기체결된 FTA TBT 협정 조항 및 조문을 상세히 다루는 연구가 많지 않았다. 그동안 FTA 체결을 통해

보편적인 관세인하로 인한 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이 꾸준히 선행되어왔으나,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TBT 협정 내용 간 상호 비교분석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 다음과 같은 의의를 추가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첫째, WTO TBT 협정을 우리나라의 기체결된 FTA TBT 협정과 비교분석하였다. 대표적 기술규제조치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를 주요 조항으로 선별한 후 우리나라의 기체결 TBT 조항의 의무 수준을 식별하였다. WTO TBT 협정 주요내용 파악에 의의를 추가해 우리나라의 TBT 협정 수준을 식별한 연구는 국내에 많지 않다는 점을 미루어 여타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최근 공개된 TPP TBT 협정의 주요조항을 우리나라의 기체결 TBT 협정 조항과 비교하고, 국내 법규에 존재하는지와 그 일치 여부를 살펴보았다. TPP 협정문의 공개시점이 오래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해당 TBT 협정을 중점적으로 우리나라 협정문과 비교분석한 연구는 이 연구가 국내에서 처음이다.

셋째, TPP 협상의 타결로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여타 Mega FTA의 최근까지의 TBT 주요쟁점을 업데이트하였다는 것이 기존 연구에 추가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참여 중인 RCEP 참여국간 의견대립, 주도권 부재 등의 문제로 협상 타결 가능성 및 시점이 불투명하므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까지의 해당 Mega FTA에서의 각 국가별 입장을 정리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협상전략 또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대개 현황을 정리하는 수준에 머무르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TBT 협상 과제와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 TBT 협정과 국내에서 이미 시행 중인 법률 및 제도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시에 TBT 협정 조항 수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표 1-1. 주요 선행연구 및 차별성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유새별(2016), 『TPP 무역상 기술장벽(TBT) 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TPP TBT 협정 원문과 부속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 TBT 협정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TPP TBT 협정 수준을 파악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TPP 가입 시 대응방안 및 시사점 제시
		연구방법론	선행연구 문헌조사, TPP TBT 협정문 및 우리나라 기체결 FTA TBT 협정문 분석
	2	과제명	최보영 외(2015),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한중일 비관세장벽 관세상당치 추정 및 한중일 국가별, 산업별 비관 세조치 현황 파악 후 정책적 시사점 제시
	3	연구방법론	기초통계분석, 중력모형(gravity equation) 활용한 실증분석, 문헌 분석, 전문가 면담 등
		과제명	유새별(2015), 『한·중 FTA 무역상 기술장벽(TBT) 협정 비교 및 정책 시사점』.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최근 타결된 한·중 FTA TBT 협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한국과 중국이 각각 공통으로 기체결한 TBT 협정(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페루 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
	4	연구방법론	선행연구 문헌조사, 한국과 중국이 각기 기체결한 FTA TBT 협정문 및 부속서 분석
		과제명	백종현(2014), 『한국의 FTA TBT분야 이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우리나라의 FTA TBT협정 시기별 특징을 도출하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해온 FTA TBT 협정의 주요 특성과 이행 현황 평가	
5	연구방법론	한국 기체결한 FTA TBT 협정문 특징 파악	
	과제명	이주윤(201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6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FTA 협정 전체를 일견해 봄으로써 모든 협정문의 구조와 규율 형식과 각 협정문의 주요 규정을 비교 고찰	
	연구방법론	선행연구 문헌조사, 우리나라 기체결 FTA 협정문 분석	
	과제명	하선권, 최정택, 김성준(2011), 『기술규제장벽(TBT)협정에 따른 한국 정부 대응방안』.	
7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WTO/TBT 협정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방안 모색	
	연구방법론	선행연구 문헌조사, WTO/TBT 협정문 분석	
	과제명	박동준, 강인선(2009), 『WTO/TBT 협정에 따른 기술규제 동향과 대응 방안: 기술표준에 의한 생산성 제고 관점』.	
연구목적 및 내용의 차별성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우리나라의 적합성 평가시스템 운영 현황과 활동, 외국 기술규제 사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규제 대응 지원 방안 제시	
	연구방법론	WTO/TBT 협정문 분석, WTO/TBT 기술규제 및 인정기구 동향	
연구목적 및 내용의 차별성		한국이 지난 10년 동안 기체결한 주요 FTA TBT 협정 및 TPP 협정 조항을 비교 분석함. 이 결과를 토대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Mega FTA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TBT 예상 이슈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자료: 저자 작성.



### 1. WTO TBT 협정문의 구조 및 특징

대부분의 FTA 협정문은 편의상 일반규정과 분야별 규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분야별 규정에는 관세조치를 제외한 여타 비관세조치 관련 협정이 포함되어 있다.<sup>1)</sup> 관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나 동시에 기술장벽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조치가 급증하는바 이러한 조치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공산품의 대세계 수출 비중이 높으며, 제조업 중심 수출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교역상대국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의 차이로 인해 무역에 대한 장벽을 느끼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무역에 있어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함과 동시에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1995년에 WTO 회원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WTO 회원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하 WTO TBT 협정)」 체결 이후에도 양자간 또는 지역간 FTA 협정을 통해 국가별 정책, 국내 제도, 우선순위 등을 반영한 TBT 협정을 별도로 구성하여 이행하고 있다.

1995년에 발효된 WTO TBT 협정(이하 WTO 협정<sup>2)</sup>)은 인간과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 환경보호, 국가안보 등을 위한 조치를 제외하고 회원국간 서

1) 김종덕, 엄준현(2013), p. 24.

2) 본래 「WTO TBT 협정」의 경우, 「TBT 협정」으로 통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고에서는 양자간 FTA TBT 협정문과의 비교분석이 주 내용을 이루므로, 양자 FTA에서의 「TBT 협정」과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바 편의상 「WTO 협정」으로 통칭하였다.

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으로 인해 무역흐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기술장벽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WTO(2014)에 따르면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논의되었던 WTO 협정의 기본 원칙에는 ① 비차별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 ② 불필요한 무역장벽 방지(Avoidance of Unnecessary Barriers to Trade) ③ 국제표준의 사용(Use of International Standards) ④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 특별 및 차등대우(Technical Assistance an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⑤ 투명성(Transparency) 등이 있다.<sup>3)</sup> 이러한 다섯 가지 기본원칙은 대표적인 TBT 조치로 분류되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모두 적용된다.

이 TBT 조치는 WTO 협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로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은 제품의 특성이나 관련 생산공정 방식에 해당하며, 대부분 ‘강제성(mandatory)’을 띠고 있다. 주로 전문용어, 기호, 포장, 마킹과 라벨링 요건 등과 관련 있다.<sup>4)</sup> 둘째로 표준(Standards)은 원칙, 가이드라인 또는 제품 또는 관련 프로세스 및 생산 방식을 기준할 수 있는 인정기관에 의해 승인된 규격을 의미한다. 이는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으며(not mandatory), 기술규정과 동일하게 전문용어, 부호, 포장, 마킹과 라벨링 요건 등과 연관된다. 셋째로 적합성 평가절차(CAP: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의 경우 기술규정 또는 표준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절차이다. 적합성 평가절차는 적합성 평가를 위한 표본 추출, 시험, 검사, 평가, 검증 및 보증, 그리고 등록, 인정 및 승인 등의 절차를 포괄한다.

이러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의 규제조치는 WTO 협정의 다섯 가지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양자간 또는 지역간 FTA 협정 TBT 조항(이하 FTA TBT 협정5))의 기초가 된다. 즉, 기술규정, 표준 및 적

3) WTO(2014), p. 15.

4) *Ibid.*, p. 14.

5) 본래 양국간 또는 지역간 FTA 협정의 TBT 조항의 경우 「FTA 협정 TBT 조항」으로 통용되는 것이 일반

합성 평가절차의 최혜국대우(이하 MFN: Most Favored Nation) 및 내국민대우와 투명성 보장, 해당 조치에 대한 상호 협력 관련 규정이 TBT 협정문의 핵심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1]은 TBT 협정의 주요 원칙과 주요 조항을 나타내고 있다. WTO 협정은 15개 원문 조항과 3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용 범위는 중앙 및 지방정부, 비정부 등을 포괄한다. WTO 협정은 제2조에서 중앙/지방정부, 비정부 등의 표준화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적용에 관한 규정을, 제3조에서는 표준의 준비, 채택, 적용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조항은 4개 조(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걸쳐 내국민대우, 처리기간, 정보의 비밀보장, 투명성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WTO 협정은 각 당사국에서 제·개정하거나 공포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정보를 회원국에 알리고 타(他) 회원국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질의처(Enquiry Point)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이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준비 및 적용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장애를 겪지 않도록 장려하는 이른바 선진국의 대개발도상국의 기술지원, 특별대우 및 차등대우 제공 관련 조항이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WTO 협정은 크게 상품의 특성과 생산방법 등에 대해 이행 의무를 강제하는 필수조항과 규정 준수가 자발적인 임의조항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규정 준수에 강제성을 가진 필수조항의 경우 해당 조문에 'shall'로 기술되어 있으며, 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대한 ① MFN 및 내국민대우 확보 ② 불필요한 무역장벽 제거 ③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사용 의무 ④ 투명성 확보 등의 조항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편 법률 준수가 자발적이나 가급적 준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임의조항의 경우에는 'may'로 기술되어 있다.

---

적이거나, 본 연구에서는 WTO TBT 협정, TPP TBT 협정, Mega FTA TBT 협정 등 혼동될 만한 협정 명칭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바 편의상 'FTA TBT 협정'으로 통칭하였다.

표 2-1. WTO TBT 협정문 주요 원칙 및 조항

분류	조항	내용
기술규정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기관</li> <li>• 지방정부기관</li> <li>• 비정부기관</li> </ul>
	비차별 및 내국민대우	(제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규정 관련 타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이 자국 또는 그 밖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보장</li> <li>• 수입 제품에 대한 CAP, 관련 비용 및 정보 요건에 대해서도 동일 조항 적용</li> </ul>
	동등성 수용	(제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당사국이 자국의 기술규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경우 자국 기술규정과 동등성 수용을 고려</li> </ul>
	불필요한 장벽 제거	(제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절한 경우, 회원국은 도안 또는 외형적 특성보다는 성능을 기준으로 기술규정 명시</li> </ul>
	투명성	(제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기술규정 도입시 적절한 초기 단계에 공표</li> <li>• 기술규정의 목적과 적용되는 상품 등에 대한 내용 WTO 사무국에 통보</li> <li>• 타 회원국의 요청 시 제·개정(안)의 상세 내용 및 정보 제공</li> <li>• 타 회원국에 의견 제시 기회 보장</li> </ul> (제2.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국의 안전, 건강, 환경보호, 국가안보 등의 사유로 제2.9조의 단계를 생략할 경우, 긴급한 문제의 성격, 기술규정의 목적 및 대상품목 등의 대한 정보를 타 회원국에 통보</li> </ul> (제2.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택된 모든 기술규정은 신속하게 공표 또는 타 회원국이 입수할 수 있도록 보장</li> </ul> (제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국 중앙정부 산하 지방정부에서 기술규정 제·개정하는 경우 제2.9조 및 제2.10조 규정에 따라 통보</li> </ul>
	표준	(제4.1조) 모범규제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대해 모범규제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을 준수하도록 보장(부속서 3)</li> </ul>
적합성 평가절차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기관</li> <li>• 지방정부기관</li> <li>• 비정부기관</li> </ul>
	비차별 및 내국민대우	(제5.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P 관련 타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이 자국 또는 그 밖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준비, 채택 및 적용</li> </ul>

표 2-1. 계속

분류	조항	내용
	불필요한 장벽 제거	(제5.1.2조) • CAP으로 인해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
	투명성	(제5.6조 및 제7.1조) • CAP의 제개정 시 국제표준화기관에 의한 지침이나 권고사항과 일치하지 않거나, 해당 CAP가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 타 회원국의 이해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 공표 △ WTO/TBT 사무국을 통해 CAP의 목적 및 적용되는 상품 등에 대한 내용 통보 △ 요청이 있을 시 제개정(안)과 관련된 상세 내용 등의 정보 제공 △ 타 회원국의 의견 제시 기회 보장 (제6.4조) • CAP의 과정에 타 회원국 국민의 참여 허용 보장
	상호인정협정	(제6.1조) • 기술규정 및 표준에 대한 타 회원국의 CAP이 자국의 절차와 동등하게 적용 가능한 경우 타 회원국의 CAP의 결과 수용을 보장 (제6.3조) • 타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시 CAP의 결과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 장려
협력	기술지원	(제11조) • 기술규정의 준비, 국가표준기관의 설립, 국제표준기관에의 참가, 시험 및 인증을 위한 적절한 설비와 역량 강화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데 합의
	특별 및 차등대우	(제12조) • 기술규정, 표준, CAP의 준비 및 적용함에 있어 해당 조치가 개발도상국 수출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회원국의 특별한 개발, 재정 및 무역상 필요를 고려

자료: WTO TBT 협정문을 토대로 저자 정리.

이와 동시에 많은 WTO 회원국이 RTA 체결 시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있어 타 회원국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생산자에 대해 비차별적인 대우를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TBT 협정 내 규범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한 TBT 조문 또는 장(章, chapter)을 구성하고 있다.<sup>6)</sup> 즉, 회원국은 개별 TBT 협정의 체결 시 WTO보다 의무의 범위가 확대된 WTO+ 조항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는 체결국간 준수해야 할 의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정의 법률적 구속력을 강화하

6) Lee(2012), p. 2.

여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완화함과 동시에 원활한 시장접근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WTO+ 조항을 신설할 때는 자국내 법률과의 조화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자국 내 주요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의 필요성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 2.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의 구조 및 특징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Free Trade Agreement)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2개국과 15건의 FTA를 발효 또는 타결하였다.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 협정에는 대부분 비관세조치에 대한 규정이 삽입되어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공론화가 지속되고 있는 TBT 협정은 그중에서도 관심 비중이 높은 비관세조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15건의 FTA 협정에는 대부분 TBT 조항이 비교적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편이나, 이 중 11개국과 체결한 FTA 협정에서만 TBT 관련 장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다.<sup>7)</sup> 그중에서도 10건의 FTA 협정은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라는 정식 명칭 아래 별도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EFTA, ASEAN, 인도, 호주와의 협정 등 나머지 4건의 FTA TBT 협정의 경우 TBT 및 SPS가 동일한 장에 하나로 결합되어 구성되었거나, 또는 일반 협정 원문에서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등의 명칭 아래 조항(article)의 형식으로 다소 간결하게 언급되어 있다.<sup>8)</sup>

---

7) 한·칠레(제9장), 한·싱가포르(제8장), 한·EU(제4장), 한·페루(제7장), 한·미(제9장), 한·터키(제5장), 한·캐나다(제6장), 한·콜롬비아(제6장), 한·중(제6장), 한·뉴질랜드(제6장), 한·베트남(제6장) 등 총 11건의 FTA는 TBT 장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다.

8) 일부는 Standard-Related Measures(표준관련 조치), Technical Regulations(기술규정)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칠레, EFTA, 인도, 캐나다 등과 체결한 FTA TBT 협정에서 나타난다.

백종현(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시기별로 FTA TBT 협정 특징이 다른데, FTA TBT 협정 초기에는 WTO 협정을 준용하던 소극적 방식에서 FTA TBT 협상 추진 구축 및 활동기를 거쳐 체결 상대국의 기술규정 제·개정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을 요구하거나 적합성 평가절차의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발전하였다(표 2-2 참고).

우리나라가 지난 10여 년간 체결해온 FTA TBT 협정은 여타 국가의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협정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TBT 주요조항을 정리하면 다음 [표 2-3]과 같다. 대부분의 TBT 협정문은 약 10~11개 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 적용범위 △ WTO TBT 협정의 재확인 △ 적합성 평가절차 △ 투명성 △ 국제 표준 △ 협력 △ TBT 위원회 등 TBT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양자간 또는 지역간 TBT 협정

표 2-2. 우리나라의 FTA TBT 협정 시기별 특징

구분	특징
제1기 FTA TBT 협상 기반 조성기 (1998~200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징) 기업 외화 유동성 위기에 따른 IMF 구제금융 체계 탈피를 위한 적극적인 통상정책 추진 시작</li> <li>• (추진체계)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설립. TBT 전담조직은 없음</li> <li>• (FTA 발효현황) 한·칠레 FTA 타결('02. 10. 25)</li> <li>• (FTA TBT 협정특징) 대부분 WTO TBT 협정 준용</li> </ul>
제2기 FTA TBT 협상 추진체계 구축 및 활동기 (2003~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징) 주요 교역국과의 FTA 협상 활동 전개</li> <li>• (추진체계) 외교부 FTA국 신설. TBT 중앙사무국 출범</li> <li>• (FTA 발효현황) 한·칠레('04. 4. 1), 한·싱가포르('06. 3. 2), 한·미('12. 3. 15), 한·EU('11. 7. 1), 한·EFTA('06. 9. 1), 한·인도('10. 1. 1), 한·ASEAN('07. 6. 1~'09. 9. 1), 한·페루('11.8.1)</li> <li>• (FTA TBT 협정특징) 기술규정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 적합성평가 상호 인정, 양국 협력 강조</li> </ul>
제3기 FTA TBT 협정 추진체계 정비 및 전환기 (2013~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징) 통상 3.0 신통상 로드맵에 따른 협상 추진</li> <li>• (추진체계) 통상교섭업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 TBT 민관 협력포럼 출범</li> <li>• (FTA 발효현황) 한·터키('13. 5. 1), 한·호주('14. 12. 12), 한·캐나다('15. 1. 1), 한·콜롬비아('13. 2. 21)</li> <li>• (FTA TBT 협정특징) 양자간 방식에서 지역 및 신통국 위주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li> </ul>

자료: 백종현(2015), p. 17.

표 2-3.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 조항

	조항	칠레	싱가포르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sup>1)</sup>	캐나다 <sup>2)</sup>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1	적용범위	0	0	0	0	0	0	0	0	0	0	0	0
2	정의	0	0	0	0	0	0	0	0	0	0	0	0
3	TBT 협정 재확인	0	-	0	0	0	0	0	0	0	0	0	0
4	적합성 평가절차	0	0	0	0	0	0	0	-	0	0	0	0
5	투명성	0	-	-	0	0	0	0	0	0	0	0	0
6	(국제)표준	0	0	0	0	0	0	0	0	0	0	0	0 <sup>3)</sup>
7	협력	0	-	0	0	0	0	0	0	0	0	0	0 <sup>4)</sup>
8	TBT 위원회	0	0	0	0	0	0	0	0	0	0	0	0
9	정보교환	-	-	-	0	0	0	0	-	0	0	0	0
10	기술규정	-	-	0	0	0 <sup>5)</sup>	0	0	-	0	0	0	0
11	표시 및 라벨링	-	-	0	-	-	-	0	-	-	0	-	-
12	그 외			+2 <sup>6)</sup>				+1 <sup>7)</sup>			+2 <sup>8)</sup>		

주: 1) 한·호주 FTA TBT 협정의 경우 제5장에 기술상 무역장벽(TBT)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를 동일한 장에서 다룸.

2) 한·캐나다 FTA TBT 협정의 경우 제6장에 기술상 무역장벽(TBT)이라는 명칭 대신 「표준 관련 조치(Standard-Related Measures)」로 표기함.

3) 특정 산업인 「자동차 표준 관련 조치 및 기술규정」을 의미함.

4) 특정 분야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력(의료장비, 의약품, 통신장비, 전기기술, 목재 건축제품 및 관련 자재 등).

5) 특정 산업인 「자동차 표준 및 기술규정」을 의미함.

6) 한·EU의 경우 「(제4.7조)시장 감시」 및 「(제4.8조)적합성 평가 비용」 포함.

7) 한·호주의 경우 「(제5.11조) 분쟁해결」 포함.

8) 한·중국의 경우 「(제6.9조) 소비자 제품 안전」 및 「(제6.12조) 국경 조치」 포함.

자료: 최보영 외(2015) 및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 조항을 토대로 저자 재정리.

은 WTO TBT 협정문 조항에 기초하여 구성하되, 체결국 간 당사국의 정책, 자국 법규, 우선순위, 또는 일부 민감품목 등 강조되는 특정 사항을 재진술하거나 추가의무를 담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 중 백중현(2015)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 WTO TBT 협정 이행 △ 적합성 평가 및 기술규정 제·개정 단계의 투명성 확보 △ 적합성 평가절차 상호인정 △ 양자간 협력 △ TBT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중심을 두고 있다(표 2-4 참고).



표 2-4. 우리나라의 FTA TBT 협정 특성

구분		특징
WTO TBT 협정 이행		• WTO TBT 협정 권리 의무 사항 확인과 조치 등
투명성 확보	표준, 적합성평가 제·개정 절차에서 당사국 참여 보장	• 표준, 적합성 평가, 기술기준 제·개정 시 국제표준에 따른 제·개정 원칙 • 표준, 적합성 평가, 기술기준 제·개정 시 당사국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및 의견개진권 보장
	양자간 정보제공 메커니즘 마련	• 표준, 적합성 평가, 기술기준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양국 공식 사이트의 운영 및 정보의 적시 제공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협정 및 기술기준 동등성 추진 협력과 이행	• (적합성평가) 시험·인증결과와 상호인정을 위한 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 유지 및 사후관리, 대상 품목 및 기준 개발, 정보교환 등 상호 협력하고, 상호인정협정 추진 • (기술기준 동등성) 양국 입법목적에 부합한 경우에는 규정 이 상이한 경우에도 양국 규정 동등성을 인정하도록 노력
양자간 협력	양자간 표준, 적합성평가 분야에서 기술 협력사항 규정	• 국제표준화 활동에서 양국간 협력, 표준, 적합성 평가 분야 정보공유와 교환, 기술협력프로그램의 실시 등
TBT 협의체 구성	TBT 위원회 등 양자 협력체 구성 운영	• TBT 위원회 또는 코디네이터 회의의 연례적 개최와 TBT 분야 의제 발굴 및 현안 해소 추진

자료: 백중현(2015), p. 18.

Molina and Khoroshavina(2015)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171건의 지역무역협정(이하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중 34%의 협정은 WTO 협정에 근거하고 있다.<sup>9)</sup>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기체결 FTA국가와의 TBT 협정이 WTO 협정에 기초하고 있음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확인(Affirmation of TBT Agreement)’ 조항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즉, 양자간 다자간 합의한 TBT 협정 조항은 대체로 WTO 협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규정되어 있음을 내포한다. 그러나 양자간 FTA의 경우 각 당사국의 기술 능력, 자국 법령 및 제도 등에 따라 WTO 협정 조항 범위와 체결 수준이 각기 다르다. 이에 대해 WTO 협정에 명시된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의무보다

9) Molina and Khoroshavina(2015), p. 5.

조항의 범위가 넓고 진전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WTO+ (WTO 플러스), 그렇지 않은 경우 WTO- (WTO 마이너스)로 구분되어왔다.<sup>10)</sup>

Charnovitz(2006)는 WTO+와 WTO-로 구분하는 것이 협정 수준을 식별함에 있어 가장 유용한 방식(prism)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토대로 WTO 협정보다 의무수준이 높을 경우 WTO+, 의무수준이 낮을 경우 WTO-, WTO 협정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수준일 경우 WTO(O)으로 구분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 또는 여타 회원국이 각기 기체결한 양자간 또는 지역간 FTA TBT 협정보다도 높은 수준일 경우 일부 TBT+로 구별하였다. 이렇듯 WTO+ 또는 WTO-<sup>11)</sup> 요소를 식별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체결된 FTA 협정 TBT 조항의 체결 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Mega FTA 또는 양자간 FTA 협상 시 지표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양자간 또는 지역간 FTA를 추진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WTO 회원국으로서 WTO 협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대체로 WTO 협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항을 구성하도록 장려된다. 우리나라도 유사한 형태로 양자간 및 지역간 FTA TBT 협정문을 구성하고 있다.

후속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체결된 FTA TBT 협정 중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중심으로 WTO 협정과 비교분석하여 TBT 협정 이상의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식별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원(原)협정을 위주로 분석하였으며, 서신교환(Exchange of Letters) 및 부속서(Annex)는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 범위는 [표 2-5]를 토대로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의

---

10) Charnovitz(2006), p. 405.

11) WTO 협정이 이미 발효된 상황으로 어떠한 FTA 협정 TBT 조항이 WTO- 요소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WTO에 의한 규범 준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WTO-의 경우 FTA 체결 당사국의 선호 조항이 아닐 가능성이 크며, 추가 의무를 부여해야 할 만큼 이행에 문제가 되는 조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수준 식별은 우리나라가 향후 참여하게 될 양자간 FTA 또는 Mega FTA 협상 시에 우리나라 협상전략을 마련함에 있어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문에 동 조항을 함께 식별하였다.

기발효 FTA 국가 중 TBT 협정문을 별도의 장(chapter)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WTO 협정과 비교분석이 가능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투명성 관련 조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분석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 또는 거대경제권인 EU, 미국, 캐나다, 중국, 베트남과 체결한 FTA TBT 협정에 한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단 WTO+ 요소가 추가되어 있을 경우 여타 개발도상국과의 FTA TBT 협정 조항도 연구 범위에 포함하였다.

표 2-5. 한국의 기체결 FTA TBT 주요 조항

	TBT협정 재확인	기술 규정	(국제)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투명성	협력	TBT 위원회	그 외 (부속서)
한·칠레 (제9장)	2조	-	4, 5조	6, 7조	8조	11조	10조	-
한·싱가포르 (제8장)	1조	-	2조	2, 5조	5조	-	7조	11조 <sup>1)</sup>
한·EFTA (제2장)	8.1조	-	-	8.4조	-	8.2조	8.5조	-
한·ASEAN (제8장)	7조	-	-	-	2, 3조	-	4조	-
한·인도 (제2장)	28.1조	-	-	-	-	28.2조	-	-
한·EU (제4장)	1조	4조	5조	6, 8조	4조	3조	10조	+3 <sup>2)</sup>
한·페루 (제7장)	2조	5조	4조	6조	7조	8조	9조	-
한·미 (제9장)	1조	7조*	3조	5조	6조	4조	8조	9-B <sup>3)</sup>
한·터키 (제5장)	1조	4조	5조	6조	10조	3조	8조	-
한·호주 (제5장)	2조	4조	3조	6조	8조	7조	9조	+1 <sup>4)</sup>
한·캐나다 (제6장)	3조	7조*	7조*	-	6조	4, 5조 <sup>5)</sup>	8조	6-A, B <sup>5)</sup>
한·중 (제8장)	3조	5조	4조	6, 10조	7조	8조	13조	+3 <sup>6)</sup>

표 2-5. 계속

	TBT협정 재확인	기술 규정	(국제)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투명성	협력	TBT 위원회	그 외 (부속서)
한·뉴질랜드 (제6장)	2, 4조	6조	5조	7, 12조	9조	8조	10조	-
한·베트남 (제6장)	2조	5조	4조	6조	7조	8조	10조	-
한·콜롬비아 (제6장)	2조	5조	4조	6조	7조	8조	9조	+1 <sup>7)</sup>

주: 1) 한·싱가포르의 경우 제8.11조에 분야별 부속서 「APEC 전기통신 및 정보 작업반」 및 「전기 및 전자장비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를 포함.  
 2) 한·EU의 경우 「(제4.7조)시장 감시», 「(제4.8조)적합성 평가 비용», 「(제4.9조)표시 및 라벨링」 등 WTO TBT 협정 이상의 조항을 포함.  
 3) 한·미의 경우 「(제9.7조)자동차표준에 대한 협력」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부속서 9-나)자동차 작업반」을 포함.  
 4) 한·호주의 경우 「(제5.5조)표시 및 라벨링」 포함.  
 5) 한·캐나다의 경우 「(제6.7조)자동차 표준 관련 조치 및 기술규정」과 「(제6.5조)특정 분야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력(의료장비, 의약품, 통신장비, 전기기술, 목재 건축제품 및 관련 자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속서에는 「(제6.7조)한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KMVSS)에 대한 목록 첨부.  
 6) 한·중의 경우 「(제8.9조)소비자 제품 안전», 「(제8.11조)표시 및 라벨링», 「(제8.12조)국경조치」 등 WTO TBT 협정 이상의 조항을 포함.  
 7) 한·콜롬비아의 경우 「(제6.12조)국경 통제 및 시장 감시」 등 WTO TBT 협정 이상의 조항을 포함.  
 자료: Puig and Dalke(2016), p. 5에서 서식 참고 및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 조항을 토대로 저자 작성.

### 3. WTO TBT 협정과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 비교 분석

#### 가. 국제표준

표준(Standard)<sup>12)</sup>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관한 조항은 WTO 협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동 조항은 기술규정과 동일하게 중앙정부기관 및 지방정부기관, 비정부 표준기관, 그리고 회원국이나 자국 영토 내 하나 이상의 기관이 회

12) 통상법상 ‘표준’은 규율대상을 의미하며, FTA 협정 TBT 조항에 언급되는 ‘국제표준’은 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조화 또는 수렴의 대상을 의미한다. 본 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표준’은 후자인 국제표준과의 조화 또는 수렴의 대상을 지칭한다.

원인 지역표준기관에 해당한다. 회원국은 WTO 협정 제4조와 부속서 3에 명시된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대한 모범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을 수용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는 중앙정부기관뿐 아니라 회원국 영토 내 지방정부 또는 비정부 표준기관, 지역표준기관도 이 모범관행규약을 수용 및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모범관행규약은 일반규정, 실질규정을 합쳐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표준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sup>13)</sup> 그러나 표준은 기술규정보다 다소 강제성이 떨어진다. 강제성(mandatory)을 갖는 기술 규정과는 달리 표준 관련 조항은 자발적(voluntary)이기 때문이다.<sup>14)</sup> WTO 협정 원문에는 모범관행규약의 적용대상과 적용범위가 간결하게 언급되어 있다. 세부적인 조항은 모범관행규약(부속서 3)에 따를 것을 권장하는데, 여기에는 표준기관이 준수해야 할 MFN 및 내국민대우, 불필요한 장벽 제거, 표준의 조화 및 투명성 등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 TBT 협정문을 살펴보면 대체로 모범관행규약의 수용·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WTO 협정 제4조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WTO TBT 위원회가 채택한 결정 및 권고사항에 규정된 원칙을 고려하는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 있다.

[표 2-6]와 같이 우리나라 주요 FTA 체결국과의 TBT 협정 내 ‘(국제)표준’ 조항의 의무 범위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 국가와의 TBT 협정에서는 WTO 협정과 TBT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 등을 준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와의 FTA TBT 협정에서는 WTO 협정 외 추가 의무사항(WTO+)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EU와의 TBT 협정에서는 정보교환, 캐나다 및 중국과의

13) WTO TBT 협정문 부속서 3 제1조에 따르면 해당 규약은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또는 비정부기관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 영토 내 소재한 표준기관(지역표준기관/비정부지역 표준기관 포함)의 수락을 위해 개방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14) WTO TBT 협정문 제4조 제1항에 “특정 표준기관이 모범관행규약을 수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표준기관의 모범관행규약의 규정 준수와 관련된 회원국의 의무는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표 2-6. 우리나라 기체결 TBT 협정 ‘(국제)표준’ 의무 범위

	의무 조항	EU	미국	캐나다	중국	베트남
WTO	모범관행규약 수용·준수	○	○	○	○	○
	WTO TBT 협정 재확인	○	○	○	○	○
	TBT 위원회 결정 및 권고 사항(1995)	○	○	-	○	○
	G/TBT/1에 규정된 원칙	○ <sup>1)</sup>	○	-	-	-
WTO+	정보교환	○	-	-	-	-
	표준기관 간 협력 장려	-	-	○	○	-

주: 1) 한·EU의 경우 2002년 5월 23일 WTO TBT 위원회가 채택한 결정 및 권고사항 「G/TBT/1/Rev.8, 제9부(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 결정)」을 의미함.  
 자료: WTO TBT 협정문 및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 조항을 토대로 저자 작성.

TBT 협정에서는 표준기관 간 협력을 장려하는 조항이 추가로 규정되어 있다. 캐나다의 경우 특정 산업(자동차)에 대해 심도 있는 표준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FTA 협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sup>15)</sup> 5개 국가 외에도 페루와의 TBT 협정에는 한·EU와 조항을 동일하게 구성하고 있다.<sup>16)</sup>

WTO 회원국은 자국 기술규정 제·개정을 위한 표준의 채택 시에 ISO, IEC, ITU, CA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해 개발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국제표준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WTO 측과 기체결 FTA 상대국에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과의 TBT 협정(제9.6조 제3항)에서는 예외적으로 국제표준과 부합하더라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WTO+라고 볼 수 있다.

15) Puig and Dalke(2015), p. 12.

16) 단 한·EU의 경우 「G/TBT/1/rev.8 (2002년 5월 23일) 제9부」, 한·페루는 「G/TBT/1/rev.10 (2011년 6월 9일) 부속서 나」, 한·뉴질랜드는 「G/TBT/1/rev.11 (2015년 1월 21일) 제1부」 등 개정판에 규정된 원칙에 근거를 둔다.

## 나. 기술규정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관한 조항은 WTO 협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중앙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도 적용되며, 적용대상별로 다소 상이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기술규정과 관련하여 동 협정문에는 MFN 및 내국민대우, 동등성 수용, 불필요한 장벽 제거 및 투명성이 규정되어 있다.

먼저 MFN 및 내국민대우는 WTO 협정문 제2.1조에 나타난다. 해당 조문에서는 기술규정에 대해 “동종 상품 및 그 밖의 국가를 원산지로서 하는 동종 상품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표준과 적합성 평가절차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다. 다시 말해 WTO 협정에서는 대표적 TBT 조치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MFN 및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국 또는 특정 지역에 한해 체결된 RTA의 경우에도 내국민대우 원칙을 따르도록 한다.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의 TBT 협정도 동일하다.

둘째로 WTO 협정 제2.2조에서는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있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국가 안보,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기술규정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규제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목적을 근거로 도입한 기술규제조치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지나친 조치를 부과할 경우 이는 협정의 정의상 무역기술장벽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항은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 국가인 EU, 미국 및 중국과의 TBT 협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EU 및 한·중 FTA TBT 협정에서는 각각 제4.9조와 제6.11조에 표시 및 라벨링을 포함한 기술규정에 대해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만한 무역제한조치를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중 EU와의 TBT 협정 조항은 일부 ‘may’의 형태로 기

술되어 있으나, 제4.9조 제2항에 “한 당사자가 상품의 강제적 표시 또는 라벨링을 요구하는 경우 동의할 것”을 규정함과 동시에 하위 조항을 ‘shall’로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 체결한 TBT 협정도 마찬가지로 ‘shall’의 형태로 기술되어 있어 의무 준수에 강제성을 띠며, 미국과 체결한 TBT 협정 제9.7조 제2항에 명시된 해당 조항 또한 ‘shall’로 기술되어 있어 법적 효력이 있다. 한·미 FTA TBT 협정에서는 본 규정에 대해 자동차라는 산업을 특정하여 조항을 마련하였다.

셋째로 WTO 협정 제2.4조 및 2.5조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기술규정의 기초로서 국제표준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예외적인 경우란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소나 근본적인 기술문제로 인해 국제표준이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이 될 경우를 의미한다. 만일 한 회원국이 기술규정의 기초로서 국제표준을 사용했거나, 또는 정당한 목적(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및 국가 안보 등)으로 인해 사용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술규정의 정당성을 설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회원국이 기술규정의 기초로서 국제표준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기술규정의 정당성을 타 회원국에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에 대해 타 회원국이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FTA 기체결 국가 중에서는 EU, 중국, 칠레, 싱가포르, 페루, 터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와의 TBT 협정에서 해당 조항을 찾아볼 수 있다.<sup>17)</sup> 그중 중국, 칠레, 싱가포르, 터키와 체결한 TBT 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은 WTO 협정 조항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sup>18)</sup> 반면 캐나다, 페루,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와 체결한 TBT 협

17) WTO TBT 협정 제2.4조에 따른 국제표준 사용에 대한 조항이 한·EU(제4.4조 제1항), 한·중(제6.4조 제3항), 한·칠레(제9.4조 제5항), 한·싱가포르(제8.2조 제4항), 한·페루(제7.4조 제1항), 한·터키(제5.4조 제2항), 한·호주(제5.3조 1항, 제2항), 한·뉴질랜드(제6.5조 제1항), 한·베트남(제6.4조 제1항), 한·콜롬비아(제6.4조 제1항)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18) 단 칠레와의 TBT 협정(제9.4조 제5항)에는 ‘기술규정’의 기초로 국제표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표준 관련(standard-related)’ 조치에 대한 기초로서 국제표준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TBT 조치 대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에는 “WTO 협정 제2.4조 및 제5.4조에 따라 …(중략)… 자국의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 사용”과 같은 표현을 통해 WTO 협정 조항을 참조(refer)하여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은 법적 강제성(shall)을 내포한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EU, 터키와의 TBT 협정에서는 WTO 협정 ‘제2.4조’를 특정하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사용하는 데 합의(agree to use)’하는 수준에 그치며, 강제성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근거를 토대로 EU, 터키와의 협정 조항 수준이 WTO 협정보다 낮다(WTO-)고 할 수 있겠다.

넷째로 기술규정의 동등성 수용 관련 조항이 WTO 협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타 회원국의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과 다를지라도 자국 기술규정의 목적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여 불필요한 검사 또는 중복되는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을 적극 고려(...‘shall’ give positive consideration...)하도록 규정된 조항이다.<sup>19)</sup> 그러나 해당 조항에는 ‘shall’이라는 의무화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고려(give positive consideration)’함에 대한 의무이므로 법적 구속력은 다소 미약하다. 동 조항은 캐나다, 중국, 베트남, 페루,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와 체결한 FTA 협정 TBT 조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sup>20)</sup> 그중 중국, 베트남, 페루,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와 체결한 TBT 협정문에는 기술규정의 동등성 미수용 시 사유를 설명할 의무도 추가되어 있다. 이는 기술규정의 동등성 수용을 장려하는 추가의무 조치로도 보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규정의 동등성 미수용에 대한 구실 마련으로도 볼 수 있다.

EU와 체결한 TBT 협정에서는 기술규정을 통일되고 일관되게 적용하도록(제4.4조 제3항)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가 EU의 기능에 관한 조

19) 류한열 외(2016), p. 48.

20) WTO TBT 협정 제2.7조에 따른 기술규정의 동등성 관련 조항이 한·캐나다(제6.7조 제2항), 한·중(제6.5조), 한·베트남(제6.5조), 한·페루(제7.5조), 한·호주(제5.4조), 한·뉴질랜드(제6.6조), 한·콜롬비아(제6.5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약과 양립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EU 내 법령에서의 편차로부터 발생하는 무역 문제를 EU 내 당사국에 통보할 시에, 그 당사국이 문제 해결에 협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의 TBT 협정에는 기술규정 동등성 수용에 대해 명확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해당 조치에 대한 협력 강화(제9.4조 제1항) 조항을 통해 기술규정의 동등성 수용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임을 고려하면 미국 및 EU와 체결한 TBT 협정 내 해당 조항 수준은 모두 WTO 협정보다 낮다(WTO-)고 할 수 있다.

## 다. 적합성 평가절차

적합성 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는 기술규정(강제성)과 표준(임의성) 관련 요건이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를 의미한다.<sup>21)</sup> 이는 기술규정, 표준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TBT 조치로 WTO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WTO 협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걸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해서도 기술규정 및 표준 관련 조항과 동일한 맥락에서 MFN 및 내국민대우, 동등성 수용, 불필요한 장벽 제거 및 투명성 등의 필수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WTO 협정에서의 적합성 평가 관련 조항은 크게 ① 적합성 평가절차의 내국민대우 ②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인정 ③ 적합성 평가절차의 투명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WTO 협정을 적용받는 대상은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을 모두 포함한다.

---

21)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해 WTO TBT 협정문 부속서 1 제3조에는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는 “표본추출, 시험 및 검사, 평가, 검증 및 적합보증, 등록, 인증과 승인, 그리고 이들의 결합”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1) 적합성 평가절차의 내국민대우

먼저, MFN 및 내국민대우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당 조항은 TBT 협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는 자국 원산의 동종 상품 또는 그 밖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의 생산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해당 조항은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 TBT 협정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sup>22)</sup>

이어 제2항에는 회원국의 이행 지침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이행 지침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해 ① 자국 동종 상품보다 불리하지 않은 순서로 가능한 신속히 실시 ② 표준처리기간 공표 ③ 평가 및 수수료 산정을 위한 정보요건을 요청 ④ 상품 정보의 비밀성 존중 ⑤ 평가 수수료의 내국민대우 ⑥ 용이한 시설의 위치 및 표본 선정 ⑦ 변경된 상품에 대해 관련 기술규정 또는 표준이 여전히 부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적합성 평가절차만을 실시 ⑧ 이의신청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의 존재 인정을 의무화('shall')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 TBT 협정문에는 이처럼 내국민대우에 대한 조항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필요시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간결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한·EU의 TBT 협정 제4.8조 적합성 평가 비용에 관한 조항이 그 예이다. 동 조항은 적합성 평가절차 내국민대우에 관한 WTO 협정 제5조 제2항 5호에 해당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조항이 한·중 간 TBT 협정 제6.6조 제5항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WTO 협정 내 이행지침 중 ③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적합성 평가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기간 및 비용에 대해 협력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22) 한·칠레(제9.6조 제1항 및 제2항), 한·EU(제5조 제1항2호), 한·터키(제5.6조 제2항 라), 한·중(제6.6조 제3항), 한·뉴질랜드(제6.7조 제1항) FTA TBT 협정문 참고.

## 2)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인정

둘째로 WTO 협정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인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적합성 평가절차의 인정(Recognition)이란 한 회원국의 적합성 평가절차가 타 회원국의 적합성 평가절차와 다를지라도 자국 절차와 동등하게 적용 가능한 기술규정 및 표준과의 적합성을 충족한다고 납득되는 경우 그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sup>23)</sup> 이는 표준의 '조화', 기술규정의 '동등성'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조치로 볼 수 있다. 해당 조항은 WTO 협정 제6.1조와 제6.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강제성('shall')을 띤다. 그러나 하위 조항인 제6조 제1항 1목 및 2목의 경우 사전협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is recognized')하는 수준으로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이어 제6.3조에서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상호인정협정(이하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체결을 위해 협상 개시를 장려하고 있다. 이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임의('~are encouraged') 조항으로 회원국 간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상호인정을 장려하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또한 제6.4조에서는 타 회원국 소재 적합성 평가기관의 자국 내 적합성 평가절차에의 참여를 허용하나, 이 또한 강제성은 다소 결여된 임의적('~are encouraged') 조항이다. WTO 협정에서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인정에 관한 조항의 비중을 크게 두지 않으며, MRA 체결과 적합성 평가기관에 관한 조항도 장려하는 수준에 그칠 뿐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미비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 TBT 협정은 다르다.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상호인정과 함께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정 등 WTO 협정에는 없는 조항이 존재한다. EU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와 기체결한 FTA TBT 협정에서는 적합

---

23) WTO TBT 협정 제6조 제1항에는 "... (중략) 다른 회원국의 적합성평가 절차가 자국의 절차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회원국이 그러한 절차가 자국의 절차와 동등한 적용가능한 기술규정과 표준과의 적합을 보증한다고 납득하는 경우, 회원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다른 회원국의 적합성평가 절차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을 보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성 평가절차 결과 수용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broad range of mechanism)의 존재 인정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표 2-7 참고). 물론 동 조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필수 조항은 아니나('recognize'), WTO 협정 외의 조항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필요시 언제든지 체결국 간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협상 개시 명분과 협력 채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7건의 기체결된 FTA TBT 협정을 통해<sup>24)</sup> 메커니즘의 존재를 인정하고, 동 메커니즘에 관한 당사자의 정보교환 강화에 합의하였다.

표 2-7.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위한 메커니즘

메커니즘	EU	미국	캐나다 <sup>1)</sup>	중국	베트남
타 당사국 영역 내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상호 수용	○	○	○	○	○
타 당사국 영역 내 소재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 부여 인정 절차	○	○	○	○	○
타 당사국 영역 내 소재 적합성 평가기관의 정부 지정	○	○	-	○	○
타 당사국 영역 내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인정	○	○	○	○	○
각국 영역 내 소재 적합성 평가기관 간 자발적 약정	○	○	○	○	○
공급자 적합성 선언 수용	○	○	-	○	○

주: 1) 한-캐나다 FTA 협정 제6.4조 제3항의 나, 다, 라, 제6.4조 제4항 순으로 해당 메커니즘 존재.

자료: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 조항을 토대로 저자 작성.

WTO 협정 제6.3조 및 양자간 FTA TBT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타 당사국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반드시('shall')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sup>25)</sup> 즉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수용은 자율적이나, 만일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상대국의 요청 시에 사유 설명은 필수적

24) 한·EU(제 4.6조 제2항), 한·터키(제5.6조 제2항), 한·호주(제5.6조 제2항), 한·캐나다(제6.4조 제6항), 한·중(제6.6조 제2항), 한·뉴질랜드(제6.7조 제3항), 한·베트남(제6.6조 제3항) FTA TBT 협정문 참고.

25) 한·페루(제7.6조 제2항), 한·미(제9.5조 제2항), 한·호주(제5.6조 제3항), 한·콜롬비아(제6.6조 제2항), 한·뉴질랜드(제6.7조 제4항), 한·베트남(제6.6조 제4항) FTA TBT 협정문 참고.

이다. 이는 WTO 협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항으로 의무가 확대(WTO+)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일부 산업 또는 품목에 한해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가급적 수용하도록 장려하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협정문도 존재한다. EU, 중국과 체결된 TBT 협정에 나타나는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IECEE-CB Scheme)’가 하나의 예시이다. 이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국제공인인증제도로, 통일된 규정(IEC 국제표준)에 따라 발행된 시험 결과를 상호간 수용하는 제도이다.<sup>26)</sup> 한·중 및 한·EU FTA TBT 협정에 이 제도를 장려하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sup>27)</sup> 또한 캐나다와의 TBT 협정에서는 자동차 산업 관련 양국간 시험성적서 수용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 국가는 양자간 FTA TBT 협정 체결 시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MRA 체결 등 협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 뉴질랜드, 칠레, 페루<sup>28)</sup> 등 개발도상국과의 TBT 협정에는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수용하기에 앞서 적절한 기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국간 협의가 필요한 조건부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도 한다.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상호인정 촉진과 더불어 몇몇 거대경제권에서는 각 국가별로 상이한 평가절차로 인해 불필요한 검사의 중복, 평가 시간 및 비용 부담 등을 줄이고자 적합성 평가에 있어 추가 협력을 도모하는 추세이다. 이를테면 상호간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정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TBT 협정에서도 해당 조항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미국, 칠레, 싱가포르, 페루와의 TBT 협정에서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정에 관한 조항을 규정해놓았다. 그중 미국과의 TBT 협정을 살펴보면 타 당사국 영역 내

---

26) 유새별(2015), 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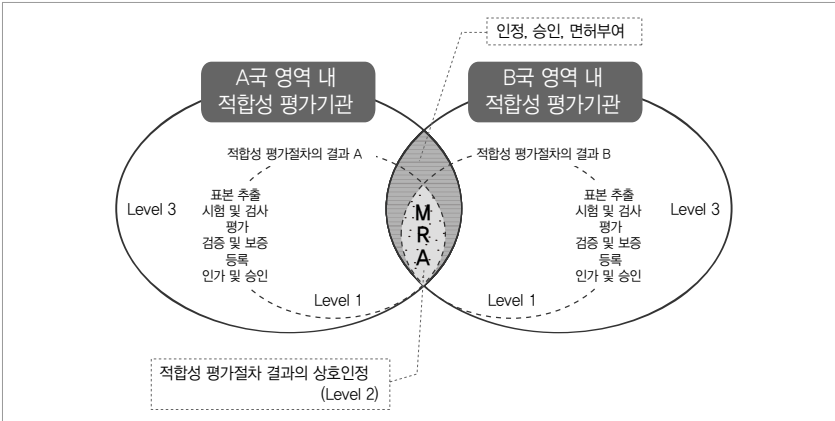
27) 한·중(제6.8조 제5항), 한·EU(부속서 2-나 제3조 나. (3), (4)) FTA TBT 협정문 참고.

28) 한·콜롬비아(제6.6조 제3항), 한·뉴질랜드(제6.7조 제5항), 한·칠레(제9.6조 제5항), 한·페루(제7.6조 제3항) FTA TBT 협정문 참고.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정, 승인 또는 면허 부여에 대한 내국민대우가 규정되어 있다. 이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내국민대우 및 투명성, 해당 절차의 결과 상호 수용에 대한 규정 이상의 범위로 타 당사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및 그 결과를 실시하는 평가기관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수준 높은(WTO+) 조항이다.

[그림 2-1]은 적합성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기관의 평가절차와 그 결과의 상호인정에 대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가령 국가 A와 국가 B 영역 내 소재하는 각 적합성 평가기관에서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와 그 결과에 대해 MRA 체결을 통해 상호간 수용하는 절차를 수준 2(Level 2)이라고 하면, 이 모든 절차 및 결과를 수행하는 각 평가기관 간의 인정 또는 승인, 타 당사국 정부에 의한 면허 부여 획득은 수준 3(Level 3)으로서 WTO 협정(Level 1)보다 수준이 두 단계 높다(WTO+)고 할 수 있다. 일례로 APEC 정보통신기기 MRA 관련해서는 시험성적서 수용과 인증결과의 수용을 각각 MRA 1단계 및 2단계로 부르며, 기술규정(제) 일관화/조화를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sup>29)</sup>

그림 2-1. 적합성 평가기관 및 절차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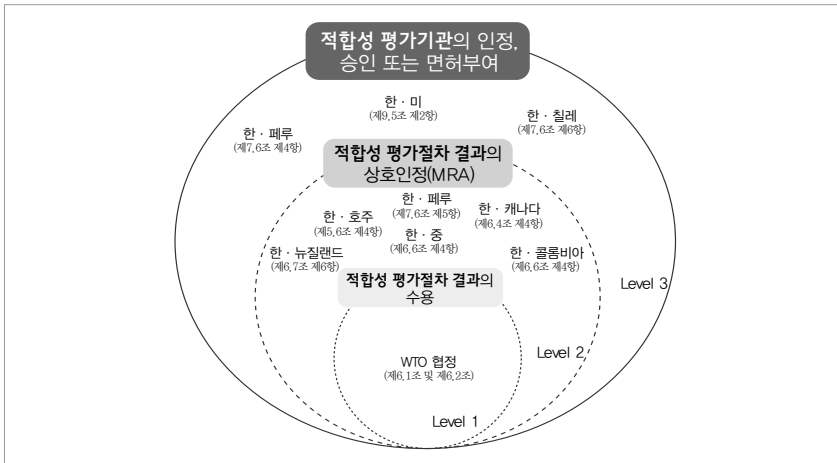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남상열 연구위원 전문가 간담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6. 24) 참고.

앞에서 분류한 기준을 우리나라와의 기체결 FTA TBT 협정 조항의 수준에 반영하면 [그림 2-2]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한 당사국이 타 당사국 영역 내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수용)은 WTO 협정에 기초한 가장 일반적인 의무라고 볼 수 있다(Level 1). 그러나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상호인정(각 국가 영역 내에서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협의하에 상호 수용)에 대한 협상 개시 가능성은 일부 국가와 체결한 FTA 협정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비록 동 조항의 의무는 임의적이거나, 언제든지 양국간 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협상 요청과 개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층 진전된 수준의 협정이라고 볼 수 있다 (Level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는 일부 품목 또는 산업에 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시험 인증 지연, 시료통관 애로, 기술규정의 자의적인 해석 등 여러 가지 운영상 애로요인<sup>30)</sup> 완화하고자 일부 국가와의 TBT 협정에서는 적합성 평가기관의 내 국민대우 조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Level 3).

그림 2-2. 적합성 평가에 대한 협정 수준 비교



자료: 저자 작성.

30) 최보영 외(2015), p. 157.



한·페루와의 TBT 협정에는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적합성 평가기관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타 당사국 영역의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정 또는 달리 인지할 수 있다(may)”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법적 강제성은 다소 떨어지나 양국간 조율을 통해 해당 조항을 이행할 수도 있음을 간결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칠레 및 한·미 TBT 협정에서는 ‘shall’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한·페루 TBT 협정과 동일한 조항에 의무를 한층 더하고 있다.<sup>31)</sup>

이에 더해 미국과의 TBT 협정에서는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정, 승인 또는 면허 부여 시 자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자국이 공표한 기준에 기초할 것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다. 즉, 자국 영역 내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을 상대국으로부터 인정 또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요구조건에 부합해야 한다.<sup>32)</sup> 이는 요구조건 부합여부에 따라 인정 또는 승인 거부 가능성이 내포한다. 그러나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당사국은 상대국에게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할 의무(‘shall’)가 있다.

수준 3(Level 3)으로 분류되는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정, 승인 또는 면허 부여와 같은 조항이 이에 해당하며, 대개는 미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이 기체결한 FTA TBT 협정<sup>33)</sup>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2016년 2월에 12개 참여국이 공식서명함으로써 발효를 앞두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TBT 협정문에도 동 조항이 존재한다. TPP TBT 협정은 후속 장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31) 한·칠레(제7.6조 제6항), 한·미(제9.5조 제3항)와 체결한 협정에는 “Each Party shall accredit, approve, license, or otherwise recognize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on terms no less favorable than those it accords to ~”라고 명시되어 있다.

32) 한·미(제9.5조 제4항) 참고.

33) 미·호주(제8.6조 제3항), 미·바레인(제7.5조 제3항), 미·CAFTA-DR(제7.5조 제3항), 미·칠레(제7.6조 제3항), 미·콜롬비아(제7.4조 제3항), 미·모로코(제7.5조 제3항), 미·오만(제7.5조 제3항), 미·파나마(제7.5조 제3항), 미·페루(제7.4조 제3항), 일·호주(제6.6조 제4항), 일·페루(제9.6조 제3항) 등의 협정문 참고.

### 3) 적합성 평가절차의 투명성

WTO 협정에서는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투명성 관련 조항을 각각 다른 조항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양자간 또는 지역간 FTA TBT 협정에는 이를 하나의 '투명성' 조항으로 결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합성 평가절차의 투명성은 후속 소절에서 기술규정의 투명성과 병합하여 분석하였다.

## 라. 투명성

마지막으로 WTO 협정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투명성 조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WTO 협정 내 '투명성' 조항은 하나의 조에 전적으로 조항을 구성하고 있는 여타 RTA TBT 협정과는 달리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 각 기술규제조치(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중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투명성 조항은 WTO 협정문 제2.9조와 제5.6조에 각각 기술되어 있다.

### 1) 기술규정의 투명성

WTO 협정 제2.9조를 살펴보면, 제안된 기술규정에 대해 통보 의무가 발생하는 두 가지 경우가 언급되어 있다.

하나는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안된 기술규정의 기술적인 내용이 관련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해당 기술규정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그림 2-3 참고).<sup>34)</sup>

이어 제2.9조 하위 조항에는 ① 자국의 기술규정 사실을 적절한 초기단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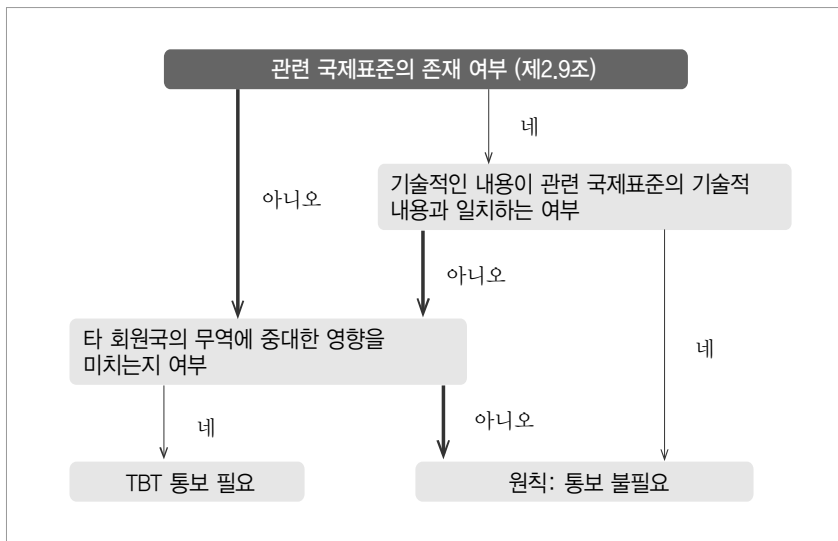
---

34) WTO TBT 협정 제2.9조 참고.

공표하고 ② 제안된 기술규정에 대한 정보를 적절한 초기단계에 통보하며 ③ 타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시에 해당 내용(국제표준과 실질적으로 일탈하는 부분)을 상세히 제공하고 ④ 타 회원국의 의견개진을 허용·수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안전, 건강, 환경보호 또는 국가안보의 긴급한 문제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상기에 열거된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sup>35)</sup> 즉, 회원국은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채택된 기술규정을 ‘초기단계’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되며, 해당 기술규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동 기술규정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채택한 기술규정에의 타 회원국의 의견개진 허용·수렴에 대한 규정은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림 2-3. 기술규정의 TBT 통보 절차도(플로차트)



자료: 川端章義(2012), p. 24에서 저자 번역 정리.

35) WTO TBT 협정 제2.10조 참고.

그러나 WTO 회원국 사이에서 여전히 투명성 조항의 수준과 의무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데, 이는 회원국별 기술능력 격차로 인한 비자발적 문제뿐만 아니라 동 조항의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양자간 또는 지역간 FTA TBT 협정은 체결 대상국에 따라 투명성 조항의 내용과 의무 수준이 대부분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기체결된 FTA TBT 협정도 마찬가지로 체결 대상국의 국가적, 정책적, 경제적 특성에 따라 조항 수준이 각기 다르다.

[그림 2-4]는 WTO 협정 제2.9조, 제2.10조, 제2.12조에 근거한 기술규정 제·개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절차를 나타낸다. 기술규정 제·개정 과정은 채택하거나 채택할 예정이라고 제안한 기술규정의 준비 및 개발 - 통보 - 채택 - 공표 - 발효 및 시행의 절차를 포함한다. 이러한 과정을 다섯 단계(stage)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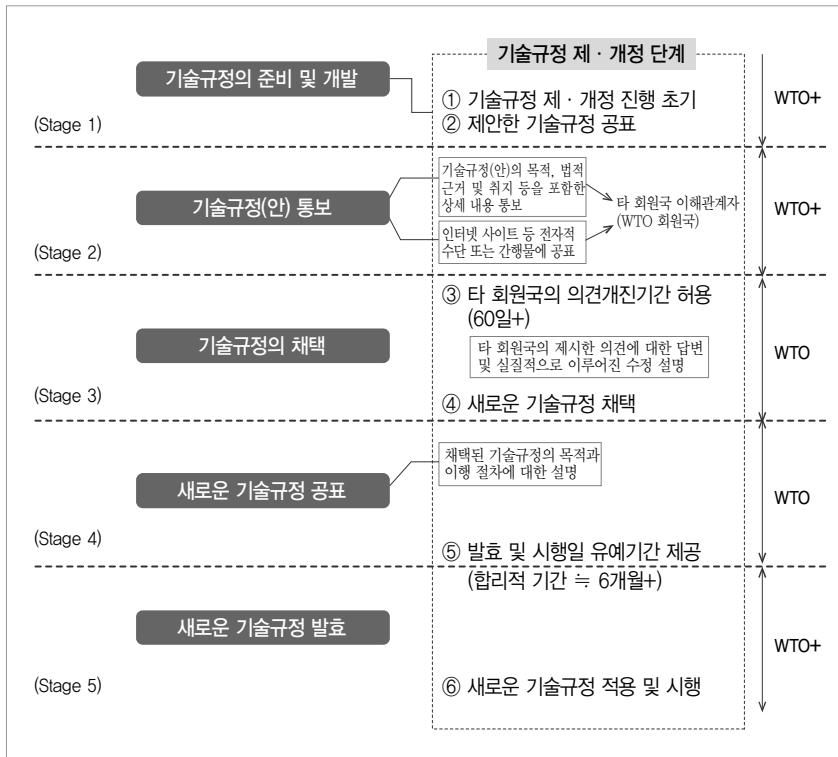
우선 1단계(stage 1)는 기술규정의 준비 및 개발 초기 단계로 여전히 개정이 추가되고 의견이 고려될 수 있는 단계이다. 2단계(stage 2)에서는 타 회원국 이해관계자(또는/및 WTO 회원국)에게 제안한 기술규정(안)의 목적, 법적 근거 및 취지 등을 포함한 상세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와 같은 전자적 수단 또는 간행물에 공표한다.

2단계(stage 2)인 기술규정(안) 통보 단계와 3단계(stage 3)인 기술규정의 채택 단계 사이에서는 타 회원국의 서면의견 제시를 허용하며, 최소 60일의 의견개진기간을 보장한다. 그 후 요청이 있을 경우 타 회원국이 제시한 서면의견에 대해 논의를 거쳐 답변을 제공하고, 이러한 논의 결과를 고려한다. 안전, 건강, 환경보호 또는 국가안보 등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은 기술규정 채택 시에 상기 세 단계(stage 1~3)를 모두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후 4단계(stage 4)는 새롭게 제·개정되어 채택된 기술규정을 타 당사국(또는/및 WTO 회원국)에 그 목적과 이행 절차 등의 설명과 함께 공표한다.

마지막으로 5단계(stage 5)에서는 새로운 기술규정이 발효되어 시행된다. 이 중 4단계(stage 4)인 새로운 기술규정 공포와 5단계(stage 5)인 등 기술규정 발효 및 시행 사이에는 유예기간이 제공된다. 즉, 새로운 기술규정이 공포된 후 수입회원국의 요구사항에 맞게 생산품 또는 생산방법을 조정하고 적응시키는 시간을 허용하기 위해 발효 시까지 합리적인 시간 간격(reasonable interval)을 보장해야 한다.<sup>36)</sup> ‘합리적인 시간 간격’이란 통상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림 2-4. 기술규정 제·개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절차



자료: 저자 작성.

36) WTO TBT 협정 제2.12조 참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WTO 회원국이 양자간 또는 지역간 FTA TBT 협정을 체결할 경우 WTO 협정에 기초하여 조항을 마련한다. 그러나 체결 상대국의 경제규모, 기술력, 교역량, 우위산업 등 여러 경제적, 기술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의무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기도 한다. 그중 주요 TBT 조치인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제·개정 과정 및 결과가 교역대상국에 무역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해당 조치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상기 절차를 기준으로 5건의 주요 체결국과의 TBT 조항을 살펴보니 기술규정의 제·개정 과정과 통보 절차에 대한 조항은 대부분의 기체결된 TBT 협정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단계별 통보 목적, 대상, 범위, 방법, 사후처리 등의 세부조항은 각 TBT 협정마다 의무범위나 강제성의 정도가 상이하다. 그 의무범위와 강제성의 정도를 구분하기 위해 [그림 2-4]에서는 기술규정 제·개정 과정에의 타 회원국 참여허용 여부 및 허용 범위에 따른 조항 수준을 단계별로 분류하였다.

기술규정 제·개정 과정에 대해 타 회원국의 참여 허용여부 및 범위가 높을수록 플러스(+) 단계에 속하며, 가장 높은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 즉, 1단계(stage 1)를 허용하는 협정일수록 WTO+ 수준, 모든 회원국이 예외 없이 준수해야 하는 3단계(stage 3)의 경우 의무준수의 수준과 범위가 낮을수록 WTO-로 구분하였다.

[표 2-8]은 해당 투명성 조항을 육하원칙 기준에 의거하여 WTO 협정 조항과 비교 분석한 후 WTO+ 조항을 식별한 결과이다.

① **통보 시기:** WTO 협정에서는 한 회원국이 특정한 기술규정을 도입할 경우 타 회원국 이해당사자에게 적절한 초기단계(early appropriate stage)에 해당 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체결된 FTA 중에서는 캐나다와의 TBT 협정에서만 공표시기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EU, 미국, 캐나다와의 TBT 협정의 경우 기술규정의 개발 과정에서의 타 당사국인 참여를

비차별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 존재한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WTO 협정보다 의무 수준이 높다고(WTO+) 볼 수 있다.

② **통보 대상:** 제안된 기술규정의 통보 대상에 대해서는 TBT 협정 및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기체결된 FTA TBT 협정에서 이를 타 당사국(또는 회원국) 이해 관계자로 특정하고 있으며, 통보의무는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관에 한정된다.

③ **통보 범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WTO 회원국은 제안된 기술규정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양자간 FTA의 경우 통보 범위를 각자 달리 명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수용 범위를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다.

TBT 협정은 통보 범위에 대해 기술규정의 도입 사실, 목적과 합리적 이유에 관한 설명, 제안된 기술규정이 적용되는 상품에 대한 정보까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EU, 미국과의 TBT 협정에서는 WTO 협정의 요구 범위와 유사하거나 한층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테면 EU와의 협정에서는 기술규정 준수에 관한 서면 정보 또는 지침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정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제안된 기술규정의 목적 및 취지에 관한 추가 정보(기술규정 사안, 대체 방안, 특정 방안의 장점 등)를 요구(WTO+)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국과의 TBT 협정에서는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을 따르는 새로운 기술규정과 기존의 기술규정의 개정 모두 공표하고 통보하도록 의무화('shall')하고 있다. 이는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술규정이 국제표준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기술규정의 도입 사실을 요구하는 WTO 협정 조항과 달리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한·미 TBT 협정의 수준이 높게(WTO+)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와의 협정의 경우 통보 범위가 다소 모호하나, 제안된 기술규정에 대한 규제적 영향 분석서를 타 당사국에 신속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추가(WTO+)되었다.<sup>37)</sup> 하지만 중국, 베트남과의 TBT 협정에서는 WTO 협정에 규정된 통보 범위보다 낮은 의무 수준

37) 한·캐나다 FTA TBT 협정문 제6.6조 제2조 참고.

(WTO-)을 요구하고 있다.

④ **통보 후 의견개진:** 상기 언급된 모든 기술규정과 관련된 정보를 WTO 사무국 또는 메커니즘 등을 통해 타 회원국 또는 상대국에 제공하면 상대국은 이를 토대로 의견제시시간을 부여받는다.<sup>38)</sup> 해당 의무에 대한 규정은 WTO 협정을 토대로 마련되었는데, 타 회원국의 서면 의견개진기간 허용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을 뿐 '최소 60일'과 같은 구체적 기간(일수)에 대한 규정은 양자간 FTA TBT 협정에만 추가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5개국과의 TBT 협정에서는 의견개진허용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뿐만 아니라 상대국 요청 시 의견개진기간의 연장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WTO 회원국은 WTO TBT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안 제12차 개정안<sup>39)</sup>에 따라 '의견수렴기간'을 통상 60일로 지정하는 데 합의한바 2009년 이후에 체결한 FTA TBT 협정문에는 의견수렴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⑤ **공표 위치:** 제안된 기술규정의 공표 위치에 대해 WTO 협정에서는 간행물(publication)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EU와의 TBT 협정에서는 공공 웹사이트와 같은 수단(메커니즘)을 통해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정에서도 단일 인터넷 사이트 등 단일관보(single official journal)에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도 온라인 연결(online link) 또는 사본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을 언급하는 등 구체적인 위치를 명시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와 중국의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공표 위치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TBT 협정의 경우 제6.14조 제1항을 통해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 방식을 아우르고 있는바 해당 조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⑥ **공표와 발효 간 유예기간:** 또한 제안된 기술규정이 채택된 후로부터 발효

38) WTO TBT 협정문 제2.9조 제4항 및 한·EU(제4.4조 제1항 사.), 한·미(제9.6조 제3항), 한·캐나다(제6.6조 제5항), 한·중(제6.7조 제1항), 한·베트남(제6.7조 제2항) FTA TBT 협정문 참고.

39) WTO 회원국은 '의견수렴기간'에 대해 G/TBT/13, 제39~40항에 따라, 통보에 대한 의견수렴기간은 통상 60일로 하고 가능한 한 회원국이 60일 초과한 90일 기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권고안에 2009년 12월 12일에 합의했다. 그러나 사실상 제2차 3년 주기 검토회의(2000. 11. 13)에서 이미 제기된 안건(G/TBT/9, p.3 para.13)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건과 관련하여 논의가 지속되어왔다.



시까지의 유예기간에 대해 WTO 협정에서는 ‘합리적인 시간 간격(reasonable interval)’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기체결 TBT 조항에서는 EU와의 협정 조항에서만 언급되어 있을 뿐 여타 국가와의 협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베트남과의 TBT 협정에서는 기술규정의 최종공표와 발효 간 ‘기간 연장 고려’라는 표현을 통해 동 유예기간이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페루, 콜롬비아와의 TBT 협정에서도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5개 국가와의 TBT 협정 외에도 WTO 협정에는 명시되지 않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여타 기체결된 FTA TBT 협정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페루, 콜롬비아와의 협정이 있다.

페루와 체결한 협정에는 기술규정이 국제표준과 기술적인 내용 측면에서 부합하더라도 상대국에 통보할 의무를 적용하고 있으며,<sup>40)</sup> 또한 상대국 영역에서 수입되는 상품이 기술규정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입국함에 유치하는 경우에 대한 후속처리 규정도 존재한다.<sup>41)</sup> 이는 우리나라보다 기술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발도상국에게 기술규정 제·개정 사실을 예외 없이 통보하여 해당 이해관계자가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배려할 뿐만 아니라 기술규정 준수 미달로 인해 상품을 억류하게 될 경우 수출국 이해관계자의 신속한 후속처리를 지원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콜롬비아와 체결한 협정에서는 WTO 협정뿐만 아니라 여타 기체결된 FTA TBT 협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WTO 사무국에 통보문 제출 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범위에 대한 조항이다. 여기에는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증대한지 여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제표준에 부합하더라도 새로운 기술규정과 함께 기존의 기술규정 개정본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sup>4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은 필수조항(‘shall’)이 아닌 권장하는 수준(‘should’)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

40) 한·페루 FTA TBT 협정 제7.7조 제2항 참고.

41) 한·페루 FTA TBT 협정 제7.7조 제9항 참고.

42) 한·콜롬비아 FTA TBT 협정 제6.7조 제2항 참고.

지 않아 필수 제출 문서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WTO+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 2) 적합성 평가절차의 투명성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투명성은 기술규정 및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 시 적용되는 방식과 유사하다. 해당 조항은 WTO 협정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에 걸쳐 규정되어 있으며, 중앙정부기관에 적용된다. 이어 제7조 및 제8조에는 지방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에 적용되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투명성의 무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특히 WTO 협정에서는 국제표준기관에 의한 관련 지침이나 권고사항의 부재 또는 제안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기술적 내용과의 불일치, 또는 타 회원국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명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sup>43)</sup>

WTO 협정 제5.6조 하위 4개 호(號)에 규정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도입에 대한 공표시기, 공표 범위, 의견개진 허용 등은 기술규정의 도입 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새로운 적합성 평가절차의 도입 사실도 기술규정과 마찬가지로 초기단계에 타 회원국 이해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입 목적과 이유, 해당 설명 및 적용될 상품에 대해 간행물에 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후 해당국은 타 회원국의 의견제시 기간을 허용하고, 이러한 서면의견 및 논의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제5.7조, 제5.8조 및 제5.9조에 규정되어 있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통보 예외의 경우, 채택 후 신속한 공표 보장, 발효 전까지의 유예기간 제공 등에 대한 의무 역시 기술규정 도입 시 적용되는 조항과 완벽하게 일치한다.<sup>4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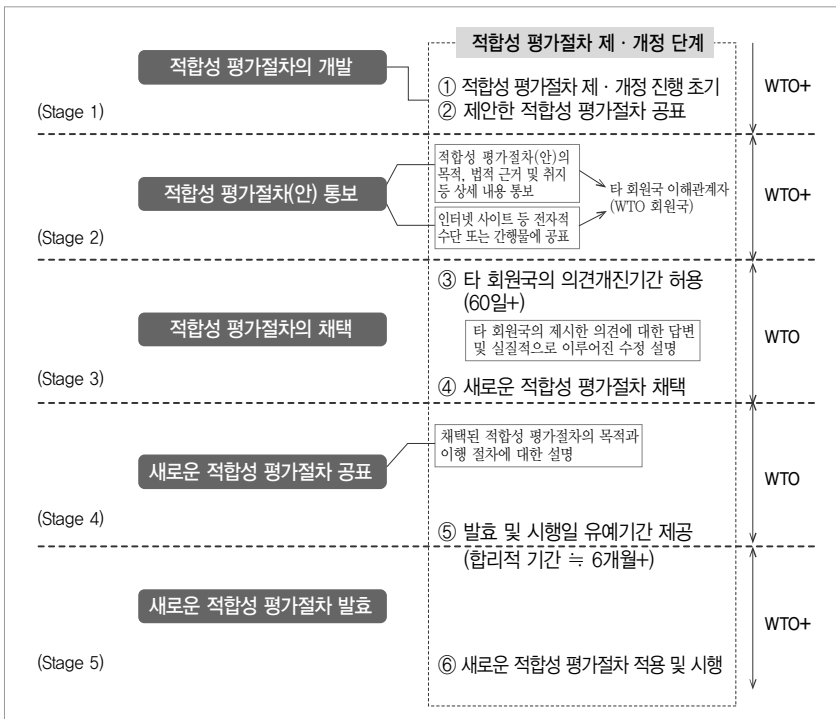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양자간 TBT 협정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2-5]와 같다. EU와의 TBT 협정 투명성 조항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포함한 기술규정’<sup>45)</sup>

43) WTO TBT 협정 제5.6조 참고.

44) WTO TBT 협정 제2.9조, 제2.10조, 제2.11조, 제2.12조 참고.

의 도입, 채택 및 적용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즉, 기술규정의 투명성에 대해 전문적인 바와 같은 방식 및 의무사항을 가진다. 미국, 캐나다와의 TBT 협정 내 투명성 조항성도 마찬가지이다. 단, 추가로 비정부기관도 적합성 평가절차 개발 과정에의 타 당사국인의 참여를 비차별적으로 허용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sup>46)</sup> 이는 WTO 협정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항으로 의무수준이 추가(WTO+)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베트남과 체결한 TBT 협정 내 적합성 평가절차 제·개정 투명성 관련 조항도 기술규정 개발 과정의 투명성과 일치한다.

그림 2-5. 적합성 평가절차 제·개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절차



자료: 저자 작성.

45) 한·EU FTA TBT 협정 제4.4조 제1항 나. 참고.

46) 한·EU FTA TBT 협정 제4.4조 제2항 참고.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개정 과정의 투명성 조항은 전반적으로 의무 대상 및 범위가 모두 일치한다. 대부분의 기체결된 FTA TBT 협정에서는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투명성 절차를 동일한 조항에 함께 규정하고 있어 내용이 중복되는바, [표 2-8]로 이에 대한 설명을 대체한다.<sup>47)</sup>

---

47) 본 연구 [표 2-6]에 대한 설명 참고.

표 2-8.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대한 WTO TBT 협정 및 기체결 TBT 협정의 비교

구분	WTO TBT	한·EU	한·미	한·캐나다	한·중국	한·베트남
	제2.9조	제4.4조	제9.6조	제6.6조	제6.7조	제6.7조
통보 필요요건 (wh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표준기관에 의한 지침 또는 권고사항의 부재</li> <li>제안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기술적 내용이 관련 지침 또는 권고사항과의 불일치</li> <li>동 적합성 평가절차가 타 회원국 무역에 중대한 영향 초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표준이 기술규정의 기초로서 미사용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표준의 기술규정을 따르더라도 공표 및 통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TO 제2.9조 (동좌)</li> </ul>	(N/A)	(N/A)
통보 시기(when)	적절한 초기단계	(N/A)	(N/A)	적절한 초기단계	(N/A)	(N/A)
	허용 범위	(N/A)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개발과정 참여	허용 범위	(N/A)	이해당사국의 참여 비차별 허용	이해당사국의 참여 비차별 허용	(N/A)	(N/A)
	통보대상 (to whom)	타 회원국 이해관계자	타 회원국 경제운영자	WTO 회원국 및 미합중국 질의처(한국) 대한민국 조정자(미국)	WTO 회원국 및 타 당사국 중앙정부	타 회원국 이해관계자
대상 (who)	통보기관 (by whom)	중앙정부/비정부기관 (지방정부/비정부기관)	(N/A)	중앙정부/비정부기관 (지방정부/비정부기관)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구분	WTO TBT	한·EU	한·미	한·캐나다	한·중국	한·베트남
	제2.9조	제4.4조	제9.6조	제6.6조	제6.7조	제6.7조
통보 범위(wh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도입 사실</li> <li>목적과 합리적 이유에 관한 설명 및 기술 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가 적용될 상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항상된 정보</li> <li>제안된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 법적 근거 및 취지에 관한 정보</li> <li>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 준수에 관한 서면 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TO 제2.9조 (동차)</li> <li>제안된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가 추구하는 목적 및 목적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설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안된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 (WTO 제2.9조와 동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안된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보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문서 전체</li> </ul>
추가 통보내용 (what + α)	<p>(요청이 있을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안된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상세내용 또는 사본</li> <li>국제표준기준이 발효한 관련 지침 또는 권고사항을 실질적으로 일탈하는 부분 설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절하고 가능하면)</li> <li>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 준수에 관한 서면 지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안된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 및 취지에 관한 추가 정보 제공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가 다루려는 시안, 대체 방안, 특정 방안의 장점 등의 정보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안된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규제적 영향 분석서(공개 열람 가능)</li> </ul>	(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TO 제2.9조 제3항 (동차)</li> </ul>
통보 방법(how)	WTO 사무국	메케니즘	WTO 사무국 전자적으로 통보	WTO 사무국 전자적으로 통보	WTO 사무국	사본 or 온라인 연결

표 2-8. 계속

구분	WTO TBT	한·EU	한·미	한·캐나다	한·중국	한·베트남
	제2.9조	제4.4조	제9.6조	제6.6조	제6.7조	제6.7조
통보 후 의견제진 (how + 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 회원국의 서면 의견제진기간 허용 (최소 60일)</li> <li>타 회원국의 의견 및 논의 결과 고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 회원국의 서면 의견제진기간 연장 요청 고려</li> <li>(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개발 과정의 일부가 공공 협의에 개방된 경우) 타 회원국 의견에 서면 응답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 회원국의 서면 의견제진기간 연장 요청 고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 회원국의 서면 의견제진기간 허용 (최소 60일)</li> <li>타 회원국의 의견에 대한 자국의 답변 (요약)을 최종 적합성 평가절차의 공표 일보다 늦지 않게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공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 회원국의 서면 의견제진기간 허용 (최소 60일)</li> <li>타 회원국의 의견 및 논의 결과 고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 회원국의 서면 의견제진기간 허용 (최소 60일)</li> <li>채택된 모든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li> </ul>
공표 위치(whether)	간행물에 공표	정보제공을 위한 메커니즘 설치 (공공 웹사이트 포함)	단일관보에 공표 (단일 인터넷 사이트 또는 정보출처 등 전자적 수단 선호)	(N/A)	(N/A)	온라인 연결 (또는 서면 직접 제공)
최종공표와 발효 사이 유예기간	합리적인 시간 간격 (reasonable interval)	충분한 시간 (sufficient time)	(N/A)	(N/A)	(N/A)	기간 연장 고려

주: 1) 0 는 WTO TBT 협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체결된 조항.

2) + 는 WTO TBT 협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체결된 조항.

3) - 는 WTO TBT 협정보다 낮은 수준으로 체결된 조항.

자료: WTO TBT 협정과 및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 조항을 토대로 저자 작성.

TPP는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이상 4개국 간 협정인 P4에서 출범한 Mega FTA로, 2010년 3월에 멜버른에서 처음 협상이 시작된 후 약 6년 만인 2016년 2월에 참여국이 공식 서명함으로써 발효를 앞두고 있다.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TPP는 세계 GDP의 약 36%, 세계 전체인구의 11%, 2014년 기준 전 세계 교역량의 26%에 달하는 경제 규모를 이루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는 회원국으로 구성된 북미자유무역협정인 NAFTA 출범 이후 가장 규모가 큰 다자간 협정이다.<sup>48)</sup>

TPP 협정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뿐만 아니라 경쟁정책, 국영기업, 중소기업, 규제조화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 협정으로, 특히 관세 및 무역원활화, 위생검역조치(SPS), 무역상 기술장벽(TBT), 투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등 ‘수평적(horizontal)’ 협정을 통해 참여국 간 분쟁해결 및 제도규정의 개발, 경쟁 등의 잠재력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sup>49)</sup> 우리나라도 글로벌 무역체계 형성을 실현하고자 국제적 통상정책기조의 흐름에 발맞추어 동 협정에 대한 참여 여부와 참여 시기를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TPP는 관세 완전철폐를 최종목표로 두고 있어 지속적인 관세 인하가 기대되는 한편 TBT와 같은 비관세조치의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다. 최근 급증하는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소로서 작용하게 될 경우 FTA 협정을 통한 관세철폐 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비관세조치의 완화는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이다. TPP는 역내 GVC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세의 완전철폐와 함께 TBT와 같은 비관세조치 완화에도 관심이 주목된다.<sup>50)</sup> 특

48) 유새별(2016). p. 3.

49) 위의 책, p. 3.



히 TPP 협정에는 기술적 차이가 여실히 나타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혼합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뿐만 아니라 기술능력 수준 차이에서 기인한 장벽으로 인해 부득불 교역국 간 원활한 무역흐름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TPP 협정문에서는 특정 국가에 대해 기술적 차원의 혜택이 편중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자국 산업 보호의 목적으로도 비관세조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TPP 참여 여부와 시기가 논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공개된 TPP 협정문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대표적 비관세조치 중 하나로 꼽히는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한하여 다룬다. 특히 본 협정의 핵심 의제가 되는 주요 조항을 우리나라의 기체결된 FTA TBT 협정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지난 10여 년간 체결해온 15건의 양자간 또는 지역간 FTA 중 10건<sup>51)</sup>이 TPP 참여국과의 협정임을 미루어보면 TPP 역시 체결 수준이 유사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ega FTA의 특징을 반영한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바 TPP 협정 내 조항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sup>52)</sup> 토대로 TPP 협정 TBT 조항을 우리나라의 기체결된 FTA TBT 조항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후 국내 법규와의 조화여부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타진하고 우리나라의 TPP 가입 시 참고가 될 만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장의 연구 범위는 제2장에서와 동일하게

---

50) 위의 책, p. 3.

51) 우리나라는 TPP 회원국 중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페루, 칠레, ASEAN(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뉴질랜드와 FTA를 기체결한 바 있다.

52) 유새별(2016)은 『TPP 무역상 기술장벽(TBT) 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통해 TPP TBT 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한국의 기체결된 FTA TBT 협정과의 비교분석을 시도하였으나, 구체적인 논의 동향 및 국내법과의 합치여부 등의 내용은 다소 미흡한바 본 연구에서는 관련 내용을 보충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 EU, 캐나다, 중국, 베트남과 체결한 FTA TBT 협정으로 한정한다. 단, 상기 5국가와 체결한 FTA TBT 협정 외에 새로운 규정이 존재할 경우 그 협정 조항도 일부 포함하도록 한다.

## 1. TPP TBT 협정과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 비교

TPP 협정 TBT 조항(이하 TPP 협정문<sup>53)</sup>)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주요 TBT 조치를 포함하여 13개 조항과 7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부록 표 1 참고). 동 협정의 조항은 전반적으로 WTO TBT 협정(이하 WTO 협정)에 입각하되, TPP 참여국 간 특정 사안에 따라 강조되는 사항을 재진술 또는 보완하여 반영하고 있다.<sup>54)</sup>

TPP 협정의 적용 범위는 WTO 협정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기관 및 산하 직속 기관들이 제공하는 모든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해당한다. TPP 협정은 조항 개수나 내용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 TBT 협정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대체로 수준이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55)</sup>

먼저 대표 TBT 조치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에 대한 TPP 협정 주요 조항을 파악하고자 한다. TPP 협정은 대체로 WTO 협정에 근거하여 규정되어 있다. 이를테면 TBT 조치에 대한 내국민대우, 불필요한 장벽 완화, 투명성, 상호 협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 적합성 평가, 투명성에 대한 조항만을 그 범위로 지정하

---

53) TPP 협정에서의 TBT 조항의 경우 「TPP 협정 TBT 조항」으로 통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WTO 협정문과 같이 본 장에서도 TPP TBT 협정문을 편의상 「TPP 협정문」으로 통일하였다.

54) TPP TBT 협정문 제8.4조에서는 본 협정이 WTO TBT 협정문 「제2.1, 2.2, 2.4, 2.5, 2.9, 2.11, 2.12 조」, 「제5.1, 5.2, 5.3, 5.4, 5.6, 5.7, 5.8, 5.9조」, 「부속서 3의 D, E 및 F항」에 통합되며, 일부 변경을 가하여 구성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55) 유새별(2016), p. 5.

였다. 그러나 기술규정의 경우 여타 RTA 또는 FTA 협정과는 달리 투명성 조항에 적합성 평가절차와 함께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관련 조항을 동시에 다룰 예정이다(표 3-1 참고).

다음으로는 앞에서 도출한 내용을 토대로 TPP 협정 조항의 존재여부와 의무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 TBT 협정이 TPP 협정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여타 WTO 회원국의 기체결 RTA TBT 협정을 추가로 표기하였다. [표 3-1]은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TBT 협정을 TPP 협정과 일치시킨 결과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후속 절에서는 우리나라 국내 법규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TPP 참여 시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표 3-1. TPP TBT 협정의 주요 조항 및 여타 TBT 협정 조항과의 조화

	TPP TBT 조항	WTO TBT 조항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TBT 조항	여타 RTA TBT 조항
표준 (제8.5조)	WTO 협정 및 (G/TBT/Rev.12)의 적용	제2.4조, 제4.1조, 제5.4조	한·싱(제8.2조 제5항), 한·EU(제4.5조), 한·미(제9.3조), 한·페루(제7.4조 제2항), 한·타키(제5.5조 제1항), 한·호주(제5.3조 제4항), 한·콜(제6.4조 제2항), 한·뉴(제6.5조 제2항), 한·베트남(제6.4조 제2항)	-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사용 및 당사국 간 공동협력	제4.1조, 제4.2조	한·EU(제4.3조), 한·페루(제7.8조), 한·미(제9.4조), 한·타키(제5.3조), 한·캐(제6.4조 제1항), 한·호주(제5.7조), 한·콜(제6.8조), 한·중(제6.8조), 한·뉴(제6.8조), 한·베트남(제6.8조)	
적합성 평가 (제8.6조)	적합성 평가기관의 내국민대우 <sup>1)</sup>	제6.4조(WTO+)	한·미(제9.5조 제3.4항), 한·칠레(9.6조 제6항), 한·페루(제7.6조 제4항)	미국: 호주(제8.6조 제3항), 바레인(제7.5조 제3항), CAFTA-DR(제7.5조 제3항), 칠레(제7.6조 제3항), 콜롬비아(제7.4조 제3항), 모로코(제7.5조 제3항), 오만(제7.5조 제3항), 파나마(제7.5조 제3항), 페루(제7.4조 제3항), 일본: 호주(제6.6조 제4항), 페루(제9.6조 제3항), 중국: 뉴(제97조 제5항)
	인증기관의 국내거소요건 금지	제6.4조(WTO+)	-	-

표 3-1. 계속

TPP TBT 조항	WTO TBT 조항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TBT 조항	여타 RTA TBT 조항
자국 또는 타 회원국 영역 내 특정 정부기관의 특정 상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단독수행 허용	-	한·싱(제8.5조 제3.6항)	-
적합성평가 수행시 타 회원국에 정보요구 제한, 적법한 상업적 이익 보호 원칙	제5.2조(제2.3.4항), 제5.4조	한·칠레(제9.6조 2(라, 마)항, 제9.9조), 한·싱(제8.6조 제1, 2, 3항)	-
적합성 평가기관 MRA 추진 방해금지	-	한·칠레(9.6조 제3, 4항), 한·페루(제7.6조 제5항), 한·EU(제4.6조 제1항), 한·미(제9.5조 제1항), 한·타키(제5.6조 제1항), 한·호주(제5.6조 제1항), 한·콜(제6.6조 제1항), 한·중(제6.6조 제1, 4항)	-
타 회원국 영역 내 평가관에서 수행된 평가절차의 결과 검증 방해 금지	제6.1조 제1항 (WTO+)	한·칠레(9.6조 제5항), 한·싱(제8.5조 제15, 16항)	-
타 회원국 영역 내 적합성 평가관에 대한 정보 요청 가능	-	한·싱(제8.5조 제14항)	-
국제적 또는 지역적 MRA에 서명한 인정 기관으로부터 기술규정, 표준 인정 수용에 관한 조항 채택	제9.1조(WTO+)	한·EU(제4.6조 제2(다)항), 한·타키(제5.6조 제2(다)항), 한·캐(제6.4조 제3(라)항)	-
타 회원국의 인정기관 수용을 특정 사유 <sup>2)</sup> 로 거절 금지	제9.2조(WTO+)	-	-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정·승인·면허 부여 또는 MRA 사용 거절 시 사유 설명	-	한·페루(제7.6조 제4항), 한·미(제9.5조 제3항)	-

표 3-1. 계속

	TPP TBT 조항	WTO TBT 조항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TBT 조항	여타 RTA TBT 조항
투명성 (제8.7조)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미수용 시 사유 설명	-	한·페루(제7.6조 제2항), 한·미(제9.5조 제2항), 한·호주(제5.6조 제3항), 한·콜(제6.6조 제2항), 한·뉴(제6.7조 제4항), 한·베트남(제6.6조 제4항)	-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MRA 협상 요청 거절 시 사유 설명	제6.3조(WTO+)	한·페루(제7.6조 제5항), 한·호주(제5.6조 제4항), 한·캐(제6.4조 제4항), 한·콜(제6.6조 제4항), 한·뉴(제6.7조 제7항)	-
	적합성 평가 관련 영사거래 <sup>3)</sup> 요구 금지	-	한·미(제2.10조 2항) <sup>5)</sup>	EU·싱(제2.10조 제3항), 호주·칠레(제3.10조 제2항), 캐·콜(제209조 제2항), 중·칠레(제9조 제2항), 중·스위스(제4.16조) <sup>5)</sup>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개발에의 타 당사국인 참여 비차별 허용	-	한·EU(제4.4조 제3항, 제4.6조 제3항), 한·미(제9.6조 제1항), 한·타(제5.10조 제1항), 한·호주(제5.8조 제1항), 한·캐(제6.6조 제3항)	-
	새로운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안) 및 기존 개정안, 최종본 및 최종 개정본 전 자적 수단(관보 등)으로 공표(제정안에 자세한 내용 포함)	제2.9조(제1.3항), 제5.6조(제1.3항)(WTO+)	한·페루(제7.7조 제1항), 한·미(제9.6조 제3항), 한·타(제5.10조 제2항), 한·캐(제6.6조 제1항), 한·콜(제6.7조 제2항), 한·뉴(제6.9조 제1항)	-
새로운 개정안, 최종 제정본 및 기존의 최종 개정본 단일 웹사이트에 공개	-	한·페루(제7.7조 제8항), 한·미(제9.6조 제3항)	-	
새로운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정안 WTO 회원국에 통보	제2.10조(제1항), 제5.7조(제1항)(WTO+)	한·페루(제7.7조 제1항), 한·미(제9.6조 제3항), 한·타(제5.10조 제2항), 한·호주(제5.8조 제3항), 한·콜(제6.7조 제1항), 한·중(제6.7조 제2항)	-	

표 3-1. 계속

TPP TBT 조항	WTO TBT 조항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TBT 조항	여타 RTA TBT 조항
제인의 목적 설명, 처리 방법 등을 공식 질의처를 거쳐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	제2.9조(제2항), 제5.6조(제2항) (WTO+)	한·EU(제4.4조 제1(다)항), 한·페루(제7.7조 제6항), 한·미(제9.6조 제3항), 한·타키(제5.10조 제3항), 한·호주(제5.8조 제3항), 한·캐(제6.6조 제2항), 한·콜(제6.7조 제6항), 한·중(제6.7조 제2항), 한·뉴(제6.9조 제1,4항), 한·베트남(제6.7조 제3항)	-
타 당사국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의견제시 기간(60일) 부여	제2.9조(제4항), 제5.6조(제4항) (WTO+)	한·EU(제4.4조 제1(바)항), 한·페루(제7.7조 제4항), 한·미(제9.6조 제3항), 한·타키(제5.10조 제3항), 한·호주(제5.8조 제3항), 한·캐(제6.6조 제5항), 한·콜(제6.7조 제4항), 한·중(제6.7조 제1항), 한·뉴(제6.9조 제3항), 한·베트남(제6.7조 제2항)	-
의견제시기간 연장 요구 고려	-	한·EU(제4.4조 제1(사)항), 한·페루(제7.7조 제4항), 한·미(제9.6조 제3항), 한·타키(제5.10조 제3항), 한·콜(제6.7조 제4항)	-
의견제시기간 종료와 공표된 TBT 절차의 채택 간 충분한 시간 제공	제2.12조, 제5.9조	한·EU(제4.4조 제1(사)항), 한·타키(제5.10조 제3항), 한·콜(제6.7조 제8항), 한·베트남(제6.7조 제4항)	-
통보문과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임무를 질의처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	제2.7조, 제5.7조 (WTO+)	한·페루(제7.7조 제3항), 한·미(제9.6조 제4항), 한·타키(제5.10조 제4항), 한·베트남(제6.7조 제1항)	-

표 3-1. 계속

TPP TBT 조항	WTO TBT 조항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TBT 조항	여타 RTA TBT 조항
채택된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최종본을 전자적으로 공개 <sup>4)</sup>	제2.9조, 제5.6조 (WTO+)	한·페루(제7.7조 제5항), 한·미(제9.6조 제5.6.7항), 한·호주(제5.8조 제4항), 한·콜(제6.7조 제5.9항), 한·중(제6.7조 제4항), 한·베트남(제6.7조 제5항)	-
준비 중 또는 채택된 표준을 포함한 표준화 기관의 업무계획에 대해 해당 웹사이트 또는 단일 공식저널에 공표	-	-	-
기술표준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준수기간 (제8.8조)	제2.12조, 제5.9조 (WTO+)	한·EU(제4.4조 제1(사)항), 한·타키(제5.10조 제8항), 한·콜(제6.7조 제8항), 한·베트남(제6.7조 제4항), 한·페루(제7.7조 제7항)	-

주: 1) 적합성 평가관의 내국민대우에는 자국 영역 내 기관의 인정·승인·면허부여에 대한 절차, 기준 및 조건을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대우함을 의미.  
 2) 인정기관이 ① 1개 이상의 인정기관이 있는 당사국에서 운영, ② 비정부기관, ③ 인정기관 인식 절차를 운영하지 않는 당사국에 거주, ④ 국내에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음, ⑤ 영리기관 이라는 이유로 인정기관 수용의 개설 금지.  
 3) 영사거래(consular transaction)란 특정국기에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송장, 원산지 증명, 신자증명 등에 대해 수입국 영사기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미.  
 4) 공개 범위에는 최종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목적달성 방법, 대체 접근방안, 상대국으로부터 수렴한 의견 중 중요인간에 대한 응답, 상대국의 의견이 반영된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개정 사항을 포함.  
 5) 해당 영사거래 금지 조항은 적합성 평가관을 특정하지 않으며, 상대국의 상품 수입 관련 제반 비용 및 수수료로 포함한 포괄적 영사거래를 의미.  
 자료: TPP TBT 협정문, 한국 및 여타 WTO 회원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 조항을 토대로 저자 작성.



## 가. 국제표준

TPP 협정에서는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의 존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G/TBT/Rev.10)」<sup>56)</sup>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국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적용 및 채택에 있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고자 공동협력에 합의하였다.

동 조항은 TPP 협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 TBT 협정에도 존재한다. WTO 협정 제2.4조 및 5.4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국제표준기관이 발표한 관련 지침 또는 권고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회원국은 인간과 동물의 건강 또는 안전, 환경보호, 국가안보, 또는 근본적인 기술적 문제로 인해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서 국제표준 또는 그러한 지침이나 권고사항을 기초로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즉, 예외적인 비상 상황 또는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국제표준 또는 관련 지침이 회원국 내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서 사용되어야만 한다. 이는 WTO 협정 제4조 제1항과 제2항, 부속서 3에 입각하여 규정된 필수 조항('shall')으로서 강제성을 띠고 있다.

해당 조항은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TBT 협정에 이미 반영 및 기시행되고 있어 TPP 조항의 수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체결 수준이 WTO 협정 또는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TBT 협정과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다.

---

56) WTO TBT 위원회가 2000년 11월 13일에 채택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the Decision of the Committee on Principles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s and Recommendations with relations to Articles 2.5 and Annex 3 of the Agreement)」을 2011년 6월 9일에 개정(G/TBT/1/Rev.10) 하였다.

## 나. 기술규정

「기술규정(의 동등성)」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여타 기체결 FTA TBT 협정과는 달리 TPP 협정은 제8.9조 「공동협력 및 무역촉진」 제2(d)항 및 제6항에서 동 조항을 간결하게 다루고 있다. 제8.9조 제2항은 규제협력에 대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이 메커니즘에는 ① 규제대화체 설립 및 공동협력 ② 비효율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표준의 활용 ③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기초로서 국제표준, 권고 및 지침 활용 ④ 기술규정의 동등성 수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기체결한 TBT 협정에서 기술규정의 동등성에 대해 별도의 조(article)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TPP 협정에서는 이를 하나의 협력 방안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후속 조항(제6항)에서는 기술규정 동등성의 미수용 시 사유 설명에 대한 의무('shall')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술규정의 동등성을 거부하는 사유를 명백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의무로 인하여, 기술규정의 동등성 인정 의무에 대한 강제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다. 적합성 평가

TPP 협정에서의 적합성 평가 조항은 투명성 조항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적합성 평가 조항에는 적합성 평가기관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조항은, ① 내국민대우 ② 기관 설립 및 지리적 요건 ③ 상호인정협정 추진 ④ 정보요청 ⑤ 인정기관 수용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해서는, ① 평가 결과의 수용 여부 ②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추진 ③ 결과 검증 ④ 정보제공 ⑤ 영사거래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표 3-2 참고).

표 3-2. TPP TBT 협정 「적합성 평가」 조항 내용

	적합성 평가기관 관련 조항	비고
①	인정·승인·면허부여에 대한 내국민대우	
②	타 회원국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정보요청	
③	타 회원국의 인정기관 수용 제한 금지	
④	적합성 평가기관 간 MRA 추진	미수용 시 사유 설명
⑤	타 회원국 인정기관의 해당국 영역 내 소재 허용(국내거소요건 금지)	
	적합성 평가절차 관련 조항	비고
①	특정상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단독수행	
②	평가 수행시 타 회원국에 정보요구제한	필요시 설명
③	타 회원국 내에서 수행된 평가절차의 결과 검증	
④	타 회원국 내에서 수행된 평가절차의 결과 수용	미수용 시 사유 설명
⑤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해 상호간 MRA 추진	미수용 시 사유 설명

자료: TPP TBT 협정문 제8.6조 「적합성 평가」 조항을 토대로 저자 작성.

## 1) 적합성 평가기관

먼저, 적합성 평가기관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정·승인·면허 부여에 대해 동일하거나 동등한 절차, 기준, 조건을 적용하는, 이른바 내국민대우의 의무('shall')가 있다. 이는 타 회원국 영역 내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정, 승인 또는 면허를 부여하기 위한 요구조건이 자국 영역 내 소재하는 평가기관에 대한 조건보다 불리하게 적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동 조항은 WTO 협정(제6.4조)과 함께 우리나라의 기 체결 FTA 협정 TBT 조항<sup>57)</sup>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WTO 협정의 경우 타 회원국 내에서 시행하는 적합성 평가절차에의 참여만 비차별적으로 허용함을 의미할 뿐이다. 한편 미국, 칠레 및 페루와의 TBT 협정에서는 “자국 영역의 적합성 평가기관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on terms

57) 한·미(제9.5조 제3,4항), 한·칠레(9.6조 제6항), 한·페루(제7.6조 제4항) FTA TBT 협정 참고.

no less favorable) 타 회원국 영역 내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정, 승인 또는 면허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WTO 협정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조항이라는 점에서 체결 수준이 높다(WTO+)고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TPP 협정에서는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정·승인·면허부여에 대해 “자국 영역 내 기관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treatment no less favourable)”으로 대우할 것과 함께 “동일하거나 동등한(same or equivalent) 절차, 기준 및 조건”을 적용할 것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된 조항을 통해 회원국 간 상이한 해석 또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법률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조치로 판단된다.

WTO 협정에서는 타 회원국 내 적합성 평가절차에의 참여 비차별 허용에 관한 조항 외에는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WTO 회원국은 양자간 FTA를 통해 각국의 선호 및 필요에 따라 추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중 정보요청 가능여부 또는 상호인정협정(이하 MRA) 추진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양자간 FTA TBT 협정에서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수용과 관련하여 메커니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이 미약한 자발적 조항이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WTO 협정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체결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설부른 면이 있다. 단, 적합성 평가절차의 수용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일괄적으로 명기되어 있는 조항 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적합성 평가기관 간 또는 평가절차 결과에 대한 MRA 협상 장려 조항은 WTO 협정보다 진전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한편 TPP 협정에서는 적합성 평가기관 간 MRA 협상 장려 조항을 ‘적합성 평가기관 간 MRA 추진 방해금지(shall not preclude)’라는 이중부정의 표현을 통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허용의 의미이다.<sup>58)</sup> 이러한 이중부정의 표현

---

58) TPP TBT 협정 제8.6조 제5항 참고.

은 TPP 협정문 내 여러 조항에 나타나는데, 이는 긍정의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기관 간 MRA 추진에 대한 조항은 TPP 협정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면에는 여타 회원국 간 MRA 추진 방해 금지 조항으로 인해 이들과의 MRA 미체결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은 우위산업 경쟁력 저하 또는 시장 선점효과 상실 등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편 MRA 협상 요청 거절 시 상대국에 거절 사유 설명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해당 협상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가능함을 내포한다.

둘째로 TPP 협정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타 회원국 영역 내 소재한 적합성 평가기관 관련 문제에 대한 정보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타 영역 내 소재하는 평가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악된다. 이로써 회원국은 타 회원국 내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해당 평가기관에 대해 사전 검토가 가능해졌다. 동 조항은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싱가포르와의 TBT 협정에도 존재하며, 타 회원국 영역 내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정보요청<sup>59)</sup>이 가능하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셋째로 WTO 협정 또는 여타 FTA TBT 협정과는 달리 타 회원국 영역 내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에서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를 수용하기 위해, 해당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을 인정하는 인정기관의 형태에 제한을 둘 수 없음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타 회원국 내 인정기관이 ① 하나 이상의 인정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회원국에서 운영되고 있거나 ② 비정부기관이거나 ③ 인정기관의 인정절차를 운영하지 않는 당사국에 거소하거나 ④ 자국 영역 내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거나 또는 ⑤ 영리기관이라는 이유로 적합성 평가기관이 수행한 평가 결과의 수용을 거절할 수 없음('no Party shall refuse

---

59) 한·싱가포르(제8.5조 제14항) FTA TBT 협정에서는 적합성 평가기관의 기술적 역량과 규정상 요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이용되는 인정제도와 같은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to accept~')을 의미한다. 동 조항은 위와 같은 사유로 거절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거절을 유도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금하고 있다. 즉, 위와 같은 형태의 기관이라도 조건이나 기준에 부합하면 인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해당 조항은 WTO 협정이나 우리나라의 기체결 TBT 협정에 나타나지 않는 조항으로, 인정기관의 수용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 해당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동 조항은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협정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규정(WTO+)으로 제도 개선 대상으로 분류된다.

넷째로 '국내거소요건 금지' 조항은 TPP 협정에 처음 신설된 조항으로 WTO 협정 또는 우리나라의 기체결된 TBT 협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sup>60)</sup> TPP 협정은 미국과 일본의 주도 아래 타결된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또는 일본의 기체결된 FTA TBT 협정에서도 유사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타 회원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은 반드시 자국 영역 내에 소재하는 인정기관에 의해 인정, 승인 또는 면허를 부여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TPP 협정에서는 타 회원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정하는 인정기관이 반드시 자국 영역 내 소재하는 기관이어야만 하는 이른바 '국내거소요건'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예컨대, 우리나라 영역 내 거소하는 타 회원국의 평가기관은 우리나라 대표 인정기관 중 하나인 한국인정기구(이하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에 의해서만 인정, 승인 또는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TPP 협정에 가입한다면, 우리나라 영역 내 존재하는 타 회원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이 반드시 KOLAS에 의해서만 인정, 승인 또는 면허를 부여받아야 할 필요는 없어질 것이다. 즉, 국제시험소인정기구협의체(이하 ILAC) 또는 국제인정기구포럼(이하 IAF)에서 추진하는 다자간 상호인정협정(이하 MLA)에 체결되어 있는 인정기관이라면, 소재지와 관계없이 평가기관으로서 인정, 승인 또는 면허 부여가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은 우리나라의 기체결된 FTA 이행을 통해서나, 국제 제도적으로 시행된 바가 없는 새

---

60) TPP 협정 제8.6조 제9(c)항 참고.

로운 규범이다. 이에 따라 TPP 가입을 고려할 경우 이와 관련된 국내 법령의 제·개정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국내거소요건’을 금지하는 내용의 신규 법규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sup>61)</sup>

마지막으로 TPP 협정문에서는 국제적 또는 지역적 MLA 또는 MRA에 참여하고 있는 인정기관에 의해 인정받은 적합성 평가기관이 수입국의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관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관에 대한 수용을 수입국이 고려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sup>62)</sup> 이는 WTO 협정 제9.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적합성 평가에 대한 국제적 체제 수립 및 채택을 장려하며, 이러한 국제적 MRA에 참여하는 인정기관에 의해 인정받은 적합성 평가기관을 수용하도록 촉진하는 조항이다.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TBT 협정에도 이와 유사한 조항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EU, 터키와 체결한 TBT 협정에는 “인정기관이 관여된 국제협정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하도록 당사국 간 합의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체결한 TBT 협정에서도 관련 국제표준 및 지침을 토대로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정 장려 및 해당 기관에서 시행된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sup>63)</sup> 동 조항은 ‘shall’의 표현을 통해 의무 준수를 강제하는 듯 보이나, 사실상 ‘채택을 고려(consider adopting)’함에 대한 의무인바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강제 조항으로 분류하기에는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다. 동 조항은 WTO 협정 조항에 비해 명시적으로는 구체화되어 있으나, 의무 범위 또는 수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낮아 이행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 2) 적합성 평가절차

다음으로 적합성 평가절차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합성 평가

---

61) 유새별(2016), p. 16.

62) TPP 협정 제8.6조 제8항 참고.

63) 한·EU(제4.6조 제2(다)항), 한·터키(제5.6조 제2(다)항), 한·캐나다(제6.4조 제3(라)항) FTA TBT 협정문 참고.

절차에 대한 주요 규범으로 적합성 평가 결과의 수용을 들 수 있다.<sup>64)</sup> 이는 WTO 협정 제6.1조 및 제6.2조에 의거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다. 다만 양자간 또는 지역간 FTA 협정에서는 이를 거절할 경우 거절 사유를 타 회원국에 설명할 의무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다. TPP 협정에도 동일한 맥락에서 타 회원국 영역 내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고, 미수용 시 사유 설명에 대한 의무가 추가되었다. 동 조항은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TBT 협정<sup>65)</sup>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그림 2-6 참고) 이는 WTO 협정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상호인정(MRA) 관련 조항은 WTO 협정보다는 높고(WTO+),<sup>66)</sup> 기체결한 FTA TBT 협정과도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TPP 협정의 경우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일방 또는 상호수용에 대해 별도의 조항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sup>67)</sup> 단, 표현상 ‘미수용(또는 요청의 거절) 시 사유 설명’으로 명시하여 해당 조항의 준수 의무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 동 조항은 적합성 평가결과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참여국의 권한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사유를 제시하도록 추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TPP 협정에서는 타 회원국 영역 내 평가기관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결과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sup>68)</sup> 이는 WTO 협정 제6.1조 제1항과의 연계 조항으로도 볼 수 있으나, WTO 협정이 적합성 평가절차의 수행 전에 실시되는 사전 검증을 의미한다면, TPP 협정에

---

64) TPP 협정 제8.6조 제10항 참고.

65) 한·페루(제7.6조 제2항), 한·미(제9.5조 제2항), 한·호주(제5.6조 제3항), 한·콜(제6.6조 제2항), 한·뉴(제6.7조 제4항), 한·베트남(제6.6조 제4항) FTA TBT 협정문 참고.

66) WTO TBT 협정 제6.3조에 기초하여 해당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67) 적합성 평가절차의 수용 촉진을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 존재 인정에 관한 조항은 TPP 협정 제8.9조 「공동협력 및 무역촉진」 제1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68) TPP 협정 제8.6조 제6항 참고.



서는 이를 적합성 평가절차 수행 후에 사후 검증(review)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방해 금지’의 기준이 모호하여 자칫 회원국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유사한 조항은 우리나라와 칠레, 싱가포르 간에 기체결된 FTA 협정에도 존재하는바 우리나라의 TPP 참여 시 국내법과의 조화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TPP 협정문에는 WTO 협정 내 의무와 일관되게 자국 또는 상대국 영역 내 소재하는 지정 정부기관(specified government bodies)과 전적으로 연관되는 특정품목의 적합성 평가 수행을 금지하지 않을(‘shall not’ preclude) 의무도 명시되어 있다.<sup>69)</sup> 이러한 의무와 함께 정보요구 제한 관련 WTO 협정 제 5.2조(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4조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경우 합법적 상업적 이익 보호 및 검토절차 타당성에 대해 타 회원국에 설명할 의무도 추가되어 있다.<sup>70)</sup>

당사국은 타 회원국에 정보요구 시 ① 요구되는 정보가 적합성 평가 실시와 비용 결정에 어떻게 필요한지 ② 합법적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의 비밀유지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③ 적합성 평가절차의 운영과 관련 불편사항을 검토하고 불편사항이 정당할 경우 적당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동 조항은 WTO 협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 TBT 협정<sup>71)</sup>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회원국별 지정 정부기관과 전적으로 연관되는 특정품목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해당 품목 목록(list)과 목적 등에 대해 타 회원국에게 간단한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TPP 협정에는 적합성 평가관련 영사거래<sup>72)</sup>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미국과의 FTA 협정에

69) TPP 협정 제8.6조 제3항 참고.

70) TPP 협정 제8.6조 제4항 참고.

71) 한·칠레(제9.6조 제2항, 제9.9조), 한·싱가포르(제8.6조 제1항, 제2항, 제3항) FTA TBT 협정문 참고.

72) ‘영사거래(consular transaction)’에 대한 설명은 [표 3-1] 주석 참고.

서도 찾아볼 수 있으나, 이는 상대국의 상품 수입 관련 제반 비용 및 수수료를 포함한 포괄적인 영사거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한편 TPP 협정에서는 적합성 평가를 특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기체결한 FTA 협정(TBT 조항<sup>73</sup>)과 다르며, WTO 협정보다 의무수준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라. 투명성

TPP 협정 내 「투명성」 조항은 대체로 WTO 협정 또는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 TBT 협정 조항과 일치하거나 유사하다(표 3-1 참고). 특히 기술적 능력이 각기 다른 국가들이 혼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TPP 협정은 상호간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명성 제고에 주력한 결과가 반영되어 있다.

TPP 협정은 다자간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WTO 협정 방식보다는 양자간 FTA 협정의 방식과 유사하게 투명성 조항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TPP 협정에는 전반적으로 TBT 조치 개발에 대해 ① 개발 과정 참여에 비차별 허용 ② 공표 방법 및 범위 ③ 공표 위치 ④ 공표 대상 ⑤ 공표 후 절차(타 회원국에의 의견제시 기간 제공 등) ⑥ 채택 후 절차(공개 범위 및 방법, 시행 전 유예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다.

[표 3-3]을 살펴보면 TPP 협정은 WTO 협정 또는 우리나라의 기체결한 FTA TBT 협정 조항과 대체로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타 협정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부 조항에 대한 의무가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TPP 협정은 제안된 TBT 조치의 공표 범위 및 내용이 보다 상세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TPP는 다자간 협정인 만큼 WTO 협정과 유사하게 중앙정부 직속 관할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기관과 동일한

---

73) 한·미(제2.10조 제2항) FTA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 EU·싱가포르(제2.10조 제3항), 호주·칠레(제3.10조 제2항), 캐나다·콜롬비아(제209조 제2항), 중·칠레(제9조 제2항), 중·스위스(제4.16조) 간 FTA 협정문에도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다.

의무 요건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특징이다.<sup>74)</sup>

[표 3-3]에서는 TPP 협정 투명성 조항에 대해 WTO 협정보다 강화된 수준(WTO+) 또는 우리나라의 기체결된 FTA TBT 협정보다 강화된 수준(TBT+)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① **통보 필요요건:** 새로운 규제조치 도입에 대한 통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WTO 협정과 동일하게 △ 국제표준에 의한 지침 또는 권고사항의 부재 △ 제안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기술적 내용이 관련 지침 또는 권고사항과 불일치 △ 동 TBT 규제조치가 타 회원국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경우 등이다.

② **통보 시기 및 방법:** 이에 대해 TPP 회원국은 WTO 회원국 및 TPP 회원국 이해관계자가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초기단계에 해당 조치의 원문과 통보문을 전자적인 방식(단일 공식저널 또는 웹사이트)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는 WTO 협정에 따라 규정된 조항으로 기존 통보 절차 방식과 동일하다.

③ **통보 범위:** 단, TPP 협정에서는 해당 TBT 조치의 제·개정 시 타 회원국에 제·개정(안) 및 최종본 제출을 요구하는 등 WTO 협정보다 의무 수준이 높다. 예컨대 WTO 협정(제2.9조 제2항)에서는 제안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상세내용 또는 사본(copies)을 요구하는 반면, TPP 협정(제8.7조 16항)에서는 해당 원문(original notification)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새롭게 제정된 제정(안)과 기존 법률의 개정(안)과 이에 대한 최종본을 원본으로 공개하여 타 회원국 이해관계자에게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한·미 FTA TBT 협정<sup>75)</sup>과 가장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④ **개발과정 참여 허용 및 대상:** 해당 기술규제조치 제·개정 과정에 대한 참여허용 여부 및 대상에 대해 WTO 협정에는 별다른 명시가 없는 반면 TPP 협정은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TBT 협정과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새

---

74) 유새별(2016), p. 5.

75) 한·미 (제9.6조 제3항(다), 제4항) FTA TBT 협정문에도 TPP 협정과 유사하게 제안본과 최종본 모두 공표하고 통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별(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협정의 경우 체결국마다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제·개정 공표 방식이 상이하나, 대체로 타 회원국인의 참여 허용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적용하거나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sup>76)</sup> TPP 협정은 전자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⑤ **통보 시기 및 방법:** TPP 협정에는 기술규제조치를 타 회원국에 공표한 이후의 일련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기술규제조치의 제·개정(안)을 통보한 후 타 회원국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60일 이상)을 보장하고, 그 의견에 대한 응답과 중요한 개정 사항에 대해 타 회원국에게 60일 이내에 설명할 의무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타 회원국의 의견에 대한 응답 회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WTO TBT 정례회의(매년 3, 6, 11월 개최)와 3년 주기 TBT 협정 검토회의(Triennial Review)<sup>77)</sup>를 통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sup>78)</sup> 즉, 이는 검토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안전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TPP 협정에 반영된 결과임을 짐작할 수 있다.

상기 조항과 함께 60일 이내에 최종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 달성방법 및 대체 접근방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의무도 추가되어 있다.

⑥ **의견 개진기간 보장:** 기술규제조치 제·개정(안) 통보 후 타 회원국의 서면 의견제시 및 해당 기간을 보장하는 조항은 WTO 협정과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TBT 협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타 회원국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60일 이내 응답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TPP 협정에서만 나타난다. 특히 최종 제·개정된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가 타 회원국 무역에 중대한 영향

76) 칠레, 터키, 미국, EU, 캐나다, 호주와의 TBT 협정에는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제·개정 과정에 타 회원국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반면 페루,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와의 협정에서는 해당 조치의 결과를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7) 3년 주기 검토회의(Triennial Review)는 WTO TBT 협정 제15.4조에 의거하여 TBT 협정 시행일로부터 3년마다 WTO 회원국 간 TBT 협정의 운용 및 이행 사항을 검토하는 회의로, 1995년 WTO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일곱 차례 검토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이 검토회의에서는 주로 ① 표준 및 모범규제관행 ② 적합성 평가절차 ③ 투명성 ④ 위원회 운영방안 등 협정문 주요 안전에 대해 논의된다.

78) 제6차 및 제7차 WTO TBT 위원회 3년 주기 검토회의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투명성' 조항에 대해(타 회원국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신속한 응답 회신) 안전을 제기한 바 있으며, 해당 안전에 대만을 비롯한 다수 국가가 지지한 바 있다.

(significant effect)을 미칠 경우에는 반드시('shall')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6차 3년 주기 검토회의에서 WTO TBT 위원회에 기술규제조치 통보 시 타 회원국의 무역에 대해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에만 통보의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에 대해 '중대한 영향'이라는 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한 바 있다.<sup>79)</sup> 우리나라의 향후 TPP 가입 시에 기존 사례분석을 토대로 모호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⑦ **업무계획 공유:** 마지막으로 TPP 협정(제8.7조 제19항)에서는 현재 준비 중이거나 기 채택된 표준을 포함하여 중앙정부 표준화기관의 업무 계획(work programme)을 웹사이트에 공표할 것을 의무화('shall')하고 있다. 이는 WTO 협정 또는 기존 FTA TBT 협정에는 존재하지 않는 신규 조항이다. 이는 제7차 3년 주기 검토회의에서 일본 측이 제안한 안건<sup>80)</sup>으로, WTO TBT 사무국 보고서<sup>81)</sup>에 최종 반영된 바 있다. 동 조항은 다자간 또는 지역간 TBT 협정상 최초로 규정된 조항으로, 일본 측 의견이 TPP 협정에 적극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양자간 FTA TBT 협정에는 존재하지 않던 조항으로 높은 수준의(TBT+)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

79) 서정민 외(2012), p. 69.

80) 일본은 제7차 WTO TBT 위원회 3년 주기 검토회의에서 중앙정부 표준화 기관이 표준 준비 과정에 대한 업무계획을 웹사이트상에 게재하고, 게재된 웹사이트 주소를 ISO/IEC 정보센터에 통고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G/TBT/W/413 참고).

81) WTO(2015b).

표 3-3. TPP TBT 협정 「투명성」 조항 수준 분석

구분	TPP TBT (제8.7조)		WTO+	TBT+ <sup>1)</sup>
투명성 제고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적 도구(electronic tools)</li> <li>공공 지원활동(public outreach)</li> <li>협의회(consultations)</li> </ul>		✓	-
통보 필요요건 (wh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표준기관에 의한 지침 또는 권고사항의 부재</li> <li>제안된 TBT 조치의 기술적 내용이 관련 지침 또는 권고사항과 불일치</li> <li>동 기술조치가 타 회원국 무역에 중대한 영향 초래할 경우</li> </ul>		-	-
통보 시기 (wh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절한 초기단계</li> </ul>		-	-
개발과정참여	허용여부	가능	✓	-
	참여대상	타 당사국 국민 참여 비차별 허용	✓	-
공표 위치 (whe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일 공식저널(관보) 또는 웹사이트 공표</li> </ul>		-	-
대상 (who)	통보대상 (to whom)	타 회원국 이해관계자 / WTO 회원국	-	-
	통보기관 (by whom)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비정부기관)	-	-
공표 범위 (wh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제정안</li> <li>기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개정안 및 최종본 원문</li> </ul>		✓	✓
통보 내용 (what + 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안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 및 처리방법</li> <li>정책제안서, 논의문서, 제안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요약, 제안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초안</li> <li>무역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 세부적 내용 포함</li> </ul>		✓	-
통보 방법 (h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TO 사무국 공식질의처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li> </ul>		-	-
공표 후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 회원국의 서면 의견개진 기간 허용(60일+)</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 회원국의 서면 의견에 대한 응답 및 중요한 개정에 대한 설명 제공(60일 이내)</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종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달성 방법, 대체 접근방안에 대한 설명 제공(60일 이내)</li> </ul>		✓	✓
채택 후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준비 중이거나 채택된 표준 포함 중앙정부 표준화 기관의 업무 계획에 대한 발표</li> </ul>		✓	✓
최종공표와 발효 사이 유예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리적인 기간(6개월 이상)</li> </ul>		✓	-

주: 1) 우리나라의 기체결된 FTA TBT 협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체결된 조항의 존재여부 식별 기준.

2) - 는 WTO 협정 또는 우리나라의 기체결된 FTA TBT 협정과 동일한 수준.

3) ✓는 WTO 협정 또는 우리나라의 기체결된 FTA TBT 협정보다 높은 수준.

자료: TPP TBT 협정문 제8.7조 「투명성」 조항을 토대로 저자 작성.

상기 내용을 종합해보면 TPP 협정 중 특히 적합성 평가 및 투명성 조항은 여타 FTA 협정의 TBT 규범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sup>82)</sup> 적합성 평가 조항에 있어 TPP 협정은, 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내국민대우 또는 상호수용(MRA)을 최대 수용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WTO 협정 또는 우리나라의 기체결된 FTA TBT 협정과 달리, 적합성 평가기관의 내국민대우와 요구조건 완화 등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투명성 조항에는 새롭게 제정하거나 기존 규제조치의 개정 시 해당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타 회원국에 가급적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TPP 협정은 대부분 WTO 협정에 근거하여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TPP 가입 시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특정 품목에 대한 일부 규정과 WTO+ 및 TBT+ 조항의 경우에는 국내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거나 일부 국내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sup>83)</sup>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WTO 협정을 골자로 하는 TPP 협정문은 앞으로도 WTO 회원국 간 논의되는 다수의 안건이 본 협정문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엇보이는바 WTO TBT 위원회의 논의 동향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TPP 협정 조항이 WTO 협정에 비해 의무수준이 높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의 TPP 가입 전 TPP 협정 조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제도 개선 등의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

82) 유새별(2016), p. 15.

83) 위의 책, p. 15.

## 2. TPP TBT 협정 조항의 국내 기술규제와의 조화

2015년 11월에 공개된 TPP 협정문에는 기존 FTA 또는 국제통상협정에 없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규제일관성(Regulatory Coherence)이 그 중 하나이다.<sup>84)</sup> 이는 현 국제통상체제에서 법적으로는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해외 기업 간 비차별대우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de facto)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 대우와의 괴리를 좁히고 이를 개선하고자 도입한 체제이다. 이러한 규제개혁 추진은 1997년과 2001년에 OECD에서 제시한 원칙에서 기인한다.<sup>85)</sup> OECD, APEC 등 국제협력체계에서는 차별적 대우, 복잡한 행정절차, 높은 비용 및 처리시간 등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규제적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장려하고 있다. 이에 더해 WTO 협정에서도 ‘투명성’ 또는 ‘협력’ 등의 조항을 통해 규제개혁을 권장하고 있다. TPP 협정에는 제25조 ‘규제일관성’ 장(chapter)을 단독으로 마련하여 규제투명성 및 전반적인 규제개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통상협정 중 유일무이한 사례이다.<sup>86)</sup> 물론 미국과 EU가 추진 중인 TTIP(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에서도 규제일관성에 대한 안건이 제기되어 협정문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본 협상이 아직 마무리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제외하였다.

양준석(2016)은 우리나라가 OECD의 권장사항에 따라 이미 규제개혁 체제를 개선한 바 있으며, 규제일관성 장에서 요구하는 상당 부분을 이미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sup>87)</sup> 우리나라는 규제개혁위원회<sup>88)</sup>를 통해 행정부가 제출하는

---

84) 양준석(2016), p. 188.

85) 위의 책, p.189.

86) 위의 책, p.189.

87) 위의 책, p.207.

88) 규제개혁위원회(Regulatory Reform Committee)는 1998년에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정부의 규제정책 신설·강화규제 심사, 규제정보 관리 및 개별부처 단위의 규제개혁, 규제개혁 관련 제도 개편·운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보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규제정보포털 웹사이트 검색일: 2016. 5. 13).



법안이나 신설 또는 강화 규제를 검토하는 등 TPP에서 요구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다고 본다.<sup>89)</sup> 특히 기술규제조치 관련 조항은 TPP 협상 초기부터 WTO 협정의 확장형으로서 한·미 FTA(이른바 KORUS FTA) 협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sup>90)</sup>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TPP 협정 조항의 다수를 수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TPP 협정에는 WTO 협정 또는 우리나라의 기체결된 FTA 협정에 없던 조항이 일부 규정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 대비하여 국내 제도의 개선 또는 법률의 제·개정을 통한 규제의 조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TPP 협정 조항 중 WTO 협정 및 우리나라의 기체결된 TBT 협정에 존재하지 않는 신규 조항 또는 한층 진전된 수준의 조항(이른바 플러스 조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내 법규와의 조화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다음 우리나라가 향후 TPP에 가입할 경우 해당 신규 또는 플러스 조항에 대한 우리나라 국내 법규에서의 제·개정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타진해볼 예정이다.

## 가. 우리나라의 기술규제정책 및 제도 현황

먼저, 우리나라의 기술규제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표준제도 확립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1999년에 「국가표준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sup>91)</sup> 동 법령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산하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총괄 아래 시행되고 있다. 「국가표준기본법」은 범정부에서 관장하는 모든 기술규제정책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법률이며, 그중 기술규제조치에 관해서는 「산업표준화법」, 「제품안전기본

---

89) 양준석(2016), p. 207.

90) Fergusson, McMinimy, and Williams(2015), p. 35.

91) 한승준(2009), p. 53.

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계량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표준기본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산, 시험, 검사, 인증과 더불어 다양한 연구 등에도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대표 규격인 ‘국가표준’으로 「산업표준 화법(KS)」과 「한국정보통신국가표준(KICS)」을 포함한다. 그리고 각 소관부처의 정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격인 ‘기술규정’이 있는데, 이는 특정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각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sup>92)</sup>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기술규정 관련 법률은 「국가표준기본법」 아래 200여 개의 하위 법령에 속해 있다. 기술규정과 표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강제(mandatory) 또는 임의(voluntary)에 대한 구분이며, 적합성 평가절차는 기술규정 또는 표준을 식별함에 있어 사용되는 절차이다.<sup>93)</sup>

「국가표준기본법」에는 국가표준, 국제표준, 적합성 평가, 제품인증, 시험·검사기관의 인정,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및 인증시험 결과의 상호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동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은 일부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 TBT 협정 내 조항과 일치하거나 유사하다. 「국가표준기본법」은 국내 제도 개선을 실현하고자 2009년 4월에 전문개정을 시행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거의 매년에 걸쳐 일부 개정을 시행하였다. 이는 최근 양자간 또는 지역간 FTA 체결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 법규와의 조화 및 일부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특히 한·EU FTA의 발효(2011년 7월)와 한·미 FTA의 발효(2012년 3월) 시점을 앞둔 2009년과 2010년에 제·개정된 조항이 다수 존재한다. 최근 2016년 1월에도 일부 법령의 개정을 통해 다수의 조항을 새로 신설 또는 삭제하였는데, 이러한 제·개정 조치를 통해 현재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양자간 또는 지역간 FTA 내 TBT 협상 동향을 기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표준 또는 기술규정이 불합리하고 비차별

92) 하선권, 최정택, 김성준(2011), p. 5.

93) Barbour(2010), p. 23.

적이라고 인식하는 외국기업의 인식<sup>94)</sup>을 개선하고자 국내 법규 제·개정을 통해 규제의 완화를 시도하는 절차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인식에서 탈피함과 동시에 교역국 간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시장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OECD 보고서(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가표준의 국제표준과의 조화 및 국제인증프로그램 채택 등 한국의 국가표준과 적합성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표준기본계획(Five-year National Standards Plan)’을 실시하고 있다.<sup>95)</sup> 국가표준기본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국가 표준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 종합계획으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수립·시행되어왔다.<sup>96)</sup>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은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비전 아래 국제표준제도의 확립을 추진하고자 국가표준을 국제표준화기구(이하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이하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에서 제·개정된 표준 또는 관련 국제표준과 조화하기 위해 시행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2016년 기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제·개정 및 확인된 표준은 총 2만 358종이며, 부합화 대상 국제표준은 13만 847종이다.<sup>97)</sup> WTO 협정에 따르면 국가표준은 ISO, IEC, ITU 등 국제표준과 부합화하여 제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표준 중 97%에 달하는 13만 434종의 KS 표준이 국제표준과 부합한다(표 3-4 참고). 이는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이전인 2001년에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율이 70%도 되지 않던 과거와 비교하면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국제표준에 대해 우리나라 기술이 반영된 표준은 2015년 기준 누적 686건으로 2005년의 80건에 비하면 8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그

---

94) OECD(2007), p. 48.

95) 위의 책, p. 110.

96) KSA한국표준협회(2015), p. 2.

97) 국가기술표준원(2015), p. 3.

표 3-4. KS 국제표준 부합화 현황(2015년 말 기준)

구분 연도	KS 보유 현황	부합화 대상 국제표준 (A)	부합화 실적			동등하지 않음 (NEQ)	부합화율 (%, B/A)
			계(B)	일치 (IDT)	수정 (MOD)		
2001	11,985	3,878	2,707	1,401	1,306	1,171	69.8
2010	23,639	15,863	15,369	13,914	1,455	494	96.9
2011	23,940	16,036	15,543	14,095	1,448	493	96.9
2012	24,129	16,099	15,616	14,189	1,427	483	97
2013	20,482	13,918	13,510	12,304	1,206	408	97.1
2014	20,519	13,777	13,383	12,174	1,163	394	97.1
2015	20,358	13,847	13,434	12,266	1,168	413	97

자료: 국가기술표준원(2015), p. 4.

러나 여전히 2만여 종이 넘는 ISO/IEC 표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sup>98)</sup>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6~2010)」은 범정부적인 표준화 협력의 토대 구축과 국가표준제도의 중장기적 발전 비전 제시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제2차 계획은 통합 국가표준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각 부처별 표준 및 기술기준 간 중복·이원화를 해소하고 국가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혁신으로 불필요한 무역상 기술장벽을 제거하며, 국제표준화 활동 및 상호인정협정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sup>99)</sup> 이에 대해 우리나라 「무역정책검토(이하 TPR: Trade Policy Review)」 보고서를 통해 상기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의 핵심성과를 보고하였다. 핵심성과로는 △ 우리나라가 제안한 네 가지 전자서명 기술(digital signature technologies)과 다섯 가지 전자부품(electronics technologies)이 각각 ISO/IEC 및 IEC에 의해 공표된 것과 △ 국가기술표준원(이하 'KATS')에서 구축한 웹기반(web-based) KS 개발 시스템을 통해 KS 표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의 시행, 특히 전자결제 제도(e-payment settlement)

98) 산업통상자원부(2006), p. 13.

99) 위의 자료, p. 7.

와 함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작업처리를 위한 시스템 기능의 향상이 있다.<sup>100)</sup>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2007년 말까지 24개국 내 30개 기관과 글로벌 표준화 활동, 표준 및 적합성 평가 관련 기술적 정보 교환, 표준화 미팅 개최, 합동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교환에 대한 양자간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보고했다.

이후 2010년 말에는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1~2015)」이 공포되었다. 우리나라는 2012년 TPR 보고서를 통해 '표준 개발' 및 '중복인증시스템 제거'를 정책 목표로 삼고 국가표준시스템의 고도화, 표준기술체계의 강화,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및 민간부문 역량의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피력했다.<sup>101)</sup> 한국 TPR 보고서(2016)에는 성시현 전 국가기술표준원 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당시 시장수요와 기술적 개발을 반영한 KS 표준을 재편성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시스템을 추진 중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다.<sup>102)</sup>

최근 2016년 4월 발표된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2020)」은 '국가표준체계 고도화로 선진경제 구현'함을 목표로 삼고, △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한 표준개발 △ 기업 성장 지원 표준기반 확충 △ 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표준화 △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확산 등 4대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다.<sup>103)</sup>

지난 15년간 우리나라는 국가표준 및 인증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5년 단위로 국가 표준정책을 수립하여 해당 기간 표준활동의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헌법 제127조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에는 국가표준제도 및 표준의 확립 및 유지, 관련 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업무 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TPP 협정 및 우리

---

100) WTO(2008), pp. 60-61.

101) WTO(2012), p. 67. para. 78.

102) 전자신문(2013), 「성시현 기술표준원장, "선도형 표준화 전략으로 표준강국 도약"」(4월 28일), <http://www.etnews.com/201304260321>(검색일: 2016. 5. 17).

103) 「정부, 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확정·발표」(2016. 3. 29).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09810>(검색일: 2016. 5. 17).

나라의 기체결 FTA TBT 협정에서의 관심 조항으로 분류되는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SA한국표준협회(2016)는 제4차 기본계획 달성을 위해 △ 부처별 인증제도 중복성·불합리성 개선 △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 구현 △ 기업·소비자 중심의 시험·인증체계 구축 △ 글로벌 통상시대 표준·인증 대응체계 조성 △ 표준·인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이행방안 수립 추진 등을 수렴할 것에 대해 제안하였다.<sup>104)</sup>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그동안 기체결한 FTA TBT 협정과 여타 Mega FTA가 추구하는 기술규제정책과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법률 및 제도 간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정책적 측면과 함께 실효성 측면에서의 TBT 통상협상 대응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나. TPP TBT 협정과 국내 관련 법률조항 및 제도 현황 비교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양자간 또는 지역간 FTA TBT 협정 조항의 경우 해당 협정 발효 전 우리나라 정부입법절차<sup>105)</sup> 통해 법률을 제·개정하여 시행한다. WTO 협정을 비롯하여 양자간 FTA TBT 협정 내 조항도 동 절차를 통해 이미 기시행되고 있으나, TPP 협정의 경우 새롭게 신설된 조항 또는 플러스 조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바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국내법률 및 제도의 매칭을 통해 동 법규의 수용 가능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중 TPP 협정 원문 일부 법령과 부속서에서 다루고 있는 7개 산업에 대한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104) KSA 한국표준협회(2015), p. 20.

105) 우리나라 정부입법절차는 ① 법령안의 입안 - ② 부패영향평가 - ③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당청협의  
④ 입법예고 - ⑤ 규제심사 - ⑥ 법제처 심사 - ⑦ 차관회의 심의 - ⑧ 국무회의 심의 - ⑨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 ⑩ 국회의 심의, 의결 및 공포안 정부 이송 - ⑪ 국무회의 상정 - ⑫ 공포 등 총 12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7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소요된다.

TPP 협정 부속서에는 와인·증류주, 정보통신제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포장식품 및 식품첨가물, 유기농제품 등 체결국 간 수출입 비중이 높은 주요 관심 산업(품목) 또는 과도한 규제부과가 우려되는 특정 품목에 한해 무역기술표준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항이 도입되어 있다.<sup>106)</sup> 그중 와인·증류주,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포장식품 및 식품첨가물 이상 5개 품목군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소관인 시험 및 검사 관련 법령 또는 고시<sup>107)</sup>에 규정되어 있다. 관련 주요 법령으로는 「식품위생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법령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서 고시한 「전파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정보통신융합법)」을 비롯한 26개의 법·시행령·시행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 유기농제품<sup>108)</sup>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에서 관장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농어업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주요교역품목 중 하나인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그 개정본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이 각각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소관 법률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 절에서 다루었던 적합성 평가, 투명성 그리고 추가로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준수 기간을 비교범위로 하였다. 그중에서도

106) 유세별(2016), p. 9.

107) 식약처 웹사이트에 게재된 바에 따르면 식약처 소관으로 제·개정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총 56건과 고시(22건)·훈령(55건)·예규(52건) 등 총 179건이 존재한다.

108) 식약처에서 고시한 유기농제품군에는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4-200호)」가 있다.

TPP 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산업(품목)과 우리나라 주요 교역품목(전기용품, 자동차 및 부속품, 공산품 등)이 적용되거나 적용 가능한 법률·규정 및 행정규정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TPP 협정 내 조항이 [표 3-1]과 [표 3-2]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 TBT 협정 내 조항과 완벽히 일치하거나 의미상 내용이 동일한 경우는 비교분석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 1) 적합성 평가

TPP 협정 중 '적합성 평가' 조항은 [표 3-5]에 나타나는 우리나라 국내법령 및 고시에 상응한다. TPP 협정에는 '적합성 평가'에 대한 모든 조항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표 3-5]에서는 편의상 임의적으로 ① 적합성 평가기관 ② 적합성 평가절차 ③ 적합성 평가의 투명성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TO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규제조치 관련 조항은 대부분 우리나라 「국가표준기본법」 및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 제2항에는 중앙정부에서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 국제표준이 존재할 경우 이를 반영하되, 새로운 표준의 제정 시 해당 내용을 WTO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험 및 검사기관의 인정, 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적합성 평가체제의 구축에 관한 법률이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를 시행할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인정에 대해서는 제23조, 국내 인정기구와 국제인정협력기구 간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에 대해서는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내 한국인정기구(이하 KOLAS)를 두었고, 인정제도의 운영요령은 국표원 고시 제2015-275호(2015. 7. 15)에 규정되어 있다. TPP 협정 제8.6조 제1항에는 적합성 평가기관의 내국민대우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과 상응하는 국내법령(또는 고시)은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1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고시에는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관의 규모, 성격, 업무영역 또는 그 기관이



소속된 국가에 관계없이 시험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면 누구든지 임의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타 국가에 소속된 기관에게도 자국과 동등한 절차, 기준 및 기타 조건을 비차별적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TPP 협정 부속서에 포함된 7개 산업(품목) 중 5개가 식약처에서 고시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 식품의약품검사법)」에도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적합성 평가기관 지정 요건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식품의약품검사법」 제6조 및 제8조에는 식품, 축산물,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의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 그리고 기관의 지정요건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동 조항을 살펴보면 시험·검사기관 지정에 있어 소속 국가와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음이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유기농제품에 대한 인증기관은 농림부에서 관리하는 「친환경농어업법」 제29조 및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4-4호)」에 따라 지정된다. 상기 나열한 법률 외에도 여타 현행법상 국외 기관에 대한 차별 조건을 적용하는 조항보다는 적합성 평가기관(시험·인증기관)의 내국민대우를 내포하는 조항이 더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TPP 협정 제8.6조 제9(c)항에 명시되어 있는 인정기관의 국내거소요건 또는 운영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국내 법령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동 조항 (다)목에 명시되어 있는 ‘적합성 평가기관 자격획득 및 승인 요건 충족을 위해 타 회원국이 당사국에 신청’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검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에 일부 유사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TPP 가입 시 해당 조항의 수용은 추가 제·개정 절차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적합성 평가기관(시험·인증기관) 간 MRA 체결 또는 국제적 또는 지역적 MRA에의 참여 및 인정 등에 관한 조항은 ISO에서 정한 ISO/IEC 17011 「적합성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일반요구사항」과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이

하 ILAC)에 의해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인정기관인 KOLAS의 운영요령에 규정되어 있다. 해당 고시에는 공인기관의 인정기준, 절차, 의무가 적시되어 있으며, 기관 간 MRA 체결 관련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TPP 협정과는 제8.6조 제5항, 제8항, 제9항, 제12항과 직간접적으로 일치한다. 그중 제5항과 제12항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체결된 TBT 협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8항의 경우 정확하게 일치하는 조항은 없으나, 국표원 고시 제2015-275호 제8장 제38조 및 우리나라의 기체결된 TBT 협정(109)에 유사한 맥락의 조항이 존재한다. 한편 TPP 협정 제8.6조 제9항에 규정되어 있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수용을 위한 평가기관 형태 요건’과 정확히 상응하는 우리나라 국내법령 및 고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표원 고시 제2015-275호 제17조 제1항에 명시된 기관의 규모, 성격, 업무 영역 또는 소속 국가에 대한 비차별 조항에 이어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신청 불가능한 기관의 형태가 TPP 협정에서 언급한 기관의 형태와는 무관하다. 단, 제2항(3호)에서는 숙련도시험 또는 측정심사 결과의 적격여부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에 있어 해당 평가를 실시한 평가기관의 형태요건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TPP 협정 동 조항의 수용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로 ‘적합성 평가절차’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PP 협정 제 8.6조에서 적합성 평가절차 관련 조항은 제3항, 제6항, 제10항, 제13항, 제14항으로 분류하였다. 그중 제13조 ‘타 당사국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수용 거절 시 사유 설명’과 제14조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MRA 협상의 거절 시 사유 설명’에 관한 조항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기체결된 FTA TBT 조항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분석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TPP 협정(제8.6조) 제3항과 제10항에 상응하는 국내 법령 및 고시는 상기 나열한 법률 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기체결

---

109) 한·EU(제4.6조 제2(다)항), 한·터키(제5.6조 제2(다)항), 한·캐나다(제6.4조 제3(라)항) FTA TBT 협정문 참고.

한 TBT 협정 내 '적합성 평가' 조항에서는 일부 유사 조항이 존재한다. TPP 협정(제8.6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품목에 대한 적합성 평가 단독 수행' 조항은 한·싱 TBT 협정 제8.5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과 유사한 맥락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TPP 협정(제8.6조) 제6항은 한·싱 TBT 협정 제8.5조 제15항 및 제16항과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TPP 협정은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검증'을 수행함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한·싱 TBT 협정에서는 '이행요구사항에 따라 수행되는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검증'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TPP 협정(제8.6조) 제10항은 이에 상응하는 우리나라 기체결 TBT 조항 또는 국내 법률조항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제9항의 요건 미달의 이유가 아닌 'WTO 협정 또는 TPP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미달로 인한 거절'의 경우 제13항과 연계되는 조항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우리나라 국내법 제·개정 절차와 무관하게 WTO 협정, TPP 협정 및 우리나라 기체결 FTA TBT 협정 조항으로 같음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적합성 평가의 투명성' 조항을 살펴보았다. 이 부류에는 TPP 협정(제8.6조) 제4항, 제7항, 제11항, 제15항, 제16항을 포함하였다. 동 협정 제4항 및 제7항은 공통적으로 '정보제공'에 관한 조항이다. 그러나 해당 두 조항은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 제4항의 경우 적합성 평가기관이 평가절차 수행에 필요한 정보 요청과 그 요청 사유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이는 적합성 평가기관이 피 평가자에 대해 요구하는 'top-down(하향식)' 정보인 반면, 제7항의 경우 적합성 평가절차 수행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피평가자가 적합성 평가기관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bottom-up(상향식)' 정보요청 (또는 평가기관의 기술역량 입증을 위한 정보 제공)에 대한 조항이다. TPP 협정(제8.6조) 제4항의 경우, '정보접근의 제한 및 비밀유지'를 규정하고 있는 한·싱 TBT 협정 제8.6조 제3항과 일치한다. 한편 TPP 협정(제8.6조) 제7항의 경우, "당사국은 지정된 적합성 평가기관의 기술 역량 및 관련 규정상의 요건 준수를 타 당사국에 입증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한·싱 TBT

협정 제8.6조 제1항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신뢰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시 타 당사국과의 관련 상대기관과 협의’를 규정하고 있는 한·싱 TBT 협정 제8.5조 제6항 라(2)목에 일부 상응한다. 아울러 국표원 고시 제2015-275호 제4장 제20조(인정 및 공고) 및 제26조(숙련도시험)에도 유사 조항을 찾아볼 수 있다. TPP 협정(제8.6조) 제16항에 규정되어 있는 ‘영사거래금지’ 관련 조항은 한·미 FTA 협정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2.10조 제2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단, TBT 협정에만 한정되는 조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용 범위가 다소 모호한 면이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TPP 협정(제8.6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부분의 조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 해당 조항의 수용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내 법령, 고시 및 여타 관련 법률이나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 TBT 협정에 존재하지 않는 조항의 경우 개발·시행 중인 법률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적합성 평가’ 조항의 수용 가능성 타진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한·싱가포르 FTA TBT 협정은 향후 양자 또는 Mega FTA TBT 협상 시 조항 식별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 3-5. TPP 협정 ‘적합성 평가’ 조항의 국내법과의 조화

	TPP TBT 협정(제8.6조)	우리나라 관련 국내 법령 및 고시
적합성 평가기관	(제1항) 각 회원국은 자국 영역의 적합성 평가기관 또는 타 회원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타 회원국 영역 내 적합성 평가기관에게 부여한다(shall). 이러한 대우 부여를 보장하기 위해 각 회원국은, 자국 영역 내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에 인정·승인·면허부여를 하거나 달리 인정하는 것과 같이, 타 회원국 영역에 있는 적합성 평가기관에 동일하거나 동등한 절차, 기준 및 기타 조건을 적용한다(sh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275호 제4장 제17조(신청기관의 요건)</li> <li>• <b>외인·증류주,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포장식품 및 식품첨가물:</b>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 [시행 2016. 2. 3.] [법률 제14020호, 2016. 2. 3., 일부개정]</li> <li>• <b>유기농제품:</b>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시행 2015. 11. 1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1호, 2015. 11. 16., 일부개정]</li> </ul>

표 3-5. 계속

	TPP TBT 협정(제8.6조)	우리나라 관련 국내 법령 및 고시
	<p>(제2항) 회원국이 절차, 기준 및 그 밖의 조건을 유지하고, 상품이 하나의 표준 또는 기술규정을 따르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증하기 위해 시험결과, 인증서 및/또는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p> <p>(가) 제품의 시험·인증·검을 수행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이 당사국 영역 내에 반드시 소재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shall).</p> <p>(나) 자국 영역 밖에 소재한 적합성 평가기관들에게 자국 영역 내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shall).</p> <p>(다) 타 회원국 영역 내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이 당사국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거나 그 밖에 달리 상품의 시험·인증·검사가 가능하도록 승인하는 데 요구되는 절차, 기준 및 조건의 충족을 판정받기 위해 당사국에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sh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나)에 상응하는 국내법령 및 고시 없음</li> <li>• <b>와인·증류주,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포장식품 및 식품첨가물:</b>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 2016. 2. 3.] [법률 제14020호, 2016. 2. 3., 일부개정]</li> <li>•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국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시행 2015. 12. 31.] [총리령 제1236호, 2015. 12. 31., 일부개정]</li> <li>•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장 제7조(품질경영체제 등을 인증하는 기관에 대한 인정 등)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3호, 2014. 6. 3., 타법개정]</li> </ul>
	<p>(제5항) 어느 한쪽 회원국이 자국 영역 밖에 소재한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정·승인·면허 부여 또는 달리 인정하기 위해 상호인정협정(MRA)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shall not).</p> <p>(제12항) 이를 거부하거나, MRA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해당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시에 거절사유를 설명해야 한다(sh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표준기본법」 제4장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47호, 2016. 1. 6., 타법개정]</li> <li>•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275호 제8장 제38조(상호인정협정)</li> </ul>
	<p>(제8항) 어느 한쪽 회원국은 적합성 평가기관들이 국제적 또는 지역적 MRA에 참여한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실을 승인한다는 조항의 채택을 고려한다(shall consider). 회원국은 해당 MRA가 적합성 평가기관을 승인하는 핵심 고려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인정한다(recognis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275호 제8장 제38조(상호인정협정)</li> </ul>
	<p>(제9항) 어느 한 회원국은 적합성 평가기관으로부터 수행된 적합성 평가결과 수용을 위해 해당 평가절차의 수행기관을 인정하는 인정기관이 △ 하나 이상의 인정기관이 존재하는 당사국 영역 내에서 운영하는 기관 △ 비정부기관 △ 인정기관의 인정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회원국 영역 내 거소하는 기관 △ 당사국 영역 내에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는 기관 △ 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을 금지한다(no Party shall refus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275호 제3장 제15조(평가 및 인정기준)</li> <li>•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275호 제4장 제17조(신청기관의 요건)</li> </ul>

표 3-5. 계속

	TPP TBT 협정(제8.6조)	우리나라 관련 국내 법령 및 고시
적합성 평가절차	(제3항) 제1항, 제2항은 WTO 협정 의무와 일관되게, 회원국 또는 타 회원국 영역 내 소재하는 지정정부기관이 특정품목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shall not preclu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싱가포르(제8.5조 제6항 (가)목)</li> </ul>
	(제6항) 제1항, 제2항, 제5항에 대해 어느 한 쪽 회원국은 자국 영역 밖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들에 의해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검증을 방해하지 않는다(Nothing~preclud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유기농제품:</b>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동등성 인정)</li> <li>• 한·싱가포르(제8.5조 제15항 및 제16항)</li> </ul>
	(제10항) 제9항에서 언급된 어느 적합성 평가기관으로부터 수행된 적합성 평가결과 수용을 거절함에 있어 거절 입증이 가능하고, 그 조치가 WTO 협정 및 동 협정에 합당하면 금지하지 않는다(Nothing~prohib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조항 없음</li> </ul>
적합성 평가의 투명성	(제4항) WTO 협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상대국 요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구되는 정보가 적합성 평가와 비용 산정에 필요하다는 것</li> <li>- 합법적 상업적 이익이 보호되도록 정보의 비밀유지 보호할 것</li> <li>- 적합성 평가절차의 운영 관련 불편사항 검토 후 그 불편사항이 정당할 때 적당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shall).</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유기농제품:</b>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li> <li>• 한·싱가포르(제8.6조 제3항)</li> </ul>
	(제7항) 제6항에 더하여 각 회원국 영역 내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타 회원국 영역 내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들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m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275호 제4장 제20조(인정 및 공고)</li> <li>•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275호 제4장 제26조(숙련도시험)</li> <li>• 한·싱가포르(제8.5조 제6항 라(2)목)</li> <li>• 한·싱가포르(제8.6조 제1항)</li> </ul>
	(제11항) 어느 한쪽 회원국은 적합성 평가기관이 (MRA 체결 포함) 인정, 승인, 면허획득 또는 달리 인정받을 만한 자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척도가 되는 절차 또는 조건을 전자적 수단에 의해 공표한다(sh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표준기본법」 제4장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47호, 2016. 1. 6., 타법개정]</li> </ul>

표 3-5. 계속

	TPP TBT 협정(제8.6조)	우리나라 관련 국내 법령 및 고시
	(제15항) 어느 한쪽 회원국이 부당한 적합성 평가 비용은 대략적인 서비스비용으로 금액을 한정한다(sh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유기농제품:</b>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수수료)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li> </ul>
	(제16항) 어느 회원국도 관련 비용 및 대금을 포함하여 적합성 평가 관련 영사거래를 요구할 수 없다(No Party sh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제2장 제2.10조 제2항)</li> </ul>

자료: TPP TBT 협정과 우리나라의 기체결된 TBT 협정, 국내 법률 및 제도를 참고하여 저자 재정리.

## 2) 투명성

TPP 협정 제8.7조 ‘투명성’ 조항은 대부분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 협정 TBT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1항 ‘기술규제조치의 개발과정에 타 회원국 국민의 참여 비차별 허용’ 관련 조항은 다수 국가(EU,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등)와 체결한 FTA TBT 협정 발효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조항이다. 제4항에는 새로운 기술규제조치의 도입 시 공표해야 하는 문서의 범위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우리나라 「국가표준기본법 제4장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산업표준화법 제2장 제5조(국가표준심의회)」 및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와 더불어 기체결한 FTA TBT 협정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단, 해당 조항에 따라 공표를 함에 있어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제안된 기술규정의 기술적 내용이 관련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동 기술규정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sup>110)</sup>에 한해 의무를 부여하는 WTO 협정과는 달리 이에 한정되지 않고 새로운 기술규제조치의 도입에 대한 모든 경우에 대해 해당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WTO 협정보다 수준 높은 조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 역시 한·미 FTA TBT

110) WTO TBT 협정 제2.9조 참고.

협정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바 TPP 협정 조항의 수용으로 인해 수반되는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통보방법(전자적 수단 또는 관보이용 등)에 대한 조항을 비롯하여 WTO 회원국에 대한 통보의무, 새로운 조치의 공표와 채택 간 유예기간 등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나라 국내 법령 및 고시, 또는 기 체결한 FTA TBT 협정에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나라에 추가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TPP 협정 제8.7조 제15항은 동 협정 제8.8조와 연계된 조항으로 후속 소절에서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TPP 협정 제8.7조 제19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국내 법률조항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국가표준기본법」 제4장 제20조 제3항(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과 가장 유사하다. 그러나 상호적용 원칙 아래 국가안보, 기술적 유출 또는 상업적 이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해당 조항의 도입은 투명성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필요한 규정으로 예상된다.

표 3-6. TPP 협정 '투명성' 조항의 국내법과의 조화

	TPP TBT 협정 (제8.7조)	우리나라 관련 국내 법령 및 고시
TBT 조치의 투명성	(제1항) 각 회원국은 중앙정부기관/지방정부의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과정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타 회원국 국민들의 참여를 허용한다(sh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EU(제4.4조 제3항, 제4.6조 제3항), 한·미(제9.6조 제1항), 한·터키(제5.10조 제1항), 한·호주(제5.8조 제1항), 한·캐나다(제6.6조 제3항)</li> <li>• 「산업표준화법」 제2장 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협의)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847호, 2016. 1. 27., 일부개정]</li> </ul>
	(제4항) 각 회원국은 중앙정부기관의 새로운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모든 제정안 및 기존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최종 개정본을 공표한다(sh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표준기본법」 제4장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47호, 2016. 1. 6., 타법개정]</li> <li>• 「산업표준화법」 제2장 제5조(국가표준심의회)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847호, 2016. 1. 27., 일부개정]</li> <li>•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 [시행 2015. 7. 29.] [대통령령 제26440호, 2015. 7. 24., 일부개정]</li> <li>• 한·페루(제7.7조 제1항), 한·미(제9.6조 제3항), 한·터키(제5.10조 제2항), 한·캐(제6.6조 제1항), 한·콜(제6.7조 제2항), 한·뉴(제6.9조 제1항)</li> </ul>



표 3-6. 계속

	TPP TBT 협정 (제8.7조)	우리나라 관련 국내 법령 및 고시
	(제6항) 제4항에 대한 것을 가급적이면 전자적 수단으로 단일 공식저널(관보) 또는 웹사이트에 공표한다(sh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표준기본법」 제4장 제20조 제3항(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47호, 2016. 1. 6., 타법개정]</li> <li>•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 [시행 2015. 7. 29.] [대통령령 제26440호, 2015. 7. 24., 일부개정]</li> </ul>
	(제10항), (제11항) 각 회원국은 무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국제표준, 지침 혹은 권고사항 관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새로운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정안을 WTO 회원국에 통보해야 한다(sh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표준기본법」 제4장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및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47호, 2016. 1. 6., 타법개정]</li> </ul>
	(제15항) 제14항을 통해 전달받은 의견의 고려, 준비 및 응답을 위해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공표와 채택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두도록 장려된다(is encouraged 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등 공포에 관한법률」 제13조의 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시행 2010. 3. 12.] [법률 제10059호, 2010. 3. 12., 일부개정]</li> <li>•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하위법령의 제때 마련)</li> <li>•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 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시행 2016. 4. 26.]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 4. 26., 타법개정]</li> </ul>
	(제19항) 각 회원국은 현재 준비 중인 표준과 채택된 표준을 포함한 중앙정부 표준화기관의 업무 계획에 대해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sh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표준기본법」 제4장 제20조 제3항(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47호, 2016. 1. 6., 타법개정]</li> <li>•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 3(예고내용 등) [시행 2016. 4. 26.]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 4. 26., 타법개정]</li> </ul>

자료: TPP TBT 협정과 우리나라의 기체결된 TBT 협정, 국내 법률 및 제도를 참고하여 저자 재정리.

### 3)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준수 기간

TPP 협정 제8.8조에는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공표와 발효 사이의 유예기간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 TBT 협정을 살펴

보면, 이는 투명성 조항을 통해 ‘합리적 기간(reasonable period)’<sup>111)</sup>으로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sup>112)</sup> 그러나 TPP 협정에서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회원국 간 혼선이 발생함을 방지하고자 하나의 조(article)에 유예기간 관련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해당 조항에 상응하는 국내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표 3-7 참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제13조의 2)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2조 제1항)에는 “특별한 상가 없으면 공포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13)</sup>

TPP 협정 제8.8조에 상응하는 우리나라 국내 법령이 이미 존재하여 시행되고 있는바, 해당 조항의 수용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7. TPP 협정 ‘유예기간’ 조항의 국내법과의 조화

	TPP TBT 협정 (제8.8조)	우리나라 국내 법령 및 고시
유예기간	(제1항) “합리적 기간”이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 데 비효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6개월을 의미한다. 각 회원국은 최종 공표된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의 공표와 발효 사이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시행 2010. 3. 12.] [법률 제10059호, 2010. 3. 12., 일부개정]</li> <li>•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하위법령의 제때 마련)</li> </ul>

자료: TPP TBT 협정과 우리나라의 기체결 TBT 협정, 국내 법률 및 제도를 참고하여 저자 재정리.

111)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표현에 대해 WTO 협정과 우리나라의 기체결된 TBT 협정에서는 ‘reasonable interval’, ‘sufficient time’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112) 단, 한·콜롬비아 FTA TBT 협정(제6.7조 제8항)에서만 유일하게 각주를 이용하여 해당 기간이 통상적으로 6개월을 의미함을 적시하고 있다.

113) 양준석(2016), p. 208.

### 3. 소결

TPP 협정의 초기 참여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동 협정 수용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거의 부재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오랜 협상을 거쳐 마침내 합의된 협정일 뿐 아니라 이미 타결이 되어 발효만을 앞두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TPP에 대한 참여가 확정될 경우 사전 제도 개선을 통해 동 협정 조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만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미수용 시에는 합리적인 귀책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TPP 협정에서의 TBT 조항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이미 미국과 기체결한 협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동 조항의 수용 자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FTA가 아직 체결되지 않은 현실점에서 TPP의 참여 및 협정 수용은 향후 RCEP과 한·중·일 FTA 협상에서의 우리 측 주도권 확보에 다소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렇듯 예측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Mega FTA 참여 순서를 고려할 필요도 있겠다. 즉, RCEP에서 협상 주도권을 우선 선점한 후 여타 Mega FTA에 참여할 경우 보다 진입 장벽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TPP 협정을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급적 수용하되, 우리 주요 산업(품목) 확보와 함께 참여국의 수용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측 타협안 제시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선호 조항을 토대로 TPP 협정 수용 가능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 향후 이행과정에서도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다룬 TPP 협정 조항 중 국내 법률 조항에 존재하지 않거나, 선호 조항을 위주로 수용 가능여부를 [표 3-8]과 같이 나타내보았다.

표 3-8. TPP 협정 조항 수용 가능여부 요약

조문		주요 내용	비고
제1조	정의	영사거래, 시장출시인허가, 상호인정협정, 상호인정약정, 시장사후관리, TBT 협정, 검증에 대한 용어 정의	○
제2조	목적	불필요한 무역장벽 제거, 투명성 강화, 더 나은 규제협력 및 모범규제관행(GRP) 증진	○
제3조	적용 범위	중앙정부(및 직속기관)의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이하 CAP)의 준비, 채택 및 적용	○
		지방정부의 TBT 규정 준수 보장을 위해 이용 가능한 합리적 조치 적용	○
		당사국의 기술규정 또는 표준 채택·유지에 대해 방해 금지	○
제4조	TBT 협정문 내 특정 조항과의 통합	WTO TBT 협정상 다음 조항은 유지하거나 또는 일부 변형을 통해 TPP TBT 협정의 일부로 채택: - 제2.1, 2.2, 2.4, 2.5, 2.9, 2.10, 2.11, 2.12조 - 제5.1, 5.2, 5.3, 5.4, 5.6, 5.7, 5.8, 5.9조 - 부속서 3-D, 3-E, 3-F항	○
		분쟁해결의 미적용	○
제5조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 존재 여부 판단을 위해 WTO TBT 위원회의 결정 적용	○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각기 상이한 기술규정 및 CAP에 대한 회원국 간 공동협력	○
제6조	적합성 평가(CAP)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내국민대우(인정·승인·면허 부여에 있어 타 당사국 영역 내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에 동일하거나 동등한 절차 적용)	△ 수용 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전 검증 필요
		시험결과, 인증서 또는 검사를 요구할 경우,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의 당사국 영역 내 소재 요구 금지 △ 당사국 영역 외 소재한 평가기관의 사무실 운영 요건사항 부과 금지 △ 타 당사국 영역 내 평가기관이 당사국에 제품 시험·승인·검사 수행에 필요한 절차, 기준 및 조건 준수 등의 결정을 위한 신청 허용	△ 수용 전 국내 법규 및 제도와의 일치여부 확인 필요
		특정 제품의 CAP 단독 수행 방해 금지	△ 특정 제품 범위 및 사유 명확화 필요
		정보요구의 제한, 합법적인 상업적 이익 보호 및 검토절차의 타당성에 관한 적합성 평가 수행 시 타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설명 의무	○

표 3-8. 계속

조문	주요 내용	비고
	적합성 평가기관간 인증·승인·면허부여 등을 위해 상호 인정협정(MRA)을 활용 하는 것 방해 금지	△ 수용 전 국내 법규 및 제도와의 일치여부 확인 필요
	적합성 평가기관들이 수행한 CAP의 결과 검증 방해 금지	○
	타 당사국 소재 인정기관 수용을 다음 사유로 거절 금지 (△ 1개 이상 인정기관이 있는 당사국 내에서 운영 △ 비정부가관 △ 인정기관 인정 절차를 운영하지 않는 당사국 내 거소 △ 당사국 내 사무실 미운영 △ 영리기관 등)	△ 수용 전 국내 법규 및 제도와의 일치여부 확인 필요
	적합성 평가기관 인증·승인·면허 등 또는 MRA 활용 거절 시 사유 설명	○
	타 당사국 영역 내에서 수행된 CAP의 결과 수용 거절 시 사유 설명	○
	타 당사국의 MRA 협정 체결 협상 요청 거절 시 사유 설명	○
	적합성 평가와 관련 영사거래(consular transaction) 요구 금지	○
제7조	TBT 관련 조치 개발 과정에 타 당사국 이해당사자의 참여 비차별적 허용	○
	TBT 관련 조치 개발에 전자적 도구, 공공지원활동(public outreach) 및 협의회(consultations)를 통해 추가적인 투명성 제공방안 모색	○ 7차 3년 주기 회의에서의 우리나라측 의견 재제안
	중양정부기관(및 지방정부)으로부터 통보되는 제안 및 최종본을 단일 관보(official journal) 또는 단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표	○
	무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CAP에 대해 WTO 및 TPP 회원국에 동시 통보 의무	○
	TBT 관련 조치에 대해 타 당사국이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60일 의견 제시기간 부여(의견제시기간 연장에 대한 합리적 요구수용 고려)	○
	의견제시기간 종료 시점과 공표된 기술규정, CAP의 채택 시점까지 충분한 시간 제공	○
	무역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규정 또는 CAP의 최종안을 공표일 이전에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해당 기술규정/CAP의 목적 및 달성방법, 해당 기술규정/CAP에 대한 대체적인 접근법, 타 당사국의 의견에 대해 중대한 응답 공개, 중대한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 제공)	○
제8조	기술규정 및 CAP의 준수기간	○
	기술규정 및 CAP의 최종본 공표시점과 효력 발생시점 사이 '합리적 기간(6개월 이상)'을 제공하도록 노력	○

표 3-8. 계속

조문	주요 내용	비고	
제9조	협력 및 무역원활화	CAP의 결과 수용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 존재 인정 (△ 타 당사국 내 기관에서 수행된 CAP 결과 상호인정 △ 인정기관 또는 인증기관 간의 지역적·국제적 MRA의 존재 인정 △ 적합성 평가기관의 자격평가를 위해 국제적 인정시스템 사용 △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또는 타 당사국이 지정한 기관 인정 △ 타 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CAP 결과 인정 △ 공급자 적합성선언[SDoC] 수용)	○
		규제협력 지지를 위한 메커니즘 존재 인정(△ 규제 대화체(regulatory dialogue) 및 공동협력 △ 국가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과의 연대(부적절·비효율적인 경우 제외) △ 기술규정 및 CAP의 기초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활용 촉진 △ 타 당사국의 기술규정 동등성 수용 권장)	○
		타 당사국의 기술규정 동등성 수용 거절 시 이유 설명	○
		표준, 적합성 평가, 인정, 계량 담당 기관(공공/민간) 간 공동협력 장려	○
제10조	정보교환 및 기술적 논의	타국이 요청하는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 내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	△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구체적 기간 필요
		무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적합성 평가절차와 기술규정에 대해 타 당사국에 기술적 논의 요청 가능	○
		기술적 논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또는 더 빠른 시일 내) 제기된 문제 논의	△ 연장 가능에 대한 예외성 고려
		기술적 논의에 불참할 경우 논의내용 및 교환한 정보 기밀 유지	○
제11조	TBT 위원회	각 당사국 대표로 구성된 TBT 위원회 설치	○
		TBT 위원회의 기능(협정 이행 및 운영 점검, TBT 관련 정보교환 및 기술적 논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검토·수정 포함 양자간·다자간 협력 권장, 당사국 영역 내 정부·비정부 기구 간 협력 및 비정부 기구간 양자간·다자간 협력, 기술적 역량 수요확인 촉진, 비정부·지역·다자 기구 내 정보 교환, TPP 위원회 보고, 동 협정 이행에 관련된 조치 등)	○
		TPP 협정 발효 후 1년 내 위원회 개최(이메일, 전화/화상회의, 국제포럼 등의 수단 이용)	○
		위원회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로 진행	○

표 3-8. 계속

조문	주요 내용	비고
제12조	각 당사국 내 접촉점 정보 타 당사국에 제공(변경사항 즉시통보)	○
	접촉점(contact point)의 역할은 △ 동 협정의 논의, 요청, 시기적절한 정보교환의 촉진, 타 당사국 접촉점과 연락 △ 영토 내 관련 정부기관의 참여 조율 및 연락 △ 영토 내 이해당사자와의 조율 및 협의 △ 위원회에 의한 추가적 사항	○
제13조	포장식품 및 식품첨가물,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 제8.3조에 명시된 적용 범위 준수	△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 추가 제안
	TPP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 이후는 최소 5년에 한 번 다음 사항 준수 의무(△ 부속서에 포함된 분야 내 조치의 강화, 개선, 권고를 위해 부속서 이행 검토)	○

주: 1) ○ 는 수용가능한 조항.

△ 는 수용 가능하나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는 조항.

자료: 유세별(2016)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TPP TBT 협정 중 우리나라가 직면하게 될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으나, ① 시험인증산업 ② 부속서에 포함된(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 일부 산업 경쟁력 제고 가능성 ③ 국내거소요건 폐지 (또는 요구조건 수준 개정) 등에 대한 의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그동안 기체결한 양자간 또는 지역간 FTA 체결국을 중심으로 해당국의 제도 개선 현황 모니터링을 거쳐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적합성 평가기관의 내국민대우 관련 조항은 우리나라 최대 관심사항으로 국내 법규 제·개정을 통해 TPP 가입 전 ‘국내거소요건’ 지정해제가 요구된다.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정하는 인정기관의 경우 국내 법률조항을 검토하여 국내 거주 기관만이 자격요건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법령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외국기관 지정허용에 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국내거소요건’의 지정 해제 시에는 샘플통관비용 절감, 검사기간 및 비용 감소 등 직간접적 이익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재조치도 함께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 제4장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지난 10여 년 동안 기체결한 주요국과의 FTA 무역 기술장벽(TBT) 조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첫 Mega FTA 협정인 TPP의 TBT 협정 조항을 살펴보고, WTO TBT 협정 및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TBT 협정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TPP 협정 수준을 파악하였다. 본 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TPP를 포함한 Mega FTA에서 우리나라의 입장과 향후 TBT 협상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해온 FTA 협정 TBT 조항은 대부분 WTO TBT 협정(이하 'WTO 협정')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핵심 기술규제조치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는 상대국의 기술적 역량 또는 교역규모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 협정 TBT 조항은 공통적으로 WTO 협정에 기초하여 기술규제조치를 준비, 채택 및 적용하되, 보다 높은 수준으로 체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기체결된 FTA 협정 TBT 조항은 대체로 WTO 협정의 주요 원칙인 ① 내국민대우 ② 동등성 수용 ③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벽 제거 ④ 국제표준 사용 ⑤ 투명성과 대체로 부합하며 이를 준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 미국, 캐나다, 중국, 베트남과 체결한 TBT 협정을 증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상기 열거한 WTO 협정의 주요 원칙을 위주로 의무수준을 파악한 결과, 미국 > EU > 캐나다 > 베트남 > 중국 순으로 높게 체결되어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최근 타결된 TPP 협정 TBT 조항(이하 'TPP 협정')을 살펴보았다.

TPP 협정에는 미국과 일본이 그동안 각기 기체결한 FTA 협정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국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TPP 협정은 대부분 한·미 FTA 협정 TBT 조항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동 협정 수용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우리나라가 체결한 TBT 협정이나 국내 법규에 존재하지 않는 일부 조항이 존재하는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TPP 협정에 신규 도입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8.6조 '적합성 평가' 중 적합성 평가기관의 형태제한 금지 조항과 인정기관의 국내거소요건 금지 조항이 대표적이다. 제8.7조 '투명성' 중 타 회원국의 서면의견개진기간(60일) 보장, 타 회원국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회신 의무, 현재 준비 중 또는 채택된 표준을 포함한 중앙정부 표준화기관의 업무계획 공표 의무 조항도 여타 기체결된 FTA 협정에서는 다른 적 없는 신규 조항이다. 하나의 독립된 조항으로 제8.8조에 규정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의 시행 유예기간'의 경우 구체적인 기간과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FTA 협정과 차별성을 가지나, 우리나라 국내 법률 조항에 이미 규정되어 이행되어온바 차후 해당 조항의 수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전 장에서 다루지는 않았으나, 새롭게 포함된 제8.9조 '협력 및 무역원활화' 및 제8.10조 '정보교환 및 기술적 논의' 조항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국내 법률과의 합치여부, 해당 규정의 범위와 법률적 구속력여부, 국내외 적용 사례 등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대륙과 대륙을 잇는 복수국 간 거대 FTA로서 첫 공식출범한 TPP 협정은 참여국 간 경제적, 정치적 및 기술적 역량차이가 확연함에도 불구하고 출발부터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와 시장개방을 목표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 정책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TPP 협정 TBT 조항에는 일부 새롭게 채택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동 협정이 발효되어 시행될 경우 그동안 논의되어온 여타 Mega FTA의 협정 내용

과 이행 의무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관건이다. 특히 어떤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협정 수준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TPP의 출범은 우리나라의 기술적 제도와 정책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기술규제정책과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기참여하고 있는 Mega FTA 협상에도 새로운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TPP 참여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참여시기와 함께 협정의 수용 가능성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후속 절에서는 국내 기술규제 정책 및 제도 현황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대내적, 대외적 정책방향과 향후 Mega FTA에서의 협상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 2. 정책적 시사점

### 가. 대내적 정책방향

#### 1) 국내 기술규제정책 검토 및 활성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기술규제조치 중 하나인 '표준' 설정에 있어 EU의 강한 영향을 받는 국제표준채정기관인 ISO, IEC, ITU를 인정하고 있다.<sup>114)</sup>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한·EU FTA TBT 협정 내 품목별 부속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EU와 체결한 FTA TBT 협정에서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이상 4개 품목군에 대해 전자기파 안전적합성(EMC)과 안전기준의 국제표준채정기관(ISO, IEC, ITU)의 인정에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적합성 평가'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미국 측 선호 조항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

---

114) 국가기술표준원(2011), p. 3.

다. 다시 말해 한·미 FTA 체결 이전까지는 적합성 평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에만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TBT 협상전략과는 달리 '적합성 평가기관 인정·승인·면허 부여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선호하는 미국 측 의견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법률상 제도를 재편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기술규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상대국, 특히 거대경제권 또는 선진국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고 있다.

오랫동안 기술규제정책 수립에 있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온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새로운 규제정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국가표준기본법」(제7조) 아래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시행해왔다. 그리고 2016년 올해 제4차 기본계획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표준기본계획' 시행을 기점으로 규제정책 수립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동 계획의 초기 목적 완전 달성 또는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는 한계가 있으나,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규제정책 수립에 큰 변화를 주기 시작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동 정책 목표의 성과 달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민관 차원의 협력과 더불어 내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현행 정책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국가표준기본계획 전담반(T/F팀)을 임의로 구성·투입하여 ① 분기별 또는 특정 주기별로 정책현황과 기본계획의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② 비정부기관, 협회 및 민간 기업들의 면담 또는 설문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③ 실효성을 검증한 후 ④ 대표 규제조치를 식별하여 향후 Mega FTA 협상 시에 우리 측 입장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Mega FTA 주도국가로서의 입지 확보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를 아우르는 아시아 전역에서의 구심점 역할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타국 규제개혁 현황 모니터링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1998년에 「행정규제기본법」 아래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각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 점검 및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 2001년에 OECD는 기업의 경쟁,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철폐함으로써 각국 정부의 규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규제개혁을 권고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OECD<sup>115)</sup>의 조언에 따라 ‘국가표준기본계획’을 통해 시장개방 차원에서 △ 국제규제 제도와의 조화 및 등가 △ 적합성 평가의 상호인정협정 △ 투명성 증진에 대한 규제개혁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제표준의 사용을 늘려왔으며, 보다 투명한 규제절차의 시행을 시작하였다. 또한 일부 주요품목(통신장비, 전기전자기기 등)에 대해 외국 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양자간 또는 지역간 FTA TBT 체결을 통해 △ 타 국가의 기술규정 동등성 인정 △ 인증 체제 및 상호인정협정 협상 추진 △ 기술규제조치 도입 시 투명성 보장을 수용하는 등 국내 규제 및 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안,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간소화, 투명성 확보 및 기술적 논의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Mega FTA 협상을 위한 규제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할 것을 고려하여 해외 주요국가의 규제개혁 사례와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안한다. 그중 TPP 참여국인 미국, 일본, 호주 등의 규제개혁 및 제도 개선 현황과 과정의 모니터링이 우리나라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는 아베 내각 주도 아래 [표 4-1]과 같이 ① 전국단위 규제개혁 ② 지역단위 규제개혁 ③ 기업단위 규제개혁이 시행될 예정이다.<sup>116)</sup>

115) OECD(2000).

116)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2015), p. 5.

표 4-1.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 프레임워크

	전국단위 규제개혁	지역단위 규제개혁	기업단위 규제개혁
추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년 1월 규제개혁회의 (총리직속 심의·자문 기구) 설치</li> <li>• '13년 3월 규제개혁 핫라인 설치</li> <li>• '13년 6월 규제개혁실시 계획 각의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년 12월 국가전략 특구법 제정</li> <li>• '14년 3월 6개 특구지역 선정(1차)</li> <li>• '15년 3월 3개 특구지역 선정(2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년 12월 「산업경쟁력 강화법」 제정</li> <li>• '15년 4월 기준 기업실증 특례제도 7건 승인</li> </ul>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 농업, 고용·노동 3개 분야의 전국단위 개혁 중점 추진</li> <li>•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나, 이해갈등 문제로 인해 시행 속도가 느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지역에 필요한 규제 개혁을 선제적으로 실시한 다음 전국으로 확대</li> <li>• 정부가 규제개혁 패키지를 준비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개정이 아닌 시행령·시행규칙에 특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추진</li> <li>• 기업의 신사업·신기술 도입에 있어서의 제도적 장벽 해소를 정부가 적극 지원</li> </ul>

자료: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2015), 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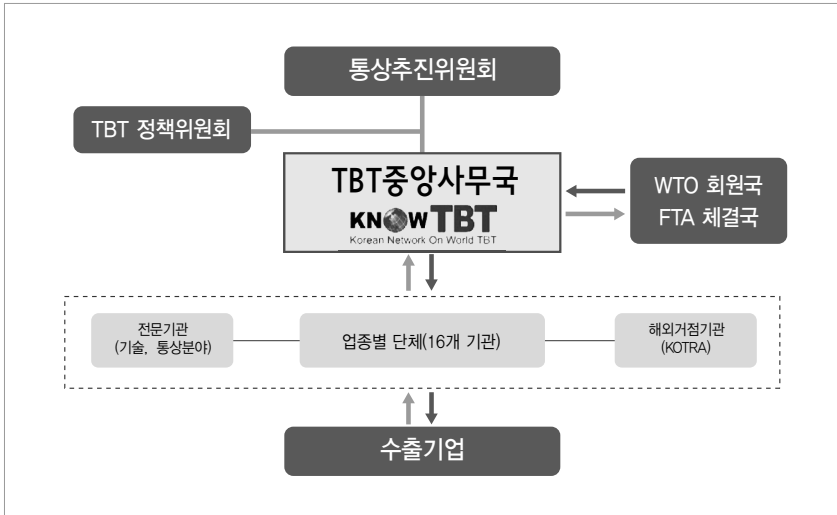
TPP, RCEP, 한·중·일 FTA 협정에 공통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잠재적 양자 FTA 체결 대상국인 일본 측 규제개혁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은 향후 협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과 협상전략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3) 중소기업/영세기업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보다는 주로 중소기업 또는 영세기업이 기술장벽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T/F 전담팀을 구성하여 주요 수출국가의 기술규제정책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준비를 실시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현재 인력 및 자금 부족, 정보 부족, 경험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소기업의 경우 '무역기술장벽'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 완화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애로점

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국가기술표준원에 서는 2014년에 TBT 컨소시엄을 발족하여 업계 간 의견 및 정보 교류와 사례 수집 등 대화체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그림 4-1 참고).

그림 4-1.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 체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4. 3. 27).

그러나 TBT 대응전략 분과위원회 목록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S사, L사, A사와 같은 대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홍보 부족의 문제도 있으나,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도 배재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기업 장려 및 불필요한 기술장벽 제거를 목적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의 기초 성격에 부합하도록 가능한 많은 중소/영세기업체의 의견 수집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위주의 컨소시엄 운영체제를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으로 확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기술규제조치라는 용어나 범위조차 생소할 중소/영세기업에게 상향

식(bottom-up) 자발적 의견개진이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컨소시엄 차원에서의 하향식(top-down) 의견 수집(설문요청 등)의 실시를 제안한다. 원활한 의견 수집을 위해 하위 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문요청 시 소정의 설문참여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러한 하향식 '실무자 의견조사(안)'의 실시는 자칫 실무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점에 대한 의견이 배제된 형식적 또는 일회성 행사가 되어버릴 수 있는 세미나 또는 포럼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활용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업계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더해 의견조사 시 수집한 데이터를 DB화 하면 향후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 정책 및 제도 개선 시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적 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 해당 설문참여를 통해 기술규제조치에 대한 자기교육과 함께 관심도 제고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해당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우리나라 정책 및 제도 수립과 향후 참여하게 될 협상에 반영되는 성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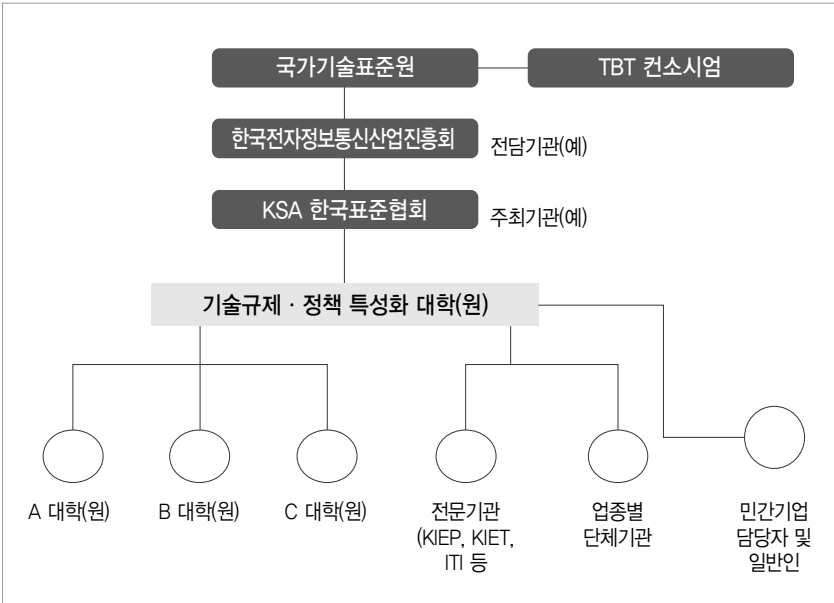
#### 4) TBT 관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도입 및 실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술규제조치나 관련 정책은 대다수 업계 이해관계자들에게 유명무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중소/영세기업의 인력, 시간 또는 자금 부족은 규제조치에 대한 이해와 정보수집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FTA 협정 또는 WTO 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도출한 기술적 정책의 기업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점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는 TBT에 대한 지식 및 정보가 부족한 업계 측과 실무적 애로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정부 간 소통부재가 낳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TBT의 중요성에 비해 기업 관심도가 매우 낮다. 단순히 홍보 부족이라는 판단을 내리기에 앞

서 동 분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조언을 제공할 만한 전문인력이 많지 않다는 점도 기업 활용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각 분야별 TBT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원) 또는 관련 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특수 프로그램(학과) 개설을 고려해볼 것을 제안한다. 실제로 이미 환경규제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학과가 몇몇 대학원에 개설되어 진행되고 있다. 동 사업은 산업통상부 감독 아래 한국 산업기술진흥원 전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호서대학교가 컨소시엄 협약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TBT 분야의 전반적인 개념 정립과 더불어 실무형 프로그램을 [그림 4-2]와 같이 기획해볼 만하다. [그림 4-2]에서는 TBT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예로 들었다.

그림 4-2. TBT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체계(안)



자료: 환경규제 및 안전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체계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우리나라 국제표준화기구의 정부대표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과 TBT 컨소시엄의 공동 감독 아래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예)와 KSA 한국표준협회(예)가 각각 전담, 주최기관이 되어 전문기관, 업종별 단체기관과 더불어 대학(원) 및 민간기업 담당자와 일반인으로 구성된 「기술규제·정책 특성화 대학(원)안」 설립을 제안한다. 이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도입의 한 가지 예시가 될 수 있겠다.

우리 정부는 상기 예시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의 전문가 양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의 TBT 활용도를 높이고, 실무 차원에서 관련 업계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5) WTO TBT 위원회 측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

WTO TBT 위원회는 매년 3차례(3, 6, 11월) 스위스 제네바 소재 WTO 사무국에서 개최된다. TBT 위원회에서는 각국의 WTO TBT 협정 이행 현황과 함께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정된 기술규제조치에 대한 통보문(notification) 제출 및 특정무역현안(이하 STC: Specific Trade Concern) 제기가 이루어진다. 이 밖에도 WTO 회원국은 매 3년 주기로 WTO TBT 협정 이행에 관한 검토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제7차 3년 주기 검토회의는 2015년 6월에 개최된 바 있다.

WTO 사무국 보고서(2016)에 따르면 2015년 WTO 회원국이 제출한 통보문 건수는 총 1,993건이며, 그중 우리나라가 제출한 통보문은 총 80건이다.<sup>117)</sup> 이는 미국, 에콰도르, 브라질, 중국, 우간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일곱 번째로 많은 통보문 건수로, 우리나라의 활발한 기술규제 현황을 나타낸다. 또한 우리나라는 3년 주기 검토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제7차 3년 주기 검토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투명성 증진을 위해 △ WTO 사무국 중심

---

117) WTO(2016), p. 5.

으로 각국 질의처의 질의응답 현황 조사 △ TBT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에 질의 응답 준수에 대한 중요성 강조 △ WTO 사무국을 중심으로 질의응답 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sup>118)</sup> 그 결과 우리나라가 제안한 회원국의 질의처 운영 강화 및 온라인 수단 활용방안이 WTO 사무국에서 발행한 최종안 내 ‘투명성’ 부문 권고사항에 반영되었다.<sup>11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측 의장보고서(2015)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제안한 ‘투명성’ 부문 외에 타 회원국이 제안한 안전에 대한 우리 측의 지지 또는 반대 의사 표명은 찾아볼 수 없었다.<sup>120)</sup> 즉, 우리나라는 충분한 사전준비를 통한 의견서 제시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타 회원국의 제안에 대한 우리 측 현장 대응 능력과 적극적인 의견개진에는 다소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우리 측 제안서뿐만 아니라 타 회원국의 의견에 대한 적극 참여로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타 회원국의 인식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WTO TBT 위원회 등 국제회의에의 참석 전 우리나라는 타 회원국이 제시한 안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측 의견을 적극 피력하기를 권장한다. 이를테면 인도의 경우 기술적 역량이 다소 부족하여 TBT 조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미흡하나,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타 회원국에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각인시키는 데는 절대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향후 WTO 사무국 측 회의뿐 아니라 Mega FTA를 비롯한 여타 협상에서의 우리나라 입장 전달 및 입지 확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현장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관료주의적 문서화 체계의 협상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토론형 협상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측 의견제시 전담팀과 타 회원국 측 의견에 대한 발언 전담팀으로 구성된 국제회의

---

118) 장용준 외(2015).

119) WTO(2015b), p. 14, 5.12. a.i.

120) WTO(2015a).

준비 전담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현장 투입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 나. 대외적 정책방향

### 1) 향후 Mega FTA 협상 전개방향

우리나라가 참여 중인 Mega FTA 협정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얼마 전 TPP 협정의 타결로 RCEP과 한·중·일 FTA 협상의 가속화가 기대되었으나, 참여국 간 입장 및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아직까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PP TBT 협정이 이미 기존에 체결된 양자간 또는 지역간 FTA 협정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RCEP에서의 TBT 협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RCEP 협정은 통합협정문 논의 단계에서 대부분 TPP 협정과 WTO 협정에 기초하여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RCEP 참여국과 양자간 FTA를 체결하고 있어 일정 수준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RCEP 참여국 중 선진경제권 중 하나인 일본이 나머지 참여국과 어떻게 의견 조화를 이루어 나갈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복수 국가간 FTA 협정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협정이 Mega FTA의 신통상정책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Mega FTA로서의 협정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존 WTO 협정이나 양자간 FTA TBT 협정 조항과 유사한 수준을 고수하기보다는, ① 보다 진전되고 수준 높은 신규범의 설립 ② 새로운 협정의 형식 또는 ③ 협정 조항의 이행 방식 재구성 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WTO 협정 의무의 재확인을 기초로 하는 여타 구 협정 구성 및 조항에서 벗어나 새로운 규범으로의 접근을 위해 RCEP 참여국 사이에서의 리

더십 발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Mega’의 정의가 참여국의 경제적, 지역적, 지리적 규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실제 동 협정의 범위와 내용, 이행 등의 범지역적 통합의 의미로서 수준 높은 협정으로의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Mega FTA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여타 참여국과의 협상 시에 양국간 선호 조항 조율에 머물러 있던 기존의 협상 방식에서 탈피하여 Mega 시대에 걸맞은 신통상정책 수립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Mega FTA 참여 또는 협상 시에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 가) 시장개방 확대를 위한 규제조치 완화정책 도입

기술규제조치는 일부 품목에 있어 무역제한적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표준의 조화 및 상호인정을 통해 양립성 및 네트워크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제무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sup>121)</sup> WTO 협정에서도 기술규제조치에 대해 “수출품의 품질보증,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 환경보호, 또는 기만적인 관행의 방지를 위하여 판단하는 수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함을 명시하고 있다.<sup>12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국제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기술규제조치가 간혹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한 조치로 활용되어 타 회원국에 역차별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조치이나 다수 회원국의 기술규제정책에 의례히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규정에 대해 차별적인 기준 적용, 과도한 기술요건, 투명성 결여, 적합성 평가 중복 검사, 과다 시간 및 비용 소요, 라벨링 부차요건 등이 그 예이다.

WTO 회원국은 이러한 기술정책 및 역량 차이에서 기인한 무역장벽을 완화

---

121) Nam(2015), p. 16.

122) WTO TBT 협정문 서론 참고.

하고자 양자간 FTA를 통해 한층 진전된 조항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기체결 TBT 협정을 WTO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술규제조치를 자국 산업 보호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국내외 비차별적 대우는 사실상 기대하기 쉽지 않다. 여기에는 기술규제 완화로 인해 자국 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거나 간혹 국민의 안전 또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 일본과 같은 거대 또는 선진 경제권을 중심으로 통상정책의 기초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양자간 상호인정협정 또는 국제표준의 조화 등 소수 국가간 ‘합의(agreement)’체제 아래 이행되는 협정방향보다는 국제기구 등 다자간 ‘협력(cooperation)’체제에 기반을 둔 협정에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통상 3.0에 기초한 新통상로드맵의 기초에 발맞추어 광범위한 협력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을 인정하고 △ MLA/MRA에의 지속적인 참여 △ 국내외 차별적 법률 조항 개정 또는 삭제 △ 공급자적합성선언(SDoC) 품목 확대 등 기술규제 완화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과 환경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한 우려는 막대한 벌금 부과, 시판 및 판매 자격 일시 정지, 해당 품목의 입국 금지 등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래 TBT 협정의 취지에 맞게 기술규제조치를 완화 또는 제거하는 등 일부 선진 경제권의 협정 방식 수용을 권장한다.

## 나) 일부 품목에 대한 단일협정 추진

TPP 협정과 마찬가지로 RCEP 협정 역시 단일협정문의 형태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 기술적 역량이 다양한 국가가 동시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우위산업(품목)이 각자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TPP 협정은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는 산업(품목)의 경우 적용범위가 모호하고 해당 규제조치의 일관성이 불분명하여 원활한 무역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DA 진행 경과에 대한 분야별 의장보고서<sup>123)</sup>에 수록된 HS코드 6단위로 표기된 400여 개 환경상품 목록을 참고하여<sup>124)</sup> 주요 품목에 대한 TBT 조치 단일협정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즉, 최소 HS코드 6단위 이상으로 표기된 주요 품목을 각 국별로 제출하여 최대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하도록 한다. 각 국가가 제출한 품목을 수집하여 합의된 일부 주요 품목 목록에 대해서는 모든 참여국이 동등한 기술규제조치를 적용할 수 있겠다. 이 목록은 각국별 민감품목 또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유해 소지가 다분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관세철폐 품목’과 유사한 개념으로 참여국 간 공통적으로 철폐 가능한 검사·시험기준과 요건에 합의하여 이른바 ‘비관세 철폐 품목목록’을 이행하는 방법도 있겠다. 만일 일부 개발도상국의 기술적 역량 부족으로 인해 기술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협정 내에서 합의된 기술적 협의채널을 활용하도록 한다.

## 다) 제도 개선을 통한 신규범 도입, 채택 및 적용

우리나라는 TPP 협정 참여뿐만 아니라 RCEP과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해서도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각 참여국에서 시행하는 기술규제정책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조율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향후 Mega FTA에 대한 참여 또는 협상 전 제도 개선 시행이 요구된다.

그중 RCEP의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참여국과 FTA TBT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본질상 일본과의 협상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도, ASEAN과의 TBT 관련 조항은 FTA 협정 원문에 5~6개의 조항

---

123) WTO(2011. 4. 21).

124) 김정근, 금혜윤(2011), p. 80.

에 걸쳐 간소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양 국가 또는 지역과의 협정도 사실상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ASEAN은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개정을 위한 제3의정서'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는 해당 협정 개정안이 향후 RCEP에서의 협상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RCEP 협정에 한·ASEAN 협정 개정 결과가 일괄 반영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향후 ASEAN과의 재협상에서의 우리 측 대응여하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각 참여국의 선호 조항(표 4-2 참고)을 바탕으로 우리 측 기존 협상전략에 기초하여 필요시 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범의 도입, 채택 및 적용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ASEAN은 RCEP 참여국 중 유일하게 모든 참여국과 FTA를 체결한 지역이다. 이는 ASEAN이 RCEP 협상에서 핵심 축으로서의 역할 확보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실제로도 ASEAN 주도 아래 진행되고 있는 RCEP의 경우, 한·ASEAN 협정 개정안에 우리 측 주요 관심 조항을 반영하여 이를 RCEP 협상에 일부 투영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는 RCEP 타결 전 한·ASEAN TBT 협정 개정에 속력을 낼 필요가 있으며, ASEAN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 2) Mega FTA TBT 협상 전략

### 가) TPP

전 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TPP 협정 초기 참여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수용여부에 대한 선택폭이 넓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해당 협정에의 참여 시 기존 조항과 우리나라 국내 법규와의 조화여부를 확인하여 가급적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TPP TBT 협정에 대한 협상전략은 제3장 후반부에 기술한 [표 3-8]로 같음하고자 한다.

## 나) RCEP

RCEP에서의 TBT 관련 논의는 제4차 협상에서 규범분야 4개 작업반(경쟁, 지적권, 경제기술협력, 법률제도)과 4개의 소작업반(원산지, 통관, SPS, TBT)을 구성하면서 비로소 시작되었다. TBT 소작업반인 'STRACAP<sup>125)</sup> 분과'는 협정문에 포함될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제8차 협상에서 통합협정문의 기반을 마침내 개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2014)는 RCEP은 기술규정의 동등성, 적합성 평가절차 원할화, 투명성 제고 외에도 적합성 평가기관, 기술규정 공표와 발효 간 유예기간(6개월)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sup>126)</sup>

이에 더해 WTO 회원국이 각각 체결한 양자간 또는 지역간 FTA TBT 협정 주요조항인 적합성 평가, 투명성, 분쟁해결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중에는 일본 측이 미국과 함께 TPP 협정에 적극 반영한 적합성 평가기관 및 평가절차에 대한 내국민대우, 우리나라와 중국의 주요 관심사항인 MRA 협상 수용과 광범위한 메커니즘에 대한 합의 등의 조항도 포함된다. 아울러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이 혼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RCEP은 TPP 협정과 유사하게 기술적 논의(Technical Discussion), 협력(Cooperation) 관련 조항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RCEP 협상이 대국민 비공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바 참여국 간 논의동향은 그동안 각 국가가 체결해온 TBT 협정 및 TPP 협정을 토대로 추측하는 수준에 그친다. 이에 따라 본 [표 4-2]에서는 RCEP 참여국이 그동안 각기 체결해온 TBT 협정을 바탕으로 선호 조항을 식별하여 향후 RCEP 논의동향을 조망해보았다(표 4-2 참고).

---

125) STRACAP은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의 약칭으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의미한다.

12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4. 12. 4).



표 4-2. RCEP 참여국별 TBT 협정 주요 관심 사항

	주요 관심 사항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 (비효율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표준 사용, 미사용 시 사유 설명)</li> <li>기술규정 (동등성 수용)</li> <li>적합성 평가절차 (평가결과 수용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 평가결과 수용, 평가기관의 내국민대우, 기관 간 상호인정, MRA 협상 가능성)</li> <li>투명성 (새로 제안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통보대상, 범위, 경로, 제·개정 과정에의 참여 비차별 허용, 상대국 의견개진기간 보장, 공표된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의 발효 시까지 유예기간 보장 등)</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 (비효율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표준 사용, 국제표준 관련 이슈에 대해 소통 및 협력 강화)</li> <li>기술규정 (동등성 수용)</li> <li>적합성 평가절차 (평가결과 수용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 평가결과 수용, 적합성 평가비용에 대한 비차별, 국제기구와의 협력 장려, 평가기관의 기술적 사안 논의 및 검증, 적합성 평가절차 필수 품목목록(영문으로 기입된 HS코드 6자리 이상) 제공 의무)</li> <li>투명성 (제안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전자적 통보 선호)</li> <li>기술적 협의</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 (WTO TBT 협정 의무의 재확인, 국제표준의 미사용 시 사유 설명)</li> <li>기술규정 (동등성 수용)</li> <li>적합성 평가절차 (평가결과 수용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 평가결과 수용, MRA 협상 가능성, 평가기관의 내국민대우)</li> <li>투명성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개발과정에 상대국의 참여 비차별 허용, 신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정안에 대한 통보 방식[범위 및 경로], 상대국의 의견개진기간[60일] 보장, 입국항 역류 사유 통보 등)</li> </ul>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 (WTO TBT 협정 의무의 재확인)</li> <li>기술규정 (동등성 수용)</li> <li>적합성 평가절차 (평가 결과의 수용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 평가 결과의 수용, 평가기관의 기술적 사안 논의 및 검증, 평가기관의 내국민대우, MRA 협상 참여)</li> <li>투명성 (제·개정 과정에의 참여 비차별 허용, 제안된 조치의 통보 범위 및 경로)</li> </ul>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 (WTO TBT 협정 의무의 재확인)</li> <li>기술규정 (동등성 수용)</li> <li>적합성 평가절차 (평가 결과의 수용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 평가 결과의 수용, 평가기관의 기술적 사안 논의 및 검증, 평가기관의 내국민대우, MRA 협상 참여)</li> <li>투명성 (제·개정 과정에의 참여 비차별 허용, 제안된 조치의 통보 범위 및 경로)</li> </ul>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 (비효율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표준 사용, 미사용 시 사유 설명, 표준 사용에 대한 정보 교환)</li> <li>기술규정 (동등성 수용)</li> <li>적합성 평가절차 (평가 결과의 수용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 평가 결과의 수용을 위한 기관 간 협력, 국제 인정기구 참여를 통한 협력, 평가기관의 내국민대우, MRA 협상 가능성, 평가절차의 비용과 시행 기간)</li> <li>투명성 (WTO TBT 협정 의무의 재확인)</li> </ul>

표 4-2. 계속

	주요 관심 조항
ASE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 (표준의 준비, 도입 및 적용 시 TBT 협정 부속서 3에 따라 표준화 기관 수용, 국제 표준 관련 이슈에 대해 소통 및 협력 강화)</li> <li>• 기술규정 (동등성 수용)</li> <li>• 적합성 평가절차 (평가절차 수용 및 비용 효율성 보장, 평가 결과의 수용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 시험, 검사, 인증, 인정, 계량 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절차 상호 협정 체결 시 정보 공유, 국제 인정기구 참여를 통한 협력, MRA 협상 가능성)</li> <li>• 투명성 (WTO TBT 협정 의무의 재확인, 상대방 요청 시 15일 내로 통보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원문 제공, 상대국 의견개선기간 보장)</li> <li>• 기술 협의 및 기술 협력</li> </ul>

자료: 각 RCEP 참여국이 기체결한 FTA TBT 협정을 토대로 저자 정리.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투명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적합성 평가 및 투명성 조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적합성 평가와 투명성의 경우 한·미 FTA 체결을 통해 TPP 협정 수준에 이미 접근하고 있다. 여타 국가간 기체결 TBT 협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3년 주기 검토회의에서도 투명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해왔다.

일본은 베트남, 싱가포르와 체결한 양자간 TBT 협정뿐만 아니라 ASEAN과의 협정에서도 TBT 조치에 대한 규정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WTO 협정 의무의 재확인을 강조할 뿐이었다. 그러나 스위스, 인도와 체결한 TBT 협정에는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에 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인도와 체결한 TBT 협정에는 특히 전기제품, 전기통신 단말장치 및 무선설비 등 특정 품목에 대한 MRA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이 가장 최근에 체결한 페루 및 호주와의 TBT 협정에서는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 수용에 관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의 존재 인정, 적합성 평가기관의 내국민대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에 대한 MRA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투명성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개발과정에 상대국의 참여 비차별 허용, 신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

가절차 제정안에 대한 통보 방식(범위 및 경로), 상대국의 의견개선기간(60일) 보장, 입국항 유치 사유 통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및 기술적 협의, 투명성 등에 대해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와의 TBT 협정에서는 기술규정 동등성 수용과 함께 적합성 평가절차가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중에는 적합성 평가기관의 내국민대우,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수용에 관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의 존재 인정, 적합성 평가절차 비용에 대한 비차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ILAC, BIPM,<sup>127)</sup> OIML<sup>128)</sup>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장려,<sup>129)</sup> 적합성 평가절차를 실시하는 평가기관의 기술적 검증,<sup>130)</sup> 그리고 적합성 평가절차가 반드시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 품목목록(영문으로 기입된 HS코드 6자리 이상) 제공 의무에 대해서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상대국 영역 내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수용에 앞서 해당 평가를 실시한 평가기관의 기술적 능력에 대한 검증을 조건화하였다. 투명성 조항의 경우 칠레, 코스타리카, 호주 및 페루<sup>131)</sup>와의 TBT 협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제안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전자적으로 통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은 해당 조치의 제·개정 과정에 대한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우리나라나 일본과는 다소 다른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국의 의견개선기간(60일)을 보장하는 조항은 우리나라나 일본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중국은 페루와의 TBT 협정 이전에는 투명성 조항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중·페루 간 TBT 협정 투명성 조항 또한

---

127) BIPM은 the International Bureau of Weights and Measures의 약칭으로 '국제도량형국'으로 불리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측정법을 사용하여 이를 국제단위로 정착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국제기구이다.

128) OIML은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의 약칭으로 '국제법정계량기구'로 불리며, 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측정과 측정 기구에 관한 행정규칙 및 기술규칙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1955년 창설된 국제기구이다.

129) 중·코스타리카 제74조 제3항 참고.

130) 중·호주 FTA TBT 협정 제6.7조 6항에는 'China's domestic legislation requires~'라는 문장을 통해 중국 내 자국 법령의 영향력을 내포한다.

131) 중·페루 TBT 협정 내 투명성 조항은 한·페루 간 투명성 조항과 대체로 유사하다.

한·페루 간 조항과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보아 RCEP 협정 시 동 조항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는 대부분의 FTA 체결국과 WTO 협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TBT 협정을 마련하였다. 적합성 평가절차 관련 조항은 평가 결과의 수용과, 수용을 위한 사전 기술적 검증, 적합성 평가기관의 내국민대우, MRA 협상 참여 등 우리나라가 이미 기체결한 TBT 협정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 중국과 유사하게 적합성 평가절차의 수용에 앞서 평가기관의 기술적 능력 사안에 대한 검증 관련 조항을 여러 협정문에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페루와의 TBT 협정을 통해 이미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RCEP 협상 시에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도 호주와 유사하게 WTO 협정에 기초하여 규정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동북아시아 3국과 모두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으며, 가급적 상대국의 선호 조항을 수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TBT 협정의 일관성은 없으나,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표준 관련 조항은 WTO 협정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달리, 중국과의 협정에서는 비효율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표준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규정에 관해서는 각 동북아시아 3국과의 협정에서 동등성 수용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다. 한편 적합성 평가절차 조항의 경우 세 국가의 선호 조항이 각기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적합성 평가절차 수용 촉진을 위해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수용 및 MRA 체결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본이 기체결한 TBT 협정에는 적합성 평가기관의 내국민대우 관련 조항이 추가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협정에서는 적합성 평가 결과의 수용에 앞서 해당 평가를 진행하는 기관의 기술적 능력 검증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강제성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투명성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TBT 협정에서는 제·개정 시 상대국의 참여를 비차별적으로 허용하는 내국민대우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반

면, 중국과의 TBT 협정에서는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최종본을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적합성 평가 기관 요건 및 비용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 따라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3국의 합의 결과에 따라 유동적인 협정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RCEP 협상 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인도가 기체결한 TBT 협정도 대체로 유사한 편이나, 일부는 WTO 협정에 기초하고 있다. 인도 역시 대체로 타 국가의 TBT 협정 체결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표준 사용에 대한 정보교환 장려, 적합성 평가 결과의 수용을 위한 기관 간 협력, 국제 인정기구 참여를 통한 협력과 평가절차의 비용 및 시행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단, 투명성은 WTO 협정의 재확인을 명시하고 있다.

ASEAN의 경우 동북아시아 3국과 모두 FTA TBT 협정을 발효했으며, 인도, 호주·뉴질랜드와도 협정을 체결하였다. 즉, ASEAN은 모든 RCEP 참여국과 FTA를 기체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ASEAN은 RCEP 협상 시에 모든 참여국 간에 협상 조율을 담당하는 구심점 역할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 인도와 기체결한 TBT 협정이 전적으로 동일하고, 우리나라 및 일본과의 협정은 WTO 협정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체결 수준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주·뉴질랜드와의 협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RCEP 협상방향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지는 관건으로 남아있다.

종합해보면, 우리나라는 RCEP TBT 협상과 동시에 각 개별 참여국과의 협상도 필요하다. 중국,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TBT 협정은 최근에 발효되었으며, 이는 해당 국가와의 의견 조율이 일차적으로 마무리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ASEAN, 인도의 협정에서는 TBT 관련 조치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 않아 단기간 내 해당 국가(지역)와의 협정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은 FTA 미체결 국가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의견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RCEP 참여국 중에서도 특히 일본, 인도, ASEAN과의 긴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ASEAN, 인도와는 한·ASEAN 및 한·인도 협정 개정을 통해 양자간 협력을 도모할 수 있겠다. 예컨대 ASEAN과 인도의 대표적 선호 조항인 적합성 평가 절차(국제 인정기구 참여를 통한 협력, 평가절차의 비용과 시행 기간 등), 협력 관련 조항은 우리나라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가급적 수용하고, 우리 측 선호 조항의 수용을 요구하는 양방 타협(give-and-take)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 측은 TBT 조치의 제·개정 시 상대국 이해관계자 참여 비차별 허용, 정보공개 의무화 등 한층 강화된 투명성 조항을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ASEAN과 인도는 그동안 기체결한 TBT 협정 내 투명성 조항의 경우 WTO 협정 의무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Mega FTA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참여국 간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양국간 타협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국내의 업계 불문 제품에 동일한 임의인증을 적용하고 있어 외국 기업에 유독 TBT 조치를 부과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sup>132)</sup> 일본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인정기관 설립요건에 부합하면 국내거소요건을 강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대 시험성적서의 상호인정도 수용하는 입장으로, 적합성 평가절차 이행에는 사실상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 측이 지정한 우리나라 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이 그 예이다. KTR은 대일 수출제품에 대한 시험을 우리나라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 측 시험검사 기관 간 MoU 체결로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양국간 MRA를 통해 신뢰도 높은 시험검사소를 교차지정하여 상호인정하고 있으며, 일본 측에서 인정한 국내시험인정기관에서 요구기준에 맞추어 검사를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발행한다.<sup>133)</sup>

---

13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남상열 연구위원 인터뷰(2016. 3. 17).  
133) 상동.

그러나 양자간 경제적 이해차이에서 기인한 TBT 조치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분분하여 협상 시에 각자 선호하는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각자 선호하는 수출품목이 다르고, 기술규정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모범규제관행 및 투명성 관련 조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지향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제·개정 시 상대국인(人) 참여 허용, 제안된 기술조치에 대한 무료 공개, 상대국 의견개진기간 보장, 상대국 의견에 대한 답변 제공, 시험용 샘플 역류 시 사유 통보 등이 있다. 이렇듯 일본과 유사한 수준을 지향하는 투명성 관련 조항은 양국이 공조하여 RCEP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

그러나 각 양자간 기체결된 FTA TBT 협정에 머무르는 수준이 아닌, 새로운 TBT 협정의 기준이 될 Mega FTA TBT 협정(WTO 협정과 기체결 TBT 협정의 조합 이상)에 합의하여 수준 높은 규범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 협상 진행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국가기술표준원. 2011. 『2011년도 내외일체의 경제성장전략에 관련된 국제경  
제조사사업: 유럽연합과의 경제연대촉진을 위한 규제·제도조사』.  
\_\_\_\_\_. 2015. 『국가기술표준원 통계』.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2015. 『일본의 규제개혁 정책 및 사례: 국가전략특구를  
중심으로』.
- 김정근, 금혜윤. 2011. 『주요국의 FTA 환경협정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자  
료 11-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종덕, 엄준현. 2013. 『한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연구자료 13-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류한열, 성열용, 김재덕, 김혁중. 2016. 「무역기술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FTA TBT를 중심으로」. 『KIET 산업경제』, 3월. 산업연구원.
- 박동준, 강인선. 2009. 『WTO/TBT 협정에 따른 기술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기  
술표준에 의한 생산성 제고 관점』. 『생산성논집』, 제23권 제4호.
- 백종현. 2014. 『한국의 FTA TBT분야 이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한국표준협회.  
\_\_\_\_\_. 2015. 「우리나라와 주요 교역국의 FTA TBT 협정 특징 5가지」. 『S-Life』,  
3+4월호. 국가기록표준원.
- 산업통상자원부. 2006.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6~2010)(안)」. 의안번  
호 제1호.  
\_\_\_\_\_. 2014. 12. 4.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FTA TBT 협상전략 모색」. 보  
도자료.  
\_\_\_\_\_. 2014. 3. 27.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 출범」. 보도자료.
- 서정민 외. 2012. 『제6차 WTO TBT 위원회 3년 주기 검토 보고서 대응 전략 수  
립』. 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발주 용역 최종보고서.
- 양준석. 2016. 「TPP 협정의 규제일관성 내용 분석」. 『무역학회지』, 제41권 제1호.
- 유새별. 2015. 「한·중 FTA 무역상 기술장벽(TBT) 협정 비교 및 정책 시사점」.



-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5-19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16. 「TPP 무역상 기술장벽(TBT) 협정문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6-13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주윤. 201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한국법제  
연구원.
- 장용준 외. 2015. 『제7차 WTO TBT 위원회 제3년 주기 검토보고서 대응전략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발주 수탁 용역.
- 최보영, 방호경, 이보람, 유새별. 2015.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5-12.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 하선권, 최정택, 김성준. 2011. 『기술규제장벽(TBT) 협정에 따른 한국정부 대응  
방안』.
- 한승준. 2009.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기술규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5집 제3호.
- KSA 한국표준협회. 2015.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추진 경과와 향후 발전방향의  
모색』.

#### [영문자료]

- Barbour, Emily C. 2010. "Trade Law: An Introduction to Selected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U.S. Laws."
- Charnovitz, Steve. 2006. "Taiwan's WTO Membership and its International  
Implications." *Asian J. of WTO & Int'l Health L. & Pol'y*, Vol. 1: 401.
- Fergusson, Ian F., McMinimy, Mark A, and Williams, Brock R. 2015. "The  
Trans-Pacific Partnership(TPP) Negotiations and Issues for Congress."
- Lee, Ti-Ting. 2012. "Technical Barriers to Trade Provision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 Molina, Ana Cristina and Khoroshavina, Vira. 2015. "TBT Provision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To What Extent Do they Go  
Beyond The WTO TBT Agreement?"
- Nam, Sang-yirl. 2015. "WTO Discussions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Implications for Asia-Pacific Regional Economic

- Integration.” APEC Study Series 15-01. KIEP.
- OECD. 2000. “OECD Reviews of Regulatory Reform: Regulatory Reform in Korea 2000.” Paris: OECD Publishing.
- \_\_\_\_\_. 2007. “Korea: Progress in Implementing Regulatory Reform.”
- Puig, Gonzalo V. and Eric D., Dalke. 2015. “Nature and Enforceability of WTO-plus SPS and TBT Provisions in Canada's PTAs: From NAFTA to CETA.” *World Trade Review*. (October 19)
- WTO. 2003. “Third Triennial Review of the Ope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G/TBT/13).” No. 03-5999.
- \_\_\_\_\_. 2008. “Trade Policy Review – Republic of Korea(WT/TPR/S/204).”
- \_\_\_\_\_. 2011.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in Special Session (TN/TE/20).”
- \_\_\_\_\_. 2012. “Trade Policy Review – Republic of Korea(WT/TPR/S/268).”
- \_\_\_\_\_. 2014. “The WTO Agreements Series: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_\_\_\_\_. 2015a. “Second Thematic Session on the Seventh Triennial Review: Chairperson’s Report to the 17-18 June 2015 TBT Committee Meeting.”
- \_\_\_\_\_. 2015b. “Seventh Triennial Review of the Ope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under Article 15.4(G/TBT/37).” No.15-6380.
- \_\_\_\_\_. 2016. “Twenty-First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G/TBT/38/Rev.1).” No.16-1642.

#### [기타 자료]

川端章義. 2012. 「WTO/TBT協定とその意義・活用について」.

#### [온라인 자료]

에너지경제. 2016. 「정부, 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확정·발표」. 『에너지경제』. (3월 29일)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09810>(검색일:

2016. 5. 17).  
노컷뉴스. 2015. 「한·중·일 FTA 제8차 수석대표협상 북경서 개최」. 『노컷뉴스』.  
(9월 23일) <http://www.nocutnews.co.kr/news/4478478>(검색일:  
2016. 6. 2).  
규제정보포털 웹사이트. <http://www.better.go.kr>(검색일: 2016. 5.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검색일: 2016. 5. 26).  
전자신문. 2013. 「성시헌 기술표준원장, “선도형 표준화 전략으로 표준강국 도  
약”」. (4월 28일) <http://www.etnews.com/201304260321>(검색일:  
2016. 5. 17).

#### [간담회 및 인터뷰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남상열 연구위원 전문가 간담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6. 2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남상열 연구위원 인터뷰(2016. 3. 17).

#### [법률 및 협정문]

「ASEAN·호주·뉴질랜드 FTA 협정문」.  
「EU·싱가포르 FTA 협정문」.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문」.  
「WTO TBT 협정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275호」.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 헌법」.  
「미·CAFTA-DR FTA 협정문」.  
「미·모로코 FTA 협정문」.

「미·바레인 FTA 협정문」.  
 「미·오만 FTA 협정문」.  
 「미·칠레 FTA 협정문」.  
 「미·콜롬비아 FTA 협정문」.  
 「미·파나마 FTA 협정문」.  
 「미·페루 FTA 협정문」.  
 「미·호주 FTA 협정문」.  
 「법제업무 운영규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소음·진동규제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의료기기법」.  
 「의료법」.  
 「인도·ASEAN FTA 협정문」.  
 「일·ASEAN EPA 협정문」.  
 「일·페루 EPA 협정문」.  
 「일·호주 EPA 협정문」.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중·ASEAN FTA 협정문」  
 「중·뉴질랜드 FTA 협정문」.  
 「중·스위스 FTA 협정문」.

「중·칠레 FTA 협정문」.  
「중·코스타리카 FTA 협정문」.  
「중·페루 FTA 협정문」.  
「중·호주 FTA 협정문」.  
「친환경농어업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캐나다·콜롬비아 FTA 협정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한국정보통신국가표준(KICS)」.  
「한·ASEAN FTA 협정문」.  
「한·EFTA FTA 협정문」.  
「한·EU FTA 협정문」.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  
「한·미 FTA 협정문」.  
「한·베트남 FTA 협정문」.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한·인도 FTA 협정문」.  
「한·중 FTA 협정문」.  
「한·칠레 FTA 협정문」.  
「한·캐나다 FTA 협정문」.  
「한·콜롬비아 FTA 협정문」.  
「한·터키 FTA 협정문」.  
「한·페루 FTA 협정문」.  
「한·호주 FTA 협정문」.  
「행정절차법 시행령」.  
「호주·칠레 FTA 협정문」.  
「화장품법」.

부록 표 1. TPP TBT 협정문의 주요내용

조문		주요 내용
제1조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사거래(consular transactions), 시장출시인허가(marketing authorization),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시장사후관리(post-market surveillance), TBT 협정(TBT Agreement), 검증(verify)에 대한 용어 정의</li> </ul>
제2조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필요한 무역장벽 제거, 투명성 강화, 더 나은 규제협력 및 모범규제 관행(GRP) 증진</li> </ul>
제3조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및 직속기관)의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이하 CAP)의 준비, 채택 및 적용</li> <li>• 지방정부의 TBT 규정 준수 보장을 위해 이용 가능한 합리적 조치 적용</li> <li>• 당사국의 기술규정 또는 표준 채택·유지에 대해 방해 금지</li> </ul>
제4조	TBT 협정문 내 특정 조항과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 TBT 협정상 다음 조항은 유지하거나 또는 일부 변형을 통해 TPP TBT 협정의 일부로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1, 2.2, 2.4, 2.5, 2.9, 2.10, 2.11, 2.12조</li> <li>- 제5.1, 5.2, 5.3, 5.4, 5.6, 5.7, 5.8, 5.9조</li> <li>- 부속서 3-D, 3-E, 3-F항</li> </ul> </li> <li>• 분쟁해결의 미적용</li> </ul>
제5조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 존재 여부 판단을 위해 WTO TBT 위원회의 결정 적용</li> <li>•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각기 상이한 기술규정 및 CAP에 대한 회원국 간 공동협력</li> </ul>
제6조	적합성 평가(C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내국민대우(인정·승인·면허 부여에 있어 타 당사국 영역 내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에 동일하거나 동등한 절차 적용)</li> <li>• 시험결과, 인증서 또는 검사를 요구할 경우,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의 당사국 영역 내 소재 요구 금지 △ 당사국 영역 외 소재한 평가기관의 사무실 운영 요건사항 부과 금지 △ 타 당사국 영역 내 평가기관이 당사국에 제품 시험·승인·검사 수행에 필요한 절차, 기준 및 조건 준수 등의 결정을 위한 신청 허용</li> <li>• 특정 제품의 CAP 단독 수행 방해 금지</li> </ul>

부록 표 1. 계속

조문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요구의 제한, 합법적인 상업적 이익 보호 및 검토절차의 타당성에 관한 적합성 평가 수행 시 타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설명 의무(△ 적합성을 평가하고 비용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이유 △ 정보의 비밀유지 보장 방법 △ CAP의 운영에 대한 불만사항 검토 및 대응조치)</li> <li>• 적합성 평가기관간 인증·승인·면허부여 등을 위해 상호인정협정(MRA)을 활용 하는 것 방해 금지</li> <li>• 적합성 평가기관들이 수행한 CAP의 결과 검증 방해 금지</li> <li>• 타 당사국 소재 인정기관 수용을 다음 사유로 거절 금지(△ 1개 이상 인정기관이 있는 당사국 내에서 운영 △ 비정부기관 △ 인정기관 인정 절차를 운영하지 않는 당사국 내 거소 △ 당사국 내 사무실 미운영 △ 영리기관 등)</li> <li>• 적합성 평가기관 인증·승인·면허 등 또는 MRA 활용 거절 시 사유 설명</li> <li>• 타 당사국 영역 내에서 수행된 CAP의 결과 수용 거절 시 사유 설명</li> <li>• 타 당사국의 MRA 협정 체결 협상 요청 거절 시 사유 설명</li> <li>• 적합성 평가와 관련 영사거래(consular transaction) 요구 금지</li> </ul>
제7조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BT 관련 조치 개발 과정에 타 당사국 이해당사자의 참여 비차별적 허용</li> <li>• TBT 관련 조치 개발에 전자적 도구, 공공자원활동(public outreach) 및 협의회(consultations)를 통해 추가적인 투명성 제공방안 모색</li> <li>• 중앙정부기관(및 지방정부)으로부터 통보되는 제안 및 최종본을 단일 관보(official journal) 또는 단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표</li> <li>• 무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CAP에 대해 WTO 및 TPP 회원국에 동시 통보 의무</li> <li>• TBT 관련 조치에 대해 타 당사국이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60일 의견 제시기간 부여(의견 제시 기간연장에 대한 합리적 요구 수용 고려)</li> <li>• 의견 제시 기간 종료 시점과 공표된 기술규정, CAP의 채택 시점까지 충분한 시간 제공</li> <li>• 무역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규정 또는 CAP의 최종안을 공표 일 이전에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해당 기술규정/CAP의 목적 및 달성방법, 해당 기술규정/CAP에 대한 대체적인 접근법, 타 당사국의 의견에 대해 중대한 응답 공개, 중대한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 제공)</li> </ul>
제8조	기술규정 및 CAP의 준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규정 및 CAP의 최종본 공표시점과 효력 발생시점 사이 '합리적 기간(6개월 이상)'을 제공하도록 노력</li> </ul>

부록 표 1. 계속

조문		주요 내용
제9조	협력 및 무역원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P의 결과 수용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 존재 인정 (△ 타 당사국 내 기관에서 수행된 CAP 결과 상호인정 △ 인정기관 또는 인증기관간의 지역적·국제적 MRA의 존재 인정 △ 적합성 평가기관의 자격평가를 위해 국제적 인정시스템 사용 △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또는 타 당사국이 지정한 기관 인정 △ 타 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CAP 결과 인정 △ 공급자 적합성선언(SDoC) 수용)</li> <li>• 규제협력 지지를 위한 메커니즘 존재 인정(△ 규제 대화체(regulatory dialogue) 및 공동협력 △ 국가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과의 연대(부적절·비효율적인 경우 제외) △ 기술규정 및 CAP의 기초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활용 촉진 △ 타 당사국의 기술규정 동등성 수용 권장)</li> <li>• 타 당사국의 기술규정 동등성 수용 거절 시 이유 설명</li> <li>• 표준, 적합성 평가, 인정, 계량 담당 기관(공공/민간) 간 공동협력 장려</li> </ul>
제10조	정보교환 및 기술적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국이 요청하는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 내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li> <li>• 무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적합성 평가절차와 기술규정에 대해 타 당사국에 기술적 논의 요청 가능</li> <li>• 기술적 논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또는 더 빠른 시일 내) 제기된 문제 논의</li> <li>• 기술적 논의에 불참할 경우 논의내용 및 교환한 정보 기밀 유지</li> </ul>
제11조	TBT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당사국 대표로 구성된 TBT 위원회 설치</li> <li>• TBT 위원회의 기능(협정 이행 및 운영 점검, TBT 관련 정보교환 및 기술적 논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검토·수정 포함 양자간·다자간 협력 권장, 당사국 영역 내 정부·비정부 기구 간 협력 및 비정부 기구 간 양자간·다자간 협력, 기술적 역량 수요확인 촉진, 비정부·지역·다자 기구 내 정보 교환, TPP 위원회 보고, 동 협정 이행에 관련된 조치 등)</li> <li>• TPP 협정 발효 후 1년 내 위원회 개최(이메일, 전화/화상회의, 국제 포럼 등의 수단 이용)</li> <li>• 위원회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로 진행</li> </ul>
제12조	접촉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당사국 내 접촉점 정보 타 당사국에 제공(변경사항 즉시통보)</li> <li>• 접촉점(contact point)의 역할은 △ 동 협정의 논의, 요청, 시기적절한 정보교환의 촉진, 타 당사국 접촉점과 연락 △ 영토 내 관련 정부 기관의 참여 조율 및 연락 △ 영토 내 이해당사자와의 조율 및 협의 △ 위원회에 의한 추가적 사항</li> </ul>
제13조	부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식품 및 식품첨가물,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 제8.3조에 명시된 적용범위 준수</li> <li>• TPP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 이후는 최소 5년에 한 번 다음 사항 준수 의무(△ 부속서에 포함된 분야 내 조치의 강화, 개선, 권고를 위해 부속서 이행 검토)</li> </ul>

자료: 유세별(2016), pp. 6-8.



## Study on the Strategies for Mega FTAs: A Comparative Analysis of TBT Chapters of Korea's FTAs

YOO Saebyul

This research intends to suggest countermeasures and strategies in response to mega-FTAs,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chapters of Korea's FTAs and the TPP Agreement. A particular focus is placed on the impact that mega-FTAs such as the TPP and RCEP would have on Korea in terms of technical policy and institutions, based on an analysis of the key articles of Korea's existing FTA TBT agreements. We also examine what stance Korea should take, and what strategies the country should choose, if and when Korea joins mega-FTAs including the TPP.

Among the 15 FTAs Korea has signed, 11 lay down TBT agreements in a separate chapter.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ses the main articles of existing FTA TBT agreements, especially those on technical regulations, 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and transparency.

In the following chapter, based on the main features of Korea's existing TBT agreements, we take a look at the TBT chapter of the TPP, in which Korea may possibly participate. Overall, the TPP regulates TBT articles at a level similar to the WTO agreement or Korea's existing TBT

agreements. However, some new regulations that were previously unseen are adopted in certain articles, including those on conformity assessment, transparency, grace period, cooperation and the Annex. In this respect, the TPP can be said to have the strictest regulations of all FTAs or RTAs concluded up until present.

As the TPP is mostly based on the WTO Agreement, TPP accession is expected to have a limited affect on domestic industries. However, several articles related to specific products, as well as the WTO plus and TBT plus articles, require the improvement of the domestic system or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domestic law. It will be necessary for Korea to review agendas related to (1) the testing,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industry, (2)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certain industries such as the medical device and pharmaceutical industries, and (3) the elimination of local presence requirements (adjustment of requirement levels).

Based on the outcomes of the analyses conducted above, we suggest domestic and external policy directions, as well as negotiation strategies to be used for future mega-FTAs, with consideration to current technical regulation policies and systems. First, in terms of domestic policy, we propose (1) reviewing and activating domestic technical regulation policy, (2) monitoring the regulatory reform of other countries, (3) gathering the opinions of interested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4) adopting and enforcing a TBT expert training system, and (5) actively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conferences held by the WTO TBT Committee. Next, in terms of external policy, we make suggestions for future mega-FTA negotiations, including the TPP and RCEP, for

example (1) introducing a policy on regulatory mitigation to expand market-opening, (2) promoting a single agreement for certain products, and (3) introducing, adopting and applying new regulations by improving the existing system.

# KIEP 연구자료 발간자료 목록

- 2016년

  - 16-01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 김주권
  - 16-02 주요국의 대베트남 진출전략과 시사점 /곽성일 · 이재호
  - 16-03 신흥국 건설시장 진출 관련 국가리스크와 대응방안 / 엄준현 · 손성현 · 권가연
  - 16-04 Mega FTA 대응전략 연구: TBT 협정을 중심으로 / 유세별
- 2015년

  - 15-01 중국의 내수용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응 / 정지현 · 김부용
  - 15-02 북한 경제개혁의 재평가와 전망: 선군경제노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임수호 · 최유정 · 홍석기
  - 15-03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U.S. Monetary Policy on China's Capital Market Stability and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 Gang Jianhua, Qian Zongxin, Zhang Chao and Zhang Jianui
- 2014년

  - 14-01 중국 서부지역 IT제조 클러스터 분석 및 시사점: 충칭(重慶)시, 청두(成都)시, 시안(西安)시를 중심으로 / 오종혁 · 박현정
  - 14-02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및 대응방향 / 강준구
  - 14-03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연구 / 이효영 · 엄준현
  - 14-04 중국의 지식산업화 분석과 시사점: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특허 라이선싱을 중심으로 / 박현정 · 이효진
  - 14-05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나승권 · 홍이경
  - 14-06 북극이사회의 정책동향과 시사점 / 문진영 · 김윤옥 · 서현교
  - 14-07 미국 하원의 통상정책 결정요인과 시사점 / 고희채 · 최호락

---

## 유새별(俞새별)

The University of Glasgow 경영학부 졸업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지역무역협정팀 연구원

(現, E-mail: sbyoo@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공저, 2014)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공저, 2015) 외

##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8만원		4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학술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비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 Study on the Strategies for Mega FTAs: A Comparative Analysis of TBT Chapters of Korea's FTAs

YOO Saebyul

이 연구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기체결한 FTA 협정 TBT 조항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여타 Mega FTA 협정 TBT 조항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고 있다. 이 연구는 WTO TBT(무역기술장벽) 협정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TBT 협정 및 TPP TBT 협정을 정성적인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술규제정책과 향후 Mega FTA에서의 협상전략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기체결 FTA TBT 협정의 주요 핵심조항 분석 결과를 토대로 TPP, RCEP과 같은 Mega FTA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기술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향후 TPP 포함 Mega FTA에 가입 시 우리 측 입장과 대응전략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9 788932 201115

9 4 3 2 0

ISBN 978-89-322-2420-6  
978-89-322-2064-2(세트)

정가 7,000원